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이기호

신지영·임태훈·고미리·이영환·민옥경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신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임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고미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리
	이영환	고려대학교 교수
	민옥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

연구보고서 2021-53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51-8 9351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1.53>

발|간|사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의 중요성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사회·경제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주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작 개인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개인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기가 어렵고,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데이터의 가치 손실 없이 개인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신이 복지서비스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방법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보

장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기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신지영 연구원, 임태훈 교수(고려대학교), 고미리 대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민옥경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영환 교수(고려대학교)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과정 중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구은진 팀장과 바쁘신 중에도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원내 이해정 센터장, 사회보장정보원 김지영 센터장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	21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 정의	24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고찰	41
제4절 소결	50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53
제1절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55
제2절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67
제3절 소결	79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81
제1절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Business)	83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Legal)	115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Technology)	137
제4절 소결	174

제5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177
제1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179
제2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 사항 분석	206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215
제1절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217
제2절	구축 방향 및 전략	226
제3절	세부 수행 과제	232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7
제1절	결론	239
제2절	정책적 제언	244
참고 문헌		255
부록		265
[부록 1]	‘정부24’ 및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조사 결과	26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17
〈표 2-1〉 사회복지 정의	22
〈표 2-2〉 핀란드 마이데이터 원칙	29
〈표 2-3〉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원칙	30
〈표 2-4〉 분야별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34
〈표 2-5〉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정보 주체의 권리	38
〈표 2-6〉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주체 권리 비교	39
〈표 2-7〉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44
〈표 2-8〉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46
〈표 2-9〉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유형	48
〈표 3-1〉 PimCity 프로젝트 목표	59
〈표 3-2〉 PimCity 프로젝트 수행 활동	60
〈표 3-3〉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 과제	73
〈표 3-4〉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중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75
〈표 3-5〉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 주요 추진 내용	77
〈표 4-1〉 스페인 시민 폴더의 주요 서비스	85
〈표 4-2〉 공공 마이꾸러미 서비스 목록	93
〈표 4-3〉 데이터 항목별 표준 제공 항목 (예시)	96
〈표 4-4〉 병원 의료데이터 제공 API 목록 (예시)	98
〈표 4-5〉 연계 대상 기관 및 주요 의료데이터 목록	100
〈표 4-6〉 마이데이터 활용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 (예시)	102
〈표 4-7〉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107
〈표 4-8〉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108
〈표 4-9〉 현행 인증 방식과 신 인증 방식 비교	110
〈표 4-10〉 2019~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113
〈표 4-1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조문 구성	115
〈표 4-12〉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0조	117

〈표 4-13〉 유럽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119
〈표 4-14〉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제36조	121
〈표 4-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22
〈표 4-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24
〈표 4-17〉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125
〈표 4-18〉 정부안 중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128
〈표 4-19〉 민행배 의원안 중 마이데이터 관련 개정안	131
〈표 4-20〉 조승래 의원안 중 데이터 이동권 조항	133
〈표 4-21〉 아이덴티티(ID) 유형	141
〈표 4-22〉 국내 DID 추진 동향	142
〈표 4-23〉 API의 장점	146
〈표 4-24〉 Open API와 스크린 스크래핑의 기술적 측면 비교	149
〈표 4-25〉 Open API와 스크린 스크래핑의 고객 사용성 측면 비교	150
〈표 4-26〉 메타데이터 관리 영역	156
〈표 4-27〉 주체들의 정보 영역	157
〈표 4-28〉 개인정보 영역	159
〈표 4-29〉 Kantara 데이터 영수증 (예시)	161
〈표 4-3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요	163
〈표 4-3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5조 주요 내용	164
〈표 4-32〉 “Privacy by Design” 8대 원칙	165
〈표 5-1〉 ‘정부24’와 ‘복지로’의 서비스명 매칭 사례	181
〈표 5-2〉 ‘복지로’와 ‘정부24’ 서비스 비교	182
〈표 5-3〉 ‘정부24’ 지원 대상 분류 결과	184
〈표 5-4〉 지원 대상 분류 결과(복지로)	184
〈표 5-5〉 필요데이터 조사방법	188
〈표 5-6〉 지원 형태 분석 결과	190
〈표 5-7〉 근거 법령 분석 결과	191



〈표 5-8〉 근거 법령 현황	191
〈표 5-9〉 서비스 근거 법령 중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한 법령 현황	193
〈표 5-10〉 서비스 근거 법령 중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한 법령(예시)	195
〈표 5-1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	196
〈표 5-12〉 지원 대상 제한 유형 분석 결과	197
〈표 5-13〉 복수의 지원 자격을 포함하는 서비스(예시)	198
〈표 5-1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198
〈표 5-15〉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의 신청경로	199
〈표 5-16〉 정부24 및 복지포 외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경로	199
〈표 5-17〉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수	201
〈표 5-18〉 업무 분야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현황	203
〈표 5-19〉 동일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업무 분야로 구분한 사례	204
〈표 5-20〉 개인정보데이터 항목별 표현(예시)	210

그림 목차

[그림 2-1] 데이터 비식별화 정도에 따른 데이터의 유용성	25
[그림 2-2] 기관 중심 데이터 유통과 개인 중심 데이터 유통 비교	27
[그림 2-3] 개인데이터 수집 및 전달 방식에 따른 비교	31
[그림 2-4]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33
[그림 2-5]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	35
[그림 2-6]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	36
[그림 2-7]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단계	42
[그림 2-8] 마이데이터로 인한 개인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	43
[그림 3-1] 영국 오픈뱅킹 정책 개요도	57
[그림 3-2] 영국 오픈뱅킹 API 호출 건수	57
[그림 3-3] PIMCity 플랫폼 추진 범위	60
[그림 3-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국가 비전, 주체별 역할	68
[그림 3-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비전,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과제	69
[그림 3-6] '국민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 서비스 개념도	71
[그림 3-7]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비전, 추진 원칙, 우선 과제	72
[그림 3-8]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74
[그림 3-9] '나의 건강정보 한눈에' 서비스 개념도	76
[그림 4-1] 시민 주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 권리	84
[그림 4-2] National Digital Identity(NDI) 제공하는 Myinfo 및 Singpass API	86
[그림 4-3] 싱가포르 Myinfo Business	86
[그림 4-4] Kanta 시스템 활용 현황	87
[그림 4-5] Meeco 사용자 앱 예시	89
[그림 4-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92
[그림 4-7]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구조	95
[그림 4-8] 플랫폼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100
[그림 4-9]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성 및 절차	106
[그림 4-10] 표준 방식의 신인증 서비스 개념도	109



[그림 4-11]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개요	111
[그림 4-12] 분산형 SSI 개념도	142
[그림 4-13] 데이터 영수증 (예시)	154
[그림 4-14] 데이터 영수증의 구조 (예시)	155
[그림 4-15]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동의 화면 예시	167
[그림 4-16]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	170
[그림 5-1] 조사 절차	180
[그림 5-2] 조사 대상 선정 절차	182
[그림 5-3] 정부24의 서비스별 신청서 작성 예시	187
[그림 5-4] 구비서류 예시	213
[그림 6-1]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218
[그림 6-2]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219
[그림 6-3]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221
[그림 6-4]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222
[그림 6-5]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224
[그림 6-6]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략	229



Abstract

A study for introduction of Mydata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Project Head: Lee, Ki-ho

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y of introducing Mydata service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and reviews a plan to introduce Mydata services for appl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e method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cepts and recent research trends of Mydata were reviewed by examining major foreign cases and domestic precedent researches. Mydata researches in Korea initially focused on the concepts and the legal systems, while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velopments in recent researches and technologies thereon.

Second, this study reviews the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Mydata policy implementation. Introduction of the Korean Mydata policy was somewhat delayed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but the range of Mydata has been expanding through systematic and rapid policy promotion.

Third, reviews were carried out on domestic and foreign

2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Mydata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technology trends. Mydata-related services and technologie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by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s for each sector of the Mydata policy.

Fourth,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required data for welfare service applications, we explored the two representative welfare service application sites of 'minwon24(www.gov.kr)' and 'bokjiro(bokjiro.go.kr)' which have 289 welfare service application forms. And some issues have been derived out of them.

Fifth, based on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expert advices, four reference models were presented for reviewing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s a Mydata platform model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we have proposed the 'public-private integrated Mydata platform' model, which is mixed of the strengths of each model.

Sixth,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Mydata policy trends, Mydata services, legal, and technology-related issues, we have suggested a plan to introduce the Mydata service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from four perspectives: service, legal system, technology, and society.

Seventh, based on precedent researche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we have provided a three-step promotion strategy, including foundation, growth and revitalization, and stabilization for introducing the Mydata services in the 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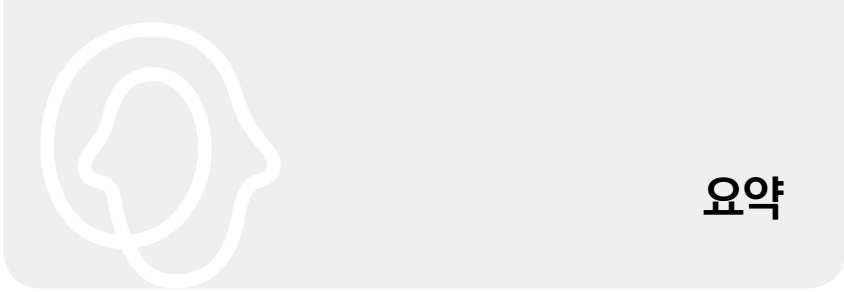
security sector.

Eighth, we have proposed detailed tasks from the four perspectives such as service, legal system, technology, and society, to introduce the Mydata service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This study has proposed a plan to introduce the Mydata service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through reviewing precedent researche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and services, and current laws and technologies. Moreover, to propose the plan, we have also checked and analyzed the issues of the status of required data for welfare service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Mydata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It can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Mydata activation policy. The government is driving this policy as part of the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of. We can also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improvement of the national using environment of the welfare services.

Keyword : mydata, mydata service, welfare servi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개인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가치 손실 없이 그 활용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즉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권리를 개개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 중심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회보장 분야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외국 사례 및 국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 법적 근거,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관련 기술,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 등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주요 외국에 비해 시작은 다소 늦었으나 짧은 기간에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마이데이터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셋째, 국내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법제도, 기술 관련 현황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비스 측면에서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법제도 측면에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급함을 밝혔다. 기술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관련 기술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사항 도출을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주요 이슈 사항으로는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이동권 제정 검토, 복지서비스 신청의 온라인화,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플랫폼 일원화, 개인데이터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존 선행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정도에 따라 ‘공공 주도형,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민간 규제형, 민간 자율형’ 등 4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으로는 각 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법제도, 기술 관련 이슈 사항을 토대로 서비스, 법제도, 기술, 사회 등 4가지 관점의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기존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전략으로 기반 조성, 성장 및 활성화, 안정화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서비스, 법제도, 기술,

사회 등 4가지 관점에서 세부 수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관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표준 서비스 및 기술 지킴 개발, 데이터 표준화 개발이 세부 수행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심사제도 마련 등이 세부 수행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 관점에서 개인 관점의 기술 개발 지원, API 기술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 지원이 세부 추진 과제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 관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국민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이 세부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서비스, 법률, 기술 현황 분석과 ‘정부24’ 및 ‘복지로’ 등의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와 이슈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모형, 구축 방향과 전략, 세부 수행 과제 등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이다. 그 결과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용어 :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복지서비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11년 가트너(Gartner) 보고서(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 그 개념이 처음 등장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하며, 20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데이터 경제 개념을 도입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정책위키, 2021).

오늘날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의 혁신성장(기존산업 혁신, 신산업 창출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정책위키, 2021).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시장규모도 2019년 16조 8,693억 원으로 2017년의 14억 3,530억 원에 비해 3년간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8.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a, p. 110).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¹⁾ 및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²⁾

1)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 2. 1.-2. 2): 주제 1-개인

의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8년 6월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제1차~제3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2020년 11월 발표된 제4차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활용 환경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이터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 제정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데이터의 오남용 및 과잉보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3법³⁾의 개정이 추진되었다(권현영, 2019, p. 17).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엄격한 가명 처리 시 정보 손실이 불가피하고, 재식별·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명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욱재, 2020, p. 4).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혜택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2)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 4. 3.-4. 4): 주제 1-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3)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함.

안전한 활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즉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⁴⁾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⁶⁾ 등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수 기관에서 흩어져 관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는 하기 어렵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에 따른 혜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인 스스로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이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주권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여,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Mydata)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Mydata)는 가명정보와 달리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의 가치 손실 없이 그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 및 분석하여 소비자 스스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혹은 상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⁷⁾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5)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등에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에서 개인 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용, 공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제3자(정부, 공공 및 민간기관 등)뿐 아니라 정보 주체인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적극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인식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파악하여 본인의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회보장 분야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 현황 및 신청 시 수집되는 개인데이터 실태를 조사하여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에게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분야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금융, 통신, 의료, 유통, 에너지 등 5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실증서비스)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금융, 의료, 교통, 생활, 소상공인, 복지 등 6개 분야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실증서비스)을 실시하였음.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앞 절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7개 장으로 구성하여 전개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 필요한 배경과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본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연구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문헌을 고찰·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제2절에서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원칙, 마이데이터 생태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제3절에서는 국내외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에서는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분석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에서는 서비스, 법률, 기술 관점에서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제4절에서는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에서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분석하여 필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이슈 사항을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 대한민국 복지서비스 신청 대표 포털사이트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정부24’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현황과 근거 법령,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복지서비스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복지서비스별 신청 시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앞서 실시한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복지서비스의 필요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에서는 기존 문헌 분석,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동향 및 활용 현황,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제시했다. 제2절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고, 제3절에서는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자 정책간담회의를 통해 결론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제2장	이론적 배경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 *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원칙, 마이데이터 생태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에 대한 개념 정의 - 국내외 마이데이터 선행 연구 - 요약 및 소결	- 기존 문헌 분석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 기존 문헌 분석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	- 기존 문헌 분석 - 국내의 사례 분석 - 관련 법률 분석
제5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 정부24, 복지로 복지서비스 조사 -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및 이슈 분석	-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 기본 방향 -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 * 구축 방향 및 전략 * 세부 추진 과제	- 기존 문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계자 정책간담회의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정책 제언	- 전문가 간담회의 - 관계자 정책간담회의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 정의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제4절 소결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security’는 ‘without’을 의미하는 ‘se’와 ‘care’를 뜻하는 ‘cura’의 결합으로 ‘불안을 없앤다’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social security’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불안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⁸⁾.

사회보장 범위는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보장 범위는 1942년 영국의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H. Beveridge)의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보고서에서 정의한 “노령, 폐질, 질병, 실업에 의한 수입의 상실, 중단 및 출산, 사망 등에 의한 일시적 지출의 증대라는 니즈(needs)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된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범위의 개념”이다. 광의의 사회보장 범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건 및 위생, 그리고 노인, 아동, 부녀자, 장애인 등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즉 최협의의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⁹⁾).

한편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welfare’의 사전적 의미는 안락하고 만족한 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의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학문적 정의는 <표 2-1>과 같이 다양하다(박정선, 2014, p. 83 재인용).

8)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사전. 사회보장.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286>

9)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사전. 사회보장.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286>

〈표 2-1〉 사회복지 정의

구분	내용
Friedlander & Apte (1961)	-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장치를 강화하고 보장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
Wilensky & Lebeaux (1965)	- 국민의 경제적 상황, 건강, 대인관계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기능을 도모하는 기관, 제도,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
Romanyshyn (1971)	- (소극적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 제공 - (적극적 복지) 국민 전체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
김상균 (1987)	- (광의)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법, 프로그램, 현물 및 현금 등의 일체의 서비스 체계 - (협의) 개인의 복지증진을 국가가 책임지는 활동으로 사회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교육정책, 실업대책 혹은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포함
김태성 (2003)	- (광의)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well-being) 혹은 효용(utility)의 상태 - (협의)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의 상태,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basic human needs)를 해결하는 것

자료: Friedlander, W. & Apte, R. (1961).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Wilensky, H. & Lebeaux, C.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Romanyshyn J. (1971); Social Welfare: Charity to Justice; 김상균. (1987). 현대사회와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박정선. (2014).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p. 84에서 재인용.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어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사회복지가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 사회복지 개념 내에 사회보장 개념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박정선, 2014, p. 83).

반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동법 제3조 제1호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호에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란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1238호)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환경, 문화 등을 추가하여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로 대체한 것으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더 큰 개념 혹은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박정선, 2014, p. 86). 따라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이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며, 반면 사회복지 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다(박정선, 2014, p. 83).

본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는 동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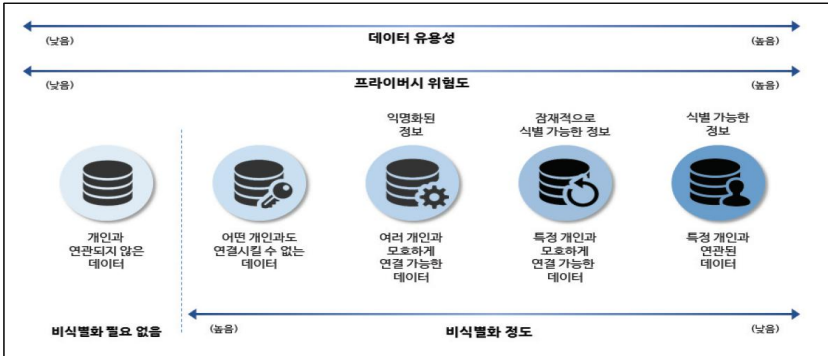
1. 마이데이터 개념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그 가치가 주목된다(이기호, 2021, p. 52).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이기호, 2021, p. 53).

일반적으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방법과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과 제1의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 2-1]과 같이 가명처리를 위해 개인데이터의 비식별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는 낮아지는 반면 데이터 활용 가치 손실이 발생해 그 유용성이 떨어져 개인데이터의 유용성과 활용 간에 딜레마가 존재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 4).

[그림 2-1] 데이터 비식별화 정도에 따른 데이터의 유용성



자료: 이현승, 송지환. (2016).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p. 28.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전략. IT&Future Strategy, (4). p. 3.
에서 재인용

반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활용 가치 손실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등에서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이에 개인데이터 활용 방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Mydata)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개인데이터 정보 주체로부터 권리를 획득해 합법적으로 이활용하는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 4).

즉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정보 주체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제3의 기관으로 자신의 개인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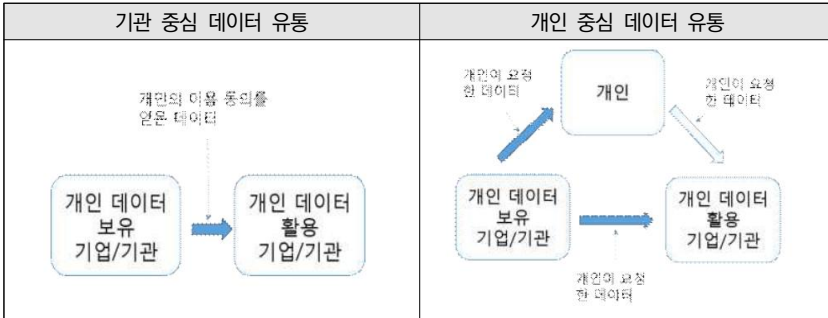
마이데이터(Mydata)라는 용어는 2011년 영국의 경제성장계획 일환으로 채택한 ‘소비자 권한 강화 정책(Better Choices: Better Deals-Consumer Powering Growth)’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개인데

이터 활용정책(Midata)’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프랑스에서는 메진포(MesInfo), 핀란드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 등 각 국가에서 소비자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젝트 등에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각국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젝트, 서비스, 데이터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일원화된 정의는 없다. 다만 가장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핀란드 교통통신부 발간 마이데이터 백서(2014)에 따르면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기관 중심적 체계(organization-centric system)를 사람 중심적 체계(human-centric system)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실천적 운동의 의미이며, 개인이 접근하고 통솔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개인데이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핀란드 교통통신부, 2014; 마이데이터코리아, 201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과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에서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활용처 및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9).

한편 국내 연구자별로 마이데이터의 개념이나 정의는 다양하다. 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2019)은 [그림 2-2]와 같이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데이터 유통 관점에서 현행 기관 중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념과 개인 중심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개념을 비교 설명하였다.

[그림 2-2] 기관 중심 데이터 유통과 개인 중심 데이터 유통 비교



자료: 조성은 등. (2019). 개인 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p. 25.

현행 기관 중심의 데이터 유통 체계에서 정보 주체인 개인은 수동적인 관여에 그치며,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고객의 데이터를 이전할지는 동의 절차를 거쳐 고객으로부터 데이터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정한다(조성은 등, 2019, p. 24).

반면 개인 중심의 데이터 유통 체계에서는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이전 받는 제3자 기업이나 기관을 결정한다. 결정하기 전에 개인은 누가 정보를 제공받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어떤 항목의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이용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며, 개인데이터 이전을 요구한 이후에라도 더 이상 해당 서비스가 필요 없거나 다른 이유로 개인데이터 이용 승인을 철회할 때도 직접 판단하고 요청할 수 있다(조성은 등, 2019, p. 25). 즉 마이데이터 개념은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심의 데이터 유통 체계에서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통제하는 개인 중심 데이터 유통 체계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현주(2021)는 마이데이터를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

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으로서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기관 중심(Organization-centric System)에서 사람 중심(Human-centric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정책 및 사업 목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만 공통적인 개념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에게로 그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권리를 되돌려줌으로써 개인 중심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마이데이터(Mydata)의 개념을 “개인데이터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기관 중심(Organization-centric System)으로 통제, 제공, 활용되던 것을 개인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고 개인 중심(Human-centric System)으로 통제,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

2. 마이데이터 원칙

2014년 발간한 핀란드 마이데이터 백서에서는 <표 2-2>와 같이 사람 중심적 통제 및 프라이버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열린 비즈니스 환경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대해 기술적인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야 하고 셋째, 개인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마이데이터코리아, 2014)

〈표 2-2〉 핀란드 마이데이터 원칙

구분	내용
사람 중심적 통제 및 프라이버시	- 개인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율적인 주체로서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이 이러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실질적 수단을 보유해야 함.
사용 가능한 데이터	- 개인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하기 쉬워야 함. - 안전하고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통해 기계판독 가능한 포맷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함. - 마이데이터는 폐쇄되어 접근이 힘든 저장공간의 개인데이터를 의미 있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임. - 개인데이터는 삶의 품질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됨.
열린 비즈니스 환경	- 개방형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은 개인데이터의 분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에는 강화되는 데이터 보호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서비스 제공자를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함.

자료: 마이데이터코리아. (2014). 마이데이터 백서. <http://www.mydatakorea.io/whitepaper>;
 손형설. (2021).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p. 235에서 재인용.

한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은 〈표 2-3〉과 같이 데이터 권한,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11). 즉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의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권과 권한을 가진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 요구할 때 기관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개인의 요청 또는 승인(동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11).

〈표 2-3〉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원칙

구분	내용
데이터 권한	-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함.
데이터 제공	-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데이터 활용	-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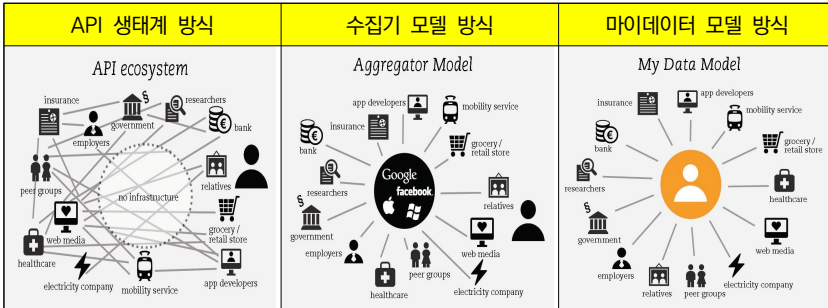
핀란드 마이데이터 백서(2014)의 마이데이터 원칙이 개인데이터의 권한과 함께 활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b)의 마이데이터 원칙은 데이터에 대한 통제, 제공, 활용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양국의 마이데이터 원칙 공통점은 개인데이터의 통제, 제공, 활용 등이 개인데이터 정보 주체인 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개인데이터 수집 및 전달 방식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크게 개인데이터 정보 주체인 ‘개인’,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보유기관’, 개인데이터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 요소와 개인데이터 수집 및 전달 방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진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데이터 수집 및 전달 방식에 따라 API 생태계(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cosystem) 방식, 수집기 모델(Aggregator Model) 방식, 마이데이터 모델(MyData Model)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개인데이터 수집 및 전달 방식에 따른 비교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전략. p. 8.

API 생태계 방식은 서비스 간에 필요한 개인데이터를 API로 연결한다. 이 방식으로 API를 활용한 서비스가 플랫폼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플랫폼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점이 증가하며, 정보 주체인 개인과 데이터 사용자 간의 관계보다 API를 주고받는 서비스와 서비스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 8). 또한 API 생태계 방식은 각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API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인현, 오희영, 2019).

수집기 모델 방식은 API 생태계 방식보다 발전된 형태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데이터 수집기(aggregator) 중심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등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집기 모델 방식은 데이터 수집기(aggregator) 간의 상호 운용성이 부족해지고, 개인은 특정 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에 종속된다는 것이 단점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 8).

마이데이터 모델 방식은 개인이 데이터의 이동과 활용 등을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개인데이터의 권한을 정보 주체인 개인이 소유

하여 특정 기업이나 기관,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데이터의 이동이 가능하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 8). 다만 마이데이터 모델 방식은 마이데이터 계정에 데이터 사용 및 접근에 대한 권한과 동의 조건을 저장하여 개인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지만 다양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슈가 있다(김인현 등, 2019).

마이데이터 모델 방식은 도입 초기에는 일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조회와 같은 단순한 활용 수준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데이터 활용과 그범위가 확산될수록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다.

한편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른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2-4]와 같이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0~2단계는 개인이 본인 데이터를 열람, 저장하거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이며, 3~4단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참여자가 늘어나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전 가능한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이기호, 2021, p. 54).

〈표 2-4〉 분야별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구분	내용
금융 분야(3단계)	- 법률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의료 분야(1단계)	- 2121년 3월부터 실시 중인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정보 주체가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되나, 본격적인 제3자 전송 요구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 추진 중
공공 분야(1.5단계)	- 본인정보를 '데이터 세트(꾸러미)' 형태로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1.5단계 수준으로 평가되며, 공공부문의 정보를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
통신 분야(1.5단계)	-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요금 납부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단계 수준으로 평가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c).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p. 20.

한편 마이데이터 도입은 금융, 의료, 공공, 통신 등 일부 분야에만 제한한 것은 아니며, 국가 차원의 전 분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11월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발표하였다.¹⁰⁾ 2022년 1월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목표로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국토·교통, 제조·유통, 부동산, 고용·노동, 농축산, 관광·숙박 등 주요 10대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구체적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자문(컨설팅)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¹¹⁾.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도입은 주요 10대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1. 5.).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첫 걸음 내딛어-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Id=7649>에서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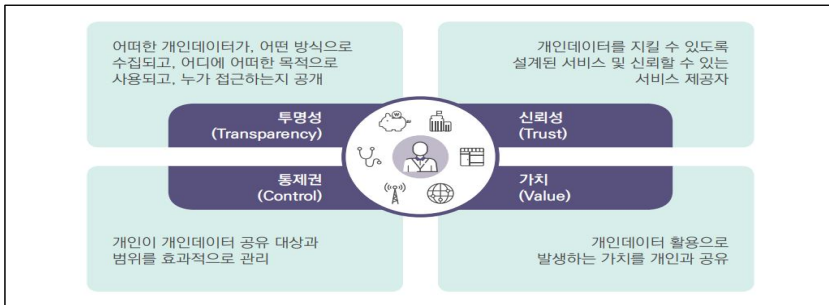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1. 13.).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청사진 마련한다-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 10대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우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Id=7796>에서 인출.

4.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징 및 기본 모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특정한 목적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데이터 원칙하에서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20).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데이터의 제공자이자 서비스의 사용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뿐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20).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림 2-5]와 같이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 관점에서 기존 개인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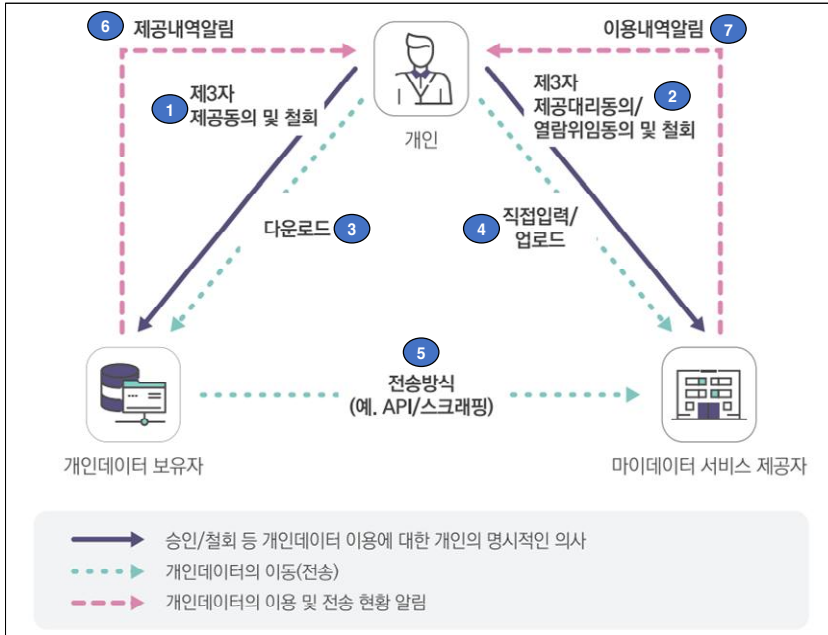
[그림 2-5] 마이데이터 서비스 특징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 20.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로 개인,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개인데이터 이용에 대한 개인의 명시적 동의 의사, 개인데이터 이동, 개인데이터의 이용 및 전송 현황 알림 등의 과정을 설명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 22.

개인은 ① 개인데이터 보유자(기관, 기업 등)에게 제3자 제공 동의 및 철회를 요구하거나, ②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 제공대리동의나 열람 위임 동의 및 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③ 개인데이터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④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다. 개인데이터 보유자는 ⑤ 개인이 제3자 제공 동의 시 해당 개인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⑥ 제공 내역을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⑦ 개인에게 개인 또는 개인데이터 보유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¹²⁾.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에서 비롯되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권건보, 2014; 권영준, 2016).

권건보(2014)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권리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권영준(2016)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전체 법질서의 정점에 있는 헌법으로부터 도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률들에 의하여 구체화된다”고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1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개인정보의 열람(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법 제37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유사한 정보 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를 규정하고 있다(〈표 2-5〉 참조).

〈표 2-5〉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정보 주체의 권리

구분	관련 조항	설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컨트롤러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무상으로 알려주어야 함.
정보 주체의 열람권	제12조, 제15조	-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및 다음의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정정권	제12조, 제16조, 제19조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의 정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삭제권(잊힐 권리)	제12조, 제17조, 제19조	- 정보 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컨트롤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정보 주체의 동의 철회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
처리 제한권	제12조, 제18조, 제19조	- 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되면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보관하는 것만 가능함. - 처리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함.
개인정보 이동권	제12조, 제20조	- 정보 주체나 다른 컨트롤러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반대권	제12조, 제21조	- 정보 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지님. -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최초 고지하는 시점에 반대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구분	관련 조항	설명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12조, 제22조	-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한 중대한 효과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한 인적 개입 없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GDPR대응센터 홈페이지. GDPR소개-정보 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 <https://gdpr.kisa.or.kr/gdpr/static/infoSubjectsRights.do>에서 2021. 8. 5. 인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항목의 정보 주체 권리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주체의 권리를 비교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 주체 권리 비교

구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13조)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 (제14조)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 주체의 열람권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15조) 개인정보 주체의 열람권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권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16조) 정정권 -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삭제권(잊힐 권리)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 제한권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18조) 처리에 대한 제한권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구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개인정보보호법
	-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개인정보 이동권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반대권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21조) 반대할 권리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 (제12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GDPR소개-정보 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
<https://gdpr.kisa.or.kr/gdpr/static/infoSubjectsRights.do>에서 2021. 8. 5. 인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한 8개 정보 주체의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처리 제한권, 반대권 등 6가지 권리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갖추었으나 개인정보 이동권과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 2개 항목은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제3의 서비스 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 하나이며, 마이데이터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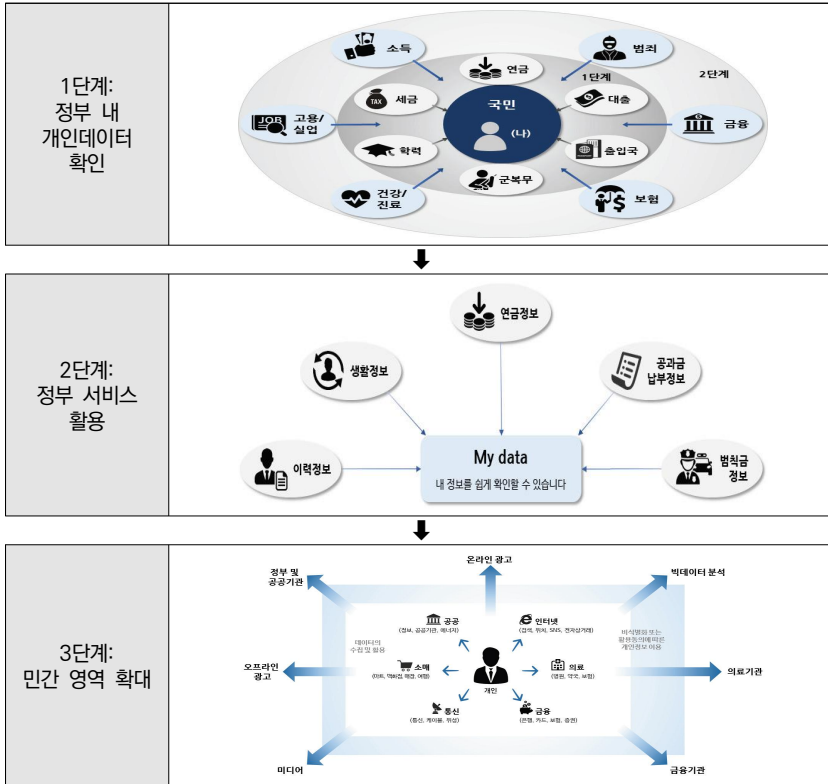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K-MyData’ 제도 도입 계획이 처음 소개된 이래로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데이터 개념이나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연구 등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가 논의되고 있다.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은 가치가 높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분야 공공부문의 개인데이터 활용, 공공 및 민간 보유 개인데이터의 종합적 활용,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및 정책 연구 등 개인데이터 활용 유형에 따른 3가지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p. 33-35).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접근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및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공공 분야에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높이고 거부감과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향후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 법제도, 기술 요소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것도 제안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p. 38-39).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개인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마이데이터 도입 전략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2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그림 2-7]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단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전략.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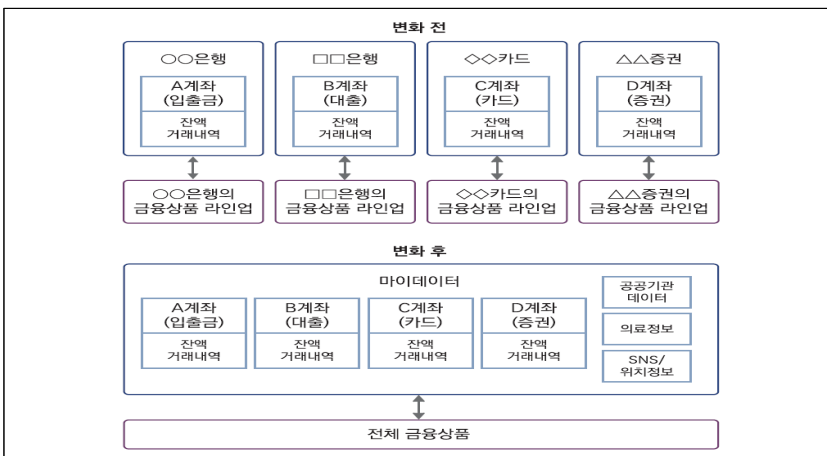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연구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오픈데이터와 마이데이터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박주석(2018)은 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던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 개념과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디지털 자원으로서 마이데이터 역할과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융합 데이터 생태계의 유형으로 핀란드 마이데이터 백서에서 논의된 API 기반 생

태계, 수집기 기반 생태계, 마이데이터 기반 생태계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마이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였다(박주석, 2018, p. 45).

금융 분야는 2018년 7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권민경(2019)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통합 및 분석하고, 금융상품의 가격과 혜택을 비교한 다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 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소비자가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권민경, 2019, p. 13).

[그림 2-8] 마이데이터로 인한 개인데이터 활용 방식의 변화



자료: 권민경. (2019).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p. 13.

또한 권민경(2019)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표 2-7>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 유의할 점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 및 보안요건 규정, 제3자의 데이터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규제 적용,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였다(권민경, 2019; pp. 17-18).

<표 2-7>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구분	설명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 본인 데이터의 통합 조회 - 소비패턴·재무현황·위험성향 분석 -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 데이터 종합 분석을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 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	- (제조) 맞춤형 금융상품 활성화 및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판매 의존도 감소 - (판매) 판매 채널 간 경쟁 확대 - (중개) 개방형 혁신 필요성 부각 - (투자·일임·자문) 중대한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로 작용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확대

자료: 권민경. (2019).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p. 17.

고환경, 손경민, 차현정, 김지훈, 지용환(2019)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및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선결 과제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사례를 조사하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법률적 쟁점 및 선결 과제에 대한 법률적 논의와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요 법률적 쟁점 및 선결 과제로 제시한 정보이동권의 도입, 동

의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 수집 방식 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다. 다만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이 대부분 개선되었다. 하지만 현재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검토, 논의가 필요한 쟁점 및 선결 과제로 본다.

마이데이터 관련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비즈니스, 법제도, 기술 등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성은 등(2019)은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통해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및 개인 인식 조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고찰했으며,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도도 검토하였다. 또한 조성은 등(2019)은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국내 사정에 적합한 마이데이터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기업과 개인의 참여 동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창출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마이데이터를 촉진할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조성은 등, 2019; pp. 160-165).

양경란, 박수경, 이봉규(2020)는 국내 및 해외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을 적용한 국내외 관련 서비스 사례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4개의 대분류, 7개의 세분류로 유형화하고 서비스 및 수익 모델 등을 제시하였다(〈표 2-8〉 참조).

〈표 2-8〉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구분		서비스 설명	수익 모델
마이데이터 소유자 지원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저장소 서비스	- PDS(Personal Data Store)라고도 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인 사진, 청구서, 의료/은행 거래 기록 등 개인에 의해 생성되거나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생성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 기능은 무료, 추가 기능은 요금을 지불하는 프리미엄(Freemium) 방식
	마이데이터 허가 서비스	-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웹사이트나 앱서비스에 대해 허가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 것인지를 설정	- 주로 프리미엄 방식과 구독 방식 적용(일부 무료 시범 서비스나 비영리 서비스 형태도 존재)
마이데이터 사용기업 지원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서비스 솔루션	- 개인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EU, 미국 등 국가별 규제에 용이하게 대응하도록 정보와 절차 관리에 대한 솔루션 및 데이터 주권자인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직접 또는 타 기업에 제공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데이터의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복잡한 처리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구독 방식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마이데이터 연결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ID 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에게 디지털 인증을 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인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다양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보안 기반 사용자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 개인은 무료, 기업에는 대가를 청구
	마이데이터 전송 서비스	- 개인이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개인의 결정에 따라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업에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은 무료, 기업에는 연결 수수료, 데이터 전송 수수료, 거래 수수료 등 다양한 청구 방식 적용
	마이데이터 거래 서비스	- ①데이터 거래의 대가를 현금이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과 ②개인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에서 데이터 소유자가 스스로 설정한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고, 구매 희망자와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①개인은 무료,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거나, 개인의 선호 또는 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에 대가 청구 - ②거래 수수료 청구
마이데이터 운영자 지원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운영자 솔루션	-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등에 마이데이터 운영 서비스의 기본 기능 솔루션을 SaaS 형태로 제공하고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개발 툴을 지원하는 서비스	- 수익 모델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솔루션 사용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자료: 양경란 등. (2020).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156-158 재구성.

노현주(2021)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금융산업과 보험회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 마이데이터 현황 및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동향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추진 경과를 고찰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마이데이터는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같은 일부 업계에서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데이터를 자산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 진단과 전략,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 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 개별 회사의 대응 준비뿐 아니라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노현주, 2021; pp. 69-70).

조영은, 최정민(2020)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 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박효주, 양진홍(2020, p. 512)은 공공 영역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유형을 비즈니스 도메인별, 주체별, 목적별, 방식별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표 2-9〉 참조).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각 시나리오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생태계 구성 주체별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박효주, 양진홍, 2020).

48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표 2-9〉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유형

구분		내용
비즈니스 도메인	도메인 집중형	- 개인데이터가 생성되는 여러 분야 중 단일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메인 융합형	- 여러 산업 분야를 복합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비즈니스 주체	공공기관 주도형	- 공공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 기업 주도형	-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기존에 확보된 탄탄한 고객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고객 기반을 보유했다는 장점을 가진 대신,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스타트업 주도형	- 소규모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비즈니스로 조직 특성상 유연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고객 기반이 미약하고 고객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한계
비즈니스 추진 목적	공익 목적 추구	- 국민, 대중에게 주권을 보장하면서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동의 이익 추구	- 산업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새로운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
	자사 비즈니스 기회 확대	- 개인의 동의하에 개인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대하여 고객 Lock-in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 개인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서 동의 기록 저장, 데이터 수집, 서드 파티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 - 마이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수수하는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영위
	데이터 비즈니스	-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개인의 동의하에 플랫폼을 통해 제공 받아 별도의 제3자 서비스에 제공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1차로 가공한 후 그결과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 및 분석 결과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
	분석 비즈니스	- 개인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플랫폼 내에서 자체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 - 마이데이터를 1차로 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을 대상으로 이용 비용을 수수하거나 서비스에 연계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품 추천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 창출
	중개 비즈니스	- 개인 마이데이터를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고, 개인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비즈니스 - 수집된 마이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원데이터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으로 데이터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고,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에게도 수익 및 혜택을 돌려주는 형태의 수익 모델
	인에이블링 비즈니스	- 기존의 정보 보유기업(기관)들이 자사 비즈니스 영역을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확장하거나 신규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규제 준수 및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솔루션 제공 및 구축비용이 수익 모델

자료: 박효주, 양진홍. (2020). 공공영역에서 의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pp. 518-521 재구성.

최정민, 조영은(2020, p. 92)은 국내외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 쟁점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이 데이터 유통 산업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최정민 등, 2020, p. 92).

임태훈, 김규익, 이영환(2020)은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빅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개인정보 활용 현황,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 현황 분석을 통해 이 분야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문화체육관광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이동권 제정, 개인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제시하였으며, 개인데이터 보호 방안으로 알기 쉬운 개인 동의 서비스, API 보안 기술, 데이터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이영환(2020)은 개인데이터의 유통 허브로 기능하는 개인 주도형 본인 정보 통합관리체계 모형 도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주도형 본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개인데이터 플랫폼 서비스(PDS)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관계 정도에 따라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본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관련 법제도 분석, 본인정보 통합관리체계 기술 및 구축 방안,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제4절 소결

마이데이터는 일의적으로 합의된 정의나 개념은 없으나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이나 프로젝트 등에 폭넓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주요 국가 정책이나 선행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이데이터의 공통적인 개념은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에게로 개인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권리를 되돌려 주고, 이를 통해 개인 중심으로 개인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생태계는 크게 개인, 개인데이터의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개인데이터의 수집 및 전달 방식이 점차 발전하면서 개인데이터 활용 수준과 활용 범위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터 3법 개정 전후로 연구 주제가 크게 변화했다.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K-MyData’ 제도 도입 계획이 처음 소개된 이래로 2017년부터 마이데이터 개념이나 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등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금융 분야에서 2018년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발표 후 이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동권 등 마이데이터 법제도와 관련한 쟁점 사항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쟁점 사항이었던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확보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술, 관련 기술 및 데이터의 표준화,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금융산업별 영향 등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데이터 도입 전략으로는 정부 내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정부 서비스 활용, 민간 영역 확대 순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도입 전략뿐 아니라 분야별 마이데이터 도입 전략으로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본다.

둘째, 마이데이터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또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이동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 분야와 같이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창출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촉진할 만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인 개인과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복지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통 허브로 기능하는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 모형과 마이데이터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야 개인정보 현황 및 특성, 관련 기술 및 데이터의 표준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제1절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제2절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제1절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1. 영국

2011년 영국 재무부(Her Majesty's Treasury, HM Treasury)와 비즈니스 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 BIS)가 수립한 영국 경제 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채택한 소비자 권한 강화 정책(Better Choices: Better Deals-Consumer Powering Growth)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개인데이터 활용 정책으로 '마이데이터 이니셔티브(Midata Initiative)'를 공표하였다(황종성, 김기환, 윤상오, 박정은, 이유택, 2013, p. 34).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는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전자적 형식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은 기업 간 서비스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독려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 증진을 통해 혁신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김윤미, 2018,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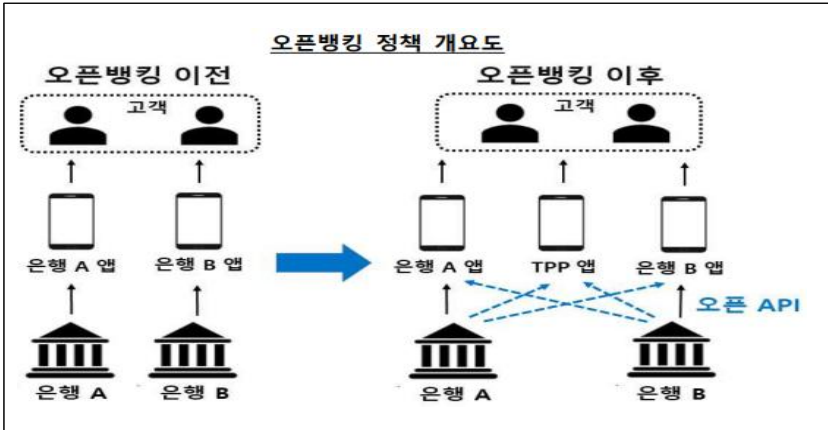
2013년 7월 4일 마이데이터 혁신 연구소(midata Innovation Lab, mL)가 설립되었으며, 2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마이데이터 기반 산업에 대한 보고서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다. 영국 비즈니스 혁신기술부(BIS)는 2013년 8월 국민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이동통신', '금융', '신용카드' 등 4가지 핵심 분야의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내용을 '기업 및 규제개혁법(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에 반영하여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2014년 4월에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노현희, 2021, p. 18).

영국의 마이데이터(midata)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추진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최근까지 꾸준히 관련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015년부터 은행업의 경쟁 촉진 및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 API 공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2017년 10월 소매금융시장 심사명령 2017(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Order 2017)을 발표하여, 2018년 1월부터 제3자(사업자)가 API를 통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인 ‘오픈뱅킹(Open Banking) 정책’을 시행하였다(노현희, 2021, p. 18).

영국의 오픈뱅킹 정책은 [그림 3-1]과 같이 소수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된 시장 구조 개편과 핀테크 서비스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9개 주요 대형 은행은 의무적으로 공동 API를 채택하여 고객이 요청하면 API를 통해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hird Party Provider, TPP)에 고객 거래기록, 잔액 정보 등 계좌정보를 전송하고, 제3자서비스제공기관(TPP)은 이러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비교 및 추천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노현희, 2021, p.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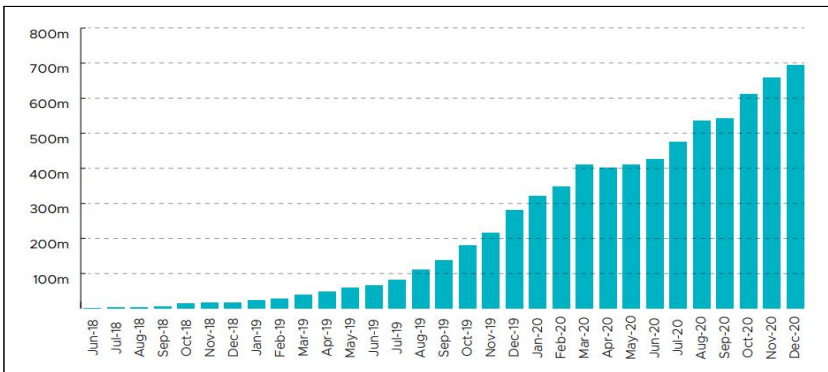
[그림 3-1] 영국 오픈뱅킹 정책 개요도



자료: 한국은행. (2019).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 p. 176.

영국 오픈뱅킹 이행 기구 OBIE(Open Banking 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 3-2]와 같이 오픈뱅킹 API 이용 건수는 지난 1년간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이전 연도 대비 2.4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OBIE, 2021, p. 20).

[그림 3-2] 영국 오픈뱅킹 API 호출 건수



자료: OBIE. (2021). Annual Report 2020. p. 20.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모든 산업과 생활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을 발표하였다.¹³⁾ 이 전략은 유럽 기업과 시민들이 유럽 지역 외 글로벌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적임을 비판하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ePrivacy규정(ePrivacy Regulation)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정보 주체인 개인이 사용 가능한 기술적 도구와 표준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의 관리 도구, 개인데이터 관리 앱, 블록체인 기반 중립적 데이터 유통을 담당할 개인데이터 협동조합이나 신탁기관 등 권리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직까지 개인데이터 관리 도구의 개발 및 적용은 초기 단계이나 그 잠재력이 크므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보 주체가 상세한 수준에서 개인데이터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개인데이터 공간(Personal Data Spaces, PDS)’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0조 데이터 이동권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개인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계가독형 포맷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개인데이터 앱 제공 기업 및 데이터 중개 기업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여 데이터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의 데이터 접근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ID를 강조하였다.

13)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EU 데이터 전략 계획 주요 내용 분석’을 참고하여 재구성.

한편 유럽연합(EU)은 EU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PIM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2019년 12월 1일 시작하여 2022년 8월 30일 종료할 계획이고, 2022년 5월 최종 SDK(Service Development Kit)를 배포할 예정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를 구축하여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시장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표 3-1〉 참조).

〈표 3-1〉 PimCity 프로젝트 목표

목표	설명
기술적 목표	- PIMS를 구축하거나 기존 PIMS를 빠르고 저렴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고, 상호 운용 가능한 PIMS 개발 키트 구현 - 데이터의 제어, 배포, 수익화를 지원하는 EasyPIMS 구축
비즈니스 목표	-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PIMS 이용자 및 데이터 구매자 확보 - 데이터 수익화 및 정보 주체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 개인데이터 생태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PIMS를 개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예산 경쟁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 목표	-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모듈을 통해 여러 플랫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신뢰 확보 - 중소기업이 PIMS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데이터 및 독점된 데이터로부터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럽 시민 및 산업을 위해 투명한 데이터 마켓 제공

자료: PIMCity 홈페이지(<https://www.pimcity-h2020.eu/about-the-technology>)에서 2021. 5. 10. 인출함.

PimCity 프로젝트의 범위는 개인데이터 관리, 보호 관련 정보 수집 및 평가, 개인 사용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와 메커니즘을 발굴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며, PIMCity에서 개발된 도구를 널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도 포함한다.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로는 개인 사용자, PIMS 기업, 데이터 구매자, 산업별 이해 관계자, 정책 및 규제 입안자, 연구 커뮤니티, 사회 등이 있다. 2021년 5월 기준 8개 영역, 30개 세부 활동으로 구성된다([그림 3-3], 〈표 3-2〉 참조).

구성요소	설명
WP4. 향상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도구	T4.1 :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설계 및 구현
	T4.2 : 쉬운 데이터 이동 및 통제를 위한 도구 개발
	T4.3 : 데이터 검증을 보증하는 방법론 설계
	T4.4 : 사용자 데이터를 위한 지식 추출 방법론 설계
WP5. 플랫폼 설계 및 통합	T5.1 : PIMCity 클라우드 컨트롤러 구현
	T5.2 : Open API 설계 및 플랫폼 통합
	T5.3 : 개인데이터 아바타 실행
	T5.4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실행
	T5.5 : 투명성 태그 실행
WP6. 개발 및 배포	T6.1 : 배포 및 커뮤니케이션
	T6.2 : 트레이닝 및 튜토리얼
	T6.3 : 커뮤니티 구축
	T6.4 : 비즈니스 및 개발 계획
WP7.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 및 윤리	T7.1 : 데이터 관리
	T7.2 : 제도적 요건 매핑
	T7.3 : 책임 있는 연구 및 혁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리포트
	T7.4 :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감시 및 실행
WP8. 프로젝트 관리	T8.1 : 프로젝트 관리
	T8.2 : 시스템 개발 및 배포 관리(생명 주기 관리)

자료: PIMCity 홈페이지(<https://www.pimcity-h2020.eu/about-the-technology>)에서 2021. 5. 10. 인출함.

PimCity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PDK(PimCity Development Kit)는 복잡한 개인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개발 키트로 구현한 것으로, 기업의 데이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10개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 PIMS를 구축하거나 기존 솔루션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3. 미국

미국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다만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민간의 데이터 유통 시장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국은 2011년부터 연방정부 주도하에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시행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이동성을 구현하였다.

스마트 공시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소비와 관련한 정보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맞추어 제공해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공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의료 분야의 개인 건강 데이터는 웹사이트에서 ‘블루버튼(Blue Button)’을 클릭하여 자신의 의료데이터 전자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의 개인 데이터는 ‘그린버튼(Green Button)’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관련 데이터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3의 서비스 기업이 본인 동의하에 API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블루버튼’이 이용자가 본인의 진료 기록을 다운로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블루버튼2.0’은 의료데이터 공유와 이를 위한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보험청(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CMS)이 주도하고 있는 블루버튼2.0 API는 미국의 메디케어 가입자가 의료 공급자, 임상 연구자 및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청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임태훈 등, 2020, p. 30).

미국 보험청(CMS)의 블루버튼2.0 API는 HL7 FHIR(Fast Health

Interoperability Resourc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API의 대상 데이터에는 의약품 처방, 1차 의료 치료 및 비용, 메디케어 보험급여를 포함하며,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임태훈 등, 2020, p. 30). 또한 이용자는 여러 의사나 의료기관과 보험 청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임상시험에 등록하여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도 있다(임태훈 등, 2020, p. 30). 미국 보험청(CMS)은 API 개발 서비스를 통해 의료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자와 연구 프로젝트에서 활용 중이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의료데이터를 블루버튼2.0 서비스를 통해 API 포맷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보험 사업자도 그들의 데이터를 개방해 블루버튼2.0 API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임태훈 등, 2020, p. 31).

한편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 Soft), 아마존(Amazon) 세일즈포스(Salesforce), IBM, 오라클(Oracle)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의료 표준화에 동참하여 각각 개발할 건강관리 제품에 의료정보 데이터 처리용 플랫폼 표준 HL7 FHIR와 오픈소스(Open Source)를 사용, 데이터 연계에 노력 중이다(ZDNet Korea, 2018. 8. 21). 이들 글로벌 기업은 HL7 FHIR 기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블루버튼2.0 API를 지원한다.

HL7 FHIR는 다양한 의료정보를 자원이라는 데이터 세트로 정의, 데이터를 개별 관리하거나 문서로 취합할 수 있게 고안된 데이터 처리 플랫폼 표준으로 HTTP 프로토콜을 통해, URL로 표현되는 위치에 XML·JSON 구조의 문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도록 설계한다(임태훈 등, 2020: pp. 30~31).

블루버튼2.0을 통해 처방전, 치료 및 시술 등 의료데이터에 접속하여

다른 의사와 공유할 수 있어 중복 검사를 줄이고 연속적 헬스케어 가능하다(임태훈 등, 2020, p. 31). 의사는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약사는 약물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효과 여부를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진료데이터를 수집하여 한 곳의 의료 대시보드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임태훈 등, 2020, p. 31).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미국 최초로 2018년 6월, 데이터 이동권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이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은 합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규제하지 않는 반면, 불법적인 데이터 매매행위의 규제를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최창수, 2019).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020년 9월 22일 데이터 이동권의 잠재력과 당면한 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데이터 이동 시 인증, 제3자의 개인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은 서비스 기업으로 개인데이터 이동 시 위험과 책임 문제가 부각되었다(임태훈 등, 2020, p. 20).

데이터 이동권으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이 보다 수월해지고,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술에 관한 논의에서는 인증, 전송 과정의 보안, 2차 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 이동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동에 대한 영향 평가나 인증 등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임태훈 등, 2020, p. 20).

아울러 데이터 이동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려는 기업들에게 보안과 본인 확인, 인증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스크린 스크래핑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API 사용이 보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았다.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로 데이터가 이동될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데이터 이동의 문제는 데이터 전송자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임태훈 등, 2020, p. 20).

4. 일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은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데이터 이동권에 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은행’을 통해 개인데이터 유통 체계를 갖추고자 시도 중이다. 일본은 2018년 5월 12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정보 신탁 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 버전1.0(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1.0)’을 발표하여 마이데이터 산업과 유사한 ‘정보은행’ 산업을 장려하였다(고환경 등, 2019, pp. 33-34). 정보은행은 ‘정보이용 신용 은행제도(情報利用信用銀行制度)’의 줄임말로, 개인데이터 활용 계약 등에 따라 개인정보 저장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데이터를 관리한다.

개인이 직접 자기정보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대리 관리 모델이다.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대리인이 개인 대신 타당성을 판단한 후 데이터를 제3자(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업 모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일본 정부는 정보은행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해 2014년 ‘정보은행 컨소시엄(Information Bank Consortium)’을 설립한 후 정보은행과 관련한 실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후지쯔(Fujitsu)와 금융그룹 이온(AEON) 등은 2017년 8월 중순부터 약 2개월 간 개인데이터 저장소(PDS)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FUJITSU Cloud Service K5 Personium Service’를 ‘정보은행’ 실증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정보 주체는 정보은행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대가로 코인을 받으며, 기업은 정보은행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정보은행 운영자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민간단체 등에 의한 인증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한 신뢰성을 충족시키는 주체를 인증하기 위해, 2019년 10월 ‘정보신탁기능의 인정 관한 지침 2.0(情報信託機能の認定に係る指針ver2.0)’을 발표하였다. 정보은행의 사업자 인정에 관한 지침 1.0버전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IT단체연맹의 인증 실적 저조, 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필수 인증의 의무 부재 등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각부 산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戦略的イノベーション創造プログラム(SIP))을 가동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취급 규정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¹⁴⁾

14)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참고하여 재구성.

제2절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중앙부처,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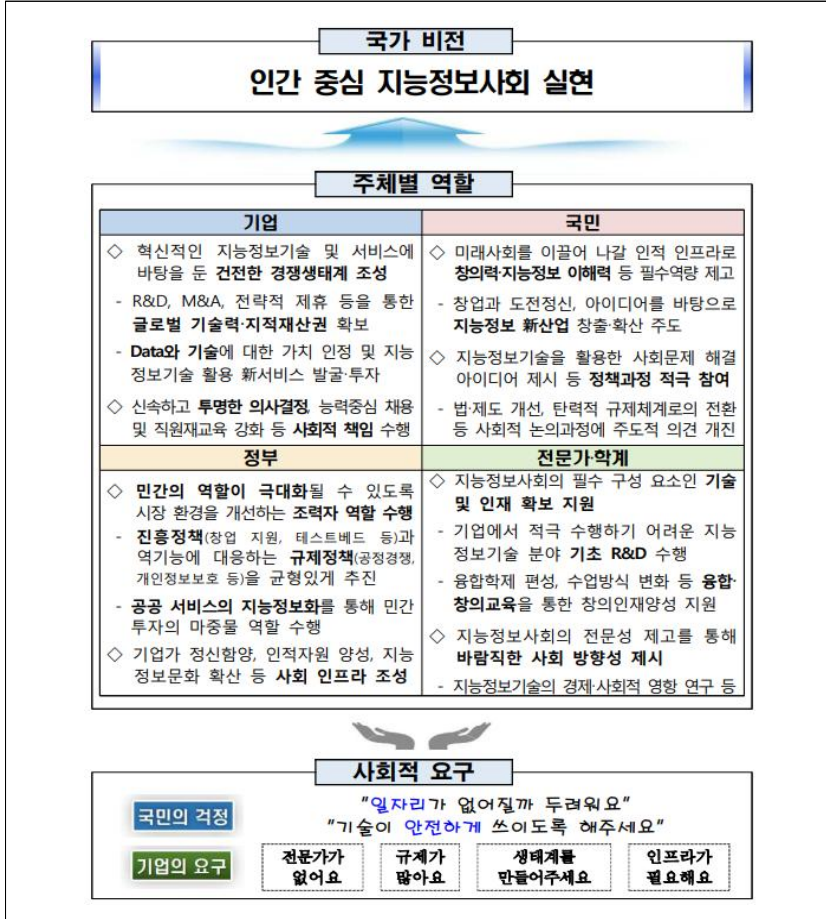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K-MyData’ 제도 도입 계획이 소개된 것을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조성은 등, 2019, p. 86).

2016년 12월 정부는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은 [그림 3-4]와 같이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업, 국민, 정부, 전문가학계 등 주체별 역할을 정의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6, p. 16).

또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보호하되 개인이 동의할 경우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K-MyData’ 제도 도입 계획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정책의 출발점이다(관계 부처 합동, 2016, p. 23).

[그림 3-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국가 비전, 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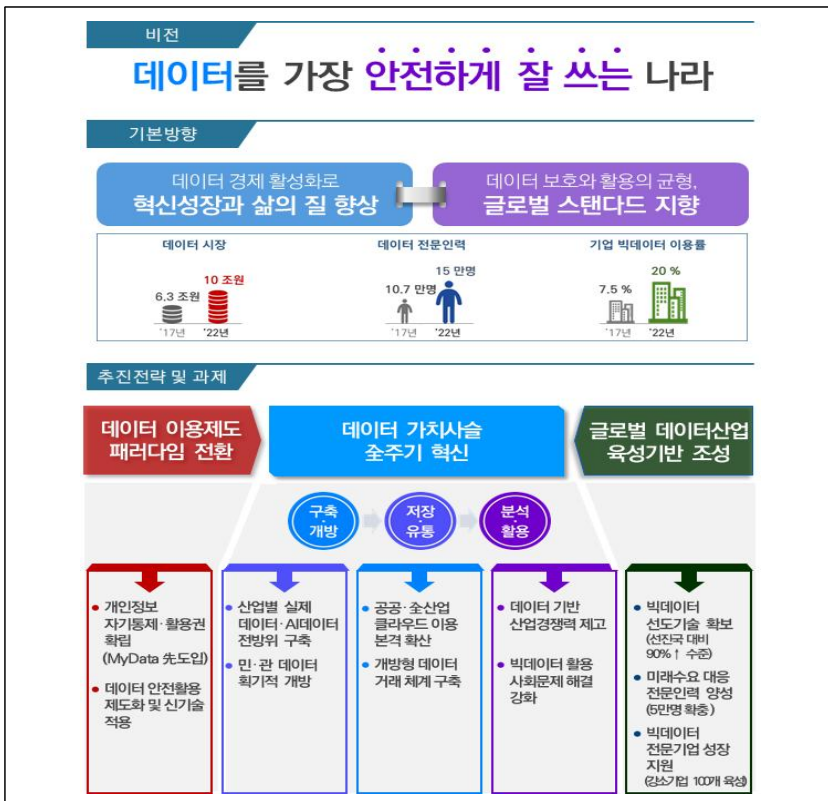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p. 16.

2.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다(이기

호, 2021, p52).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데이터 이용 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취약한 산업 및 기술 기반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개 추진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비전,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과제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p. 9.

우선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전략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보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 통제·활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전방위로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활용권 확립과 데이터 안전활용 제도화 및 신기술 적용 등 2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8,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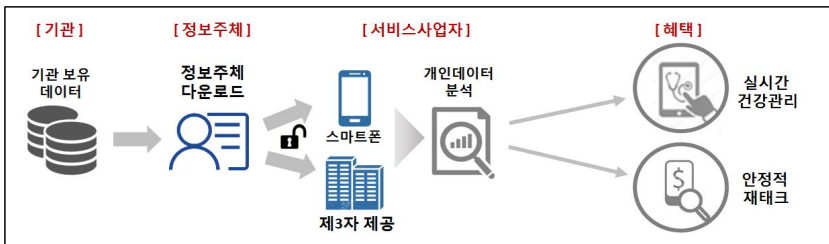
다음으로 ‘데이터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 전략은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쳐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양질의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한 산업별 실제 데이터·AI 데이터 전방위 구축, 민관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 등 2개 추진 과제, 둘째 데이터 저장·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공·전산업 클라우드 이용 본격 확산, 배당형 데이터 거래 체계 구축 등 2개 추진 과제, 셋째 데이터 분석·활용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업경쟁력 제고, 빅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해결 강화 등 2개 추진 과제 등 총 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8, p. 14).

마지막으로 ‘글로벌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조성’ 전략은 빅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융합, 분석 전문 인력 양성, 컴퓨팅파워 기반 기업성장 인프라 지원 등을 아우르는 역동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 과제로는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미래 수요 대응 전문 인력 양성, 빅데이터 전문 기업 상장 지원 등 3개를 선정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8, p. 22).

한편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전략 중 ‘개인정보 자기통제·활용권 확립’ 추진 과제로 선정되었다. 데이터 이동권 확립

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 정보를 스스로 통제 및 활용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 이를 통해 확보된 개인정보는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기관이 보유한 나에 관한 정보 및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 통신, 에너지, 의료, 유통 분야 등의 시범사업과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중이다(관계 부처 합동, 2018, p. 10).

[그림 3-6] ‘국민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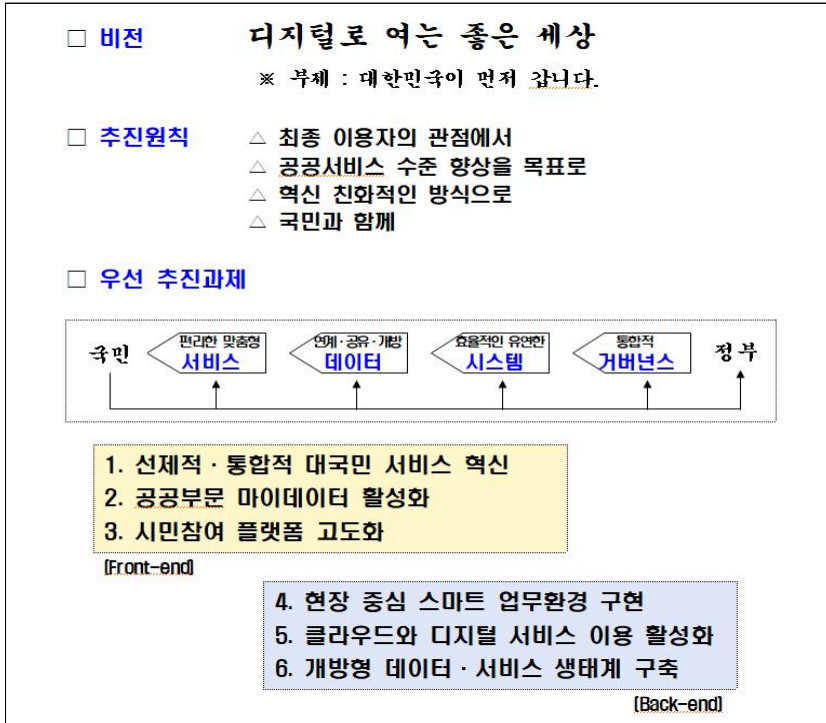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p. 10.

3.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019년 10월 정부는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비전으로, ① 최종 이용자의 관점에서, ② 공공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③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④ 국민과 함께 추진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6개 우선 추진 과제 및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그림 3-7 참조).

[그림 3-7]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비전, 추진 원칙, 우선 과제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p. 5.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는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으며,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사무에 대한 자기 정보 활용’,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 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모바일 신분증 도입’,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등 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관계 부처 합동, 2019).

〈표 3-3〉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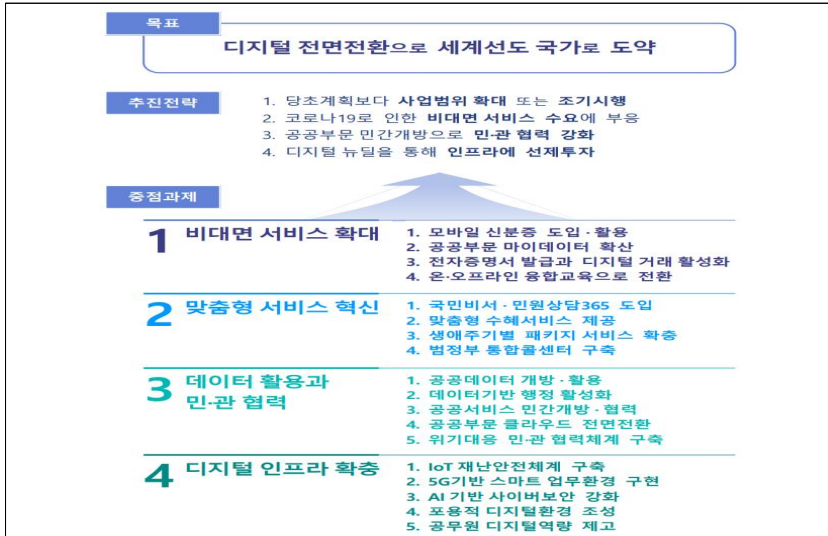
구분	내용
민원 사무에 대한 자기 정보 활용	-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는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에서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부문 자기 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 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모바일 신분증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 도입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 국민이 각종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공공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19).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 pp. 10-11.

4.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2019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이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당초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0년 6월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① 당초 계획보다 사업 범위 확대 또는 조기 시행, 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부응, ③ 공공부문 민간 개방으로 민·관 협력 강화, ④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프라에 선제 투자 등 4개의 추진 전략과 4대 중점 과제 및 1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p. 5.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원하면 검색·저장·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고, 금융·의료 분야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과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 중이다(관계 부처 합동, 2020).

5.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2021년 2월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정책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목표로, 국가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

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설정하고,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11대 실천 과제와 국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를 도출하였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국민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9대 체감형 서비스 중 ‘나의 건강정보 한눈에(의료)’, ‘실손보험 자동 청구(의료·금융)’, ‘슬기로운 소비생활(금융)’ 등 3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중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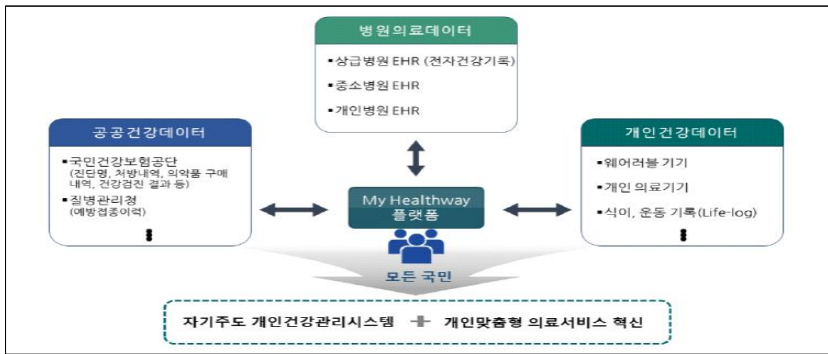
구분	내 건강정보 한눈에	실손보험 자동 청구	슬기로운 소비생활
서비스 개요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나의 건강기록 PHR’ 앱(App)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주문 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고정지출 항목을 판단하고,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는 서비스
활용 데이터	- 진료·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질병관리청)	-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진단서 및 처방전, 약제비 내역 등	- 결제·주문·환불 내역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등
기대 효과	- 개인 주도로 의료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관리 편의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	- 실손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별도 서류 발급 절차 없이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여 소액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 방지	- 주요 지출 항목에 적합한 혜택 극대화 및 자동 저축 등의 행동 유도를 통해 소득·소비·저축·투자에 대한 종합적 설계 지원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 자료. pp. 37-38.

‘나의 건강정보 한눈에’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나의 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앱(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자신의 진료 및 처방 데이터를 각

병원별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앱(App)을 통해 자신의 진료 및 처방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개인 주도로 의료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건강관리 편의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이 기대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그림 3-9] '나의 건강정보 한눈에' 서비스 개념도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자료. p. 37.

‘실손보험 자동 청구(의료·금융)’는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가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슬기로운 소비생활(금융)’은 주문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고정지출 항목을 판단하고,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기존에는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출 모니터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출항목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정교화를 통해 합리적 소비 행동변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6.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

2021년 2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 부처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 촉진’을 목표로 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보 주체는 자기결정권 확립과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 하며, 산업 단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수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 가 경계 없이(seamless) 유통·활용되는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 목표 와 세부 추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4차산업혁 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c).

〈표 3-5〉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 주요 추진 내용

구분	주요 추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구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정보 주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 (정보 제공자)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 (정보 수신자) 진입 규제 최소화 및 면밀한 사후 관리 - (공공 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 조성에 주력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적극 지원	- 주요 기업 마이데이터 공유·협력 - 데이터 옴부즈퍼슨 시즌 2: 마이데이터 현장 애로 해결 - 마이데이터 실증을 통한 확산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c).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pp. 31-37 재구성.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에서는 마이데이터 법제도 기반 확립을 위 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 책 추진의 근거를 정립하고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다소 지체됨에 따라 산업 분야별 개별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졌다. 금융 분야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제33조의2),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용어 정의(제2조 9의2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 운영 및 의무(제4조, 제11조, 제22조의9 등)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 분야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제10조의2)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제43조의2)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산업 분야별로 별도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과 체계적인 마이데이터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절 소결

2011년 영국에서 개인데이터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의 목적은 각국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수집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정보 주체에게 돌려주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즉 이를 통해 국민은 개인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국가는 개인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분야별 시범 사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축적된 결과를 토대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래로,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국민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 과제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요 외국에 비해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하지만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계획 추진, 2020년 6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과 금융, 의료 분야 등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2021년 2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2021년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에서는 마이데이터 법제도 기반 확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짧지만 체계적이며 일관된 마이데이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향후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분야별 마이데이터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본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제1절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Business)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Legal)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Technology)

제4절 소결

제4장 국내외 마이데이터 활용 현황

제1절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Business)

1. 주요 외국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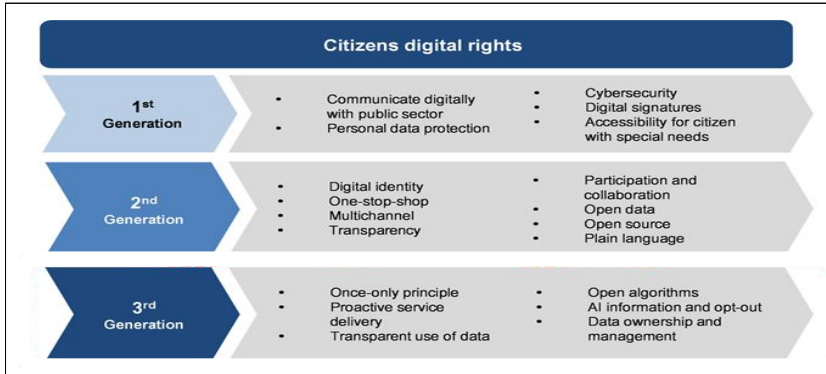
가. 정부 주도의 개인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OECD는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이와 함께 해외 각국은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개인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개인데이터 오너십(owner ship)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데이터의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15) OECD,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Panama : Enhan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https://doi.org/10.1787/615a4180-en>, 2019.

[그림 4-1] 시민 주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 권리



자료: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Panama : Enhan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p. 58.

1) 스페인의 ‘시민 폴더’

스페인인 데이터 주도 정부를 목표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데이터의 목록과 활용 현황을 국민인 이용자가 직접 조회 및관리가 가능한 ‘시민 폴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⁶⁾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은 ‘Cl@ve’라는 행정 기관용 단일 디지털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 폴더(Carpeta Ciudadana, Citizen Folder)도 생성할 수 있다.

국민은 개인 폴더를 통해 자신의 개인데이터에 접근하고, 여러 부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른 부처나 기관 등에 전송할 수 있으며, 행정 처리 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제공 동의 이력과 행정기관 간 개인데이터 공유 이력 열람이 가능하며, 플랫폼에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최신 데이터를 연계해서 제공한다.

16)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Morocco, OECD Publishing, 2018. 7. 9.

〈표 4-1〉 스페인 시민 폴더의 주요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설명
My File	사용자가 열어봤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인 내용 조회
My Notification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알람으로 제공
My Data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 개인 신상, 고용, 교육, 부동산 등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영수증이나 증명서 등도 발급
My records	행정기관 간 전송/공유된 데이터 현황 확인
My information	개인데이터 관련 정보 통합 제공 및 행정서비스 관련 통합 안내

자료: Pineda. (2018). Administración electrónica. Parte III. Carpeta Ciudadana: Nuestra relación con la administración es algo inevitable, la carpeta ciudadana concentra todos ellos en un único punto; 임태훈 등. (2020).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 p. 1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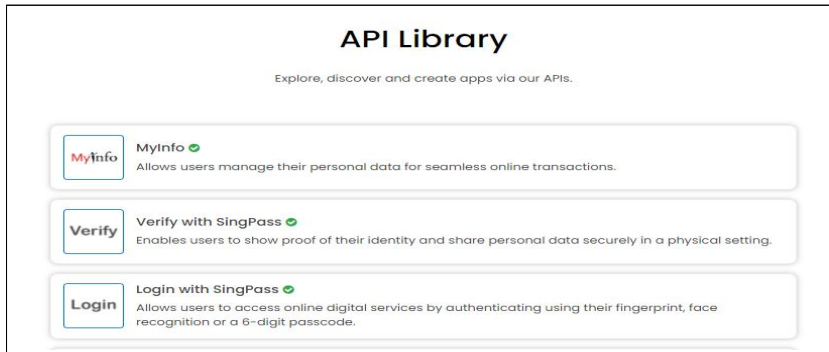
2) 싱가포르의 ‘Myinfo’

싱가포르는 National Digital Identity(NDI) 플랫폼의 일환으로 스페인 시민 폴더와 유사한 서비스 Myinfo를 제공한다. 여러 공공기관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데이터를 Myinfo에서 조회하고 제3의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데이터 유통 시, 데이터 입력 실수를 방지하고 보조금 신청, 고용 비자 연장, 계좌 개설 등의 민원 처리 시 서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020년 11월 기준 56개 공공기관의 171개 서비스와 129개 민간기업의 324개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

Myinfo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분 인증 수단인 SingPass를 발급받아 이용하며, 이때 신원 정보(National Registration Identity Card, Foreign Identification Number 등)를 자동으로 불러온다. MyInfo 서비스는 개인데이터를 정부 검증 데이터(Government verified data items)와 사용자 제공 데이터(User provided data items)로 분류한다. 한편 Myinfo Business 서비스는 사업

자들이 기업의 데이터와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관리·제공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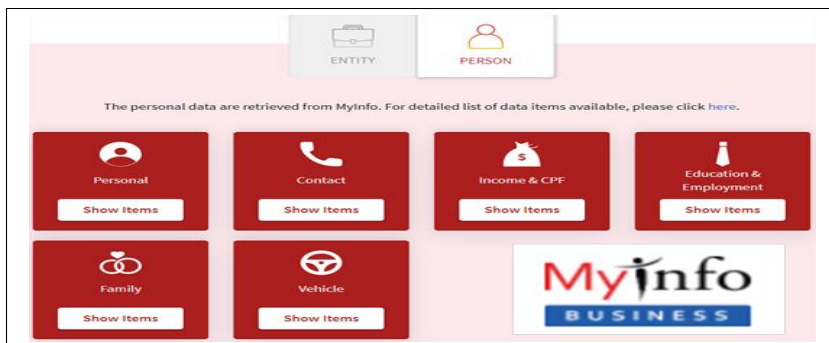
[그림 4-2] National Digital Identity(NDI) 제공하는 Myinfo 및 Singpass API



자료: singpass 홈페이지(<https://www.ndi-api.gov.sg>)에서 2021. 5. 10. 인출함.

최근 MyInfo Business 서비스를 통해 사업가들은 자신의 기업 관련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함께 관리하면서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임태훈 등, 2020; p12).

[그림 4-3] 싱가포르 Myinfo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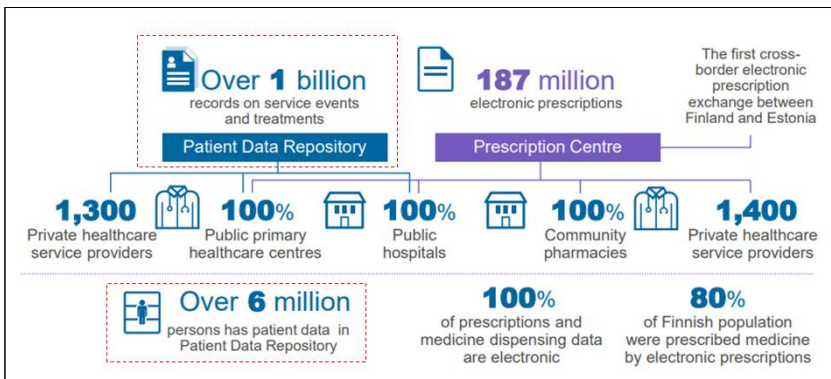


자료: myinfo business 홈페이지(<https://business.myinfo.gov.sg/data-items>)에서 2021. 5. 10. 인출함.

3) 핀란드의 'Kanta'

핀란드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공통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중이다. 기초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자 처방전, 진료 기록, 개인 건강 기록 등 거의 모든 의료데이터를 Kanta 시스템에 저장하고 개인이 원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Kanta 시스템에 저장되는 의료데이터는 국제 표준인 HL7 FHIR를 따른다. 본 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개인데이터 유출 및 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국민 의료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설득과 신뢰 확보 노력으로,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한편 2019년 5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Act on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이 통과되어,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의 2차 이용을 허용하는 과학적, 통계적,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4] Kanta 시스템 활용 현황



자료: Outi Lehtokari. (2019). Kanta services for healthcare: Prescription service and Patient Data Repository.

플랫폼의 최종 목표는 이용자가 Kanta 시스템의 전자 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유럽연합(EU) 전 국가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19년 핀란드 전자 처방 시스템을 에스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핀란드에서 발급받은 전자 처방전을 이용하여 에스토니아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고, 반대로 에스토니아에서 발급받은 전자 처방전으로 핀란드에서 약을 구입할 수도 있다.¹⁷⁾ 핀란드는 향후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등으로 Kanta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민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1) Meeco

Meeco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접근, 제어, 위임 및 동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Meeco 서비스는 금융, 회계 및 법률, 건강 및 운동, 여행, 멤버십, 교통, 재산, 보유 기기(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및 웨어러블 기기, 사고 활동, 공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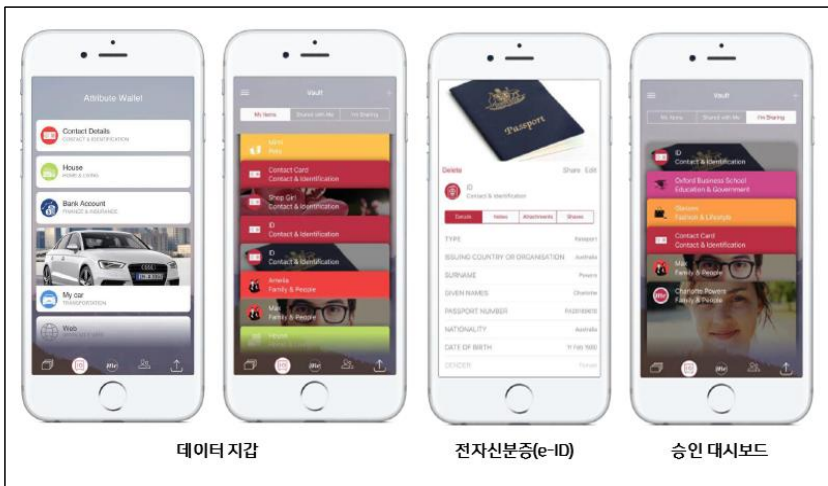
Nexia Wealth Connect By Meeco는 회계사와 고객이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 자산과 부동산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하여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교환

17) Estonian e-prescriptions are now valid to buy medicines in Finland, 2020. 6. 2.

함으로써 위험 감소 및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본 서비스의 분산형 자격 증명 지갑(Verified Credentials Wallet)은 OpenID를 통해 발행된 증명서 발급, 저장, 공유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W3C 표준을 통해 이용자의 생년월일이나 재무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성인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 Meeco 사용자 앱 예시



자료: Meeco Planet Pty Ltd. (2018). Zero Knowledge Proofs of the modern digital life for access, control, delegation and consent of identity and personal data. pp. 12-13.

2) Cozy

Cozy 클라우드는 사용자에게 개인별 클라우드 저장소인 Cozy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하여 디지털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디지털 홈 서비스이다. Cozy는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돌려주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과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한다. 언제든지 데이터를 이동 및 분리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광고가 붙는 알렉사, 구글홈, 아마존 에코와 기타 개인용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를 데이터 사용의 제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Cozy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활용, 생태계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 기능을 통해, Cozy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ozy로 결합되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문서, 사진, 은행, 비밀번호, 증명서 등)도 수집, 저장,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ozy는 데이터 활용 기능을 통해 개인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커넥터와 앱(150개 이상의 커넥터와 앱 활용 중)을 제공 중이며, 서비스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허브로서 활용 가능하다. Cozy는 생태계 거버넌스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연결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3) Digi.me

Digi.me는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및 동의를 통해 개인이 더 풍부하고 품질 좋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촉진하여 기업이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igi.me는 개인데이터를 열람, 저장, 수정하지 않는다. 오직 개인만이 데이터에 접근, 제3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개인데이터 처리와 공유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또 개인 데이터를 사용자 자신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 처리는 스마트폰 앱에서만 진행되며, 데이터 싱크를 위해 일시적인 가상 개인 클

라우드를 활용하고 싱크 후 데이터는 파기된다.

개인데이터 조회/관리보다 수집과 공유에 중점을 두는 데이터 유통형 PDS 모델이다. Digi.me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쉽게 전송받을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 소스는 인증 과정을 거치며, 소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정규화 한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저장된 개인별 고유 키로 암호화되며, 직접 선택한 개인용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개인 사용자는 iOS, 안드로이드, MAC, PC 등의 앱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조회, 검색, 관리, 공유할 수 있다. 기업은 digi.me SDK/API를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서를 등록하고, 개인 사용자가 동의하면 데이터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명시적이고 알 권리가 보장된 동의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Digi.me의 동의 인증서를 통해 개인 사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데이터 공유가 실행되며, 동의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는 JSON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전체 라이브러리를 영구 삭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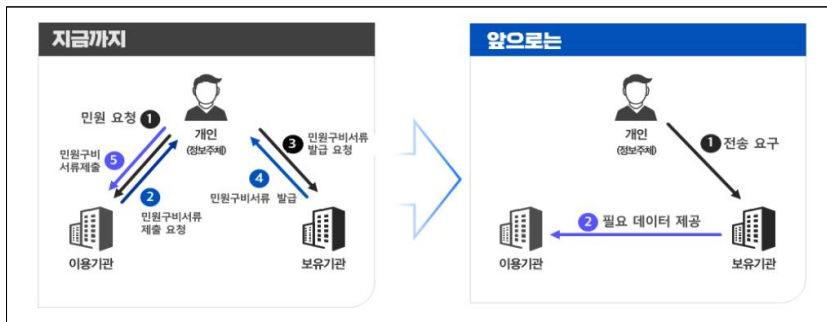
2.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21c). 현행 방식이 공공·민간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

비서류를 보유(발급) 기관에서 미리 신청·발급받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편한 종이 서류 중심이라면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은 본인 정보 보유기관에 정보 전송을요구해 서비스 신청 기관에 필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이기호, 2021, p. 58).

[그림 4-6]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2021.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보도자료. p. 2.

공공 마이데이터는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2021년 2월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6개 관계기관, 8개 서비스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을 개시하였다.

〈표 4-2〉 공공 마이꾸러미 서비스 목록

서비스명	주요 내용	관계기관
나의 건강기록 마이꾸러미	-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건강기록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은행 신용대출 마이꾸러미	- 대출 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하는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카드 신청 마이꾸러미	- 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	
개인채무 조정 마이꾸러미	- 과중 채무자의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자금 신청 마이꾸러미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약홈 마이꾸러미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경기 일자리정책 고용보험 확인 마이꾸러미	- 경기도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간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 마이꾸러미	- 경기도 내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면접 장 대여 등을 간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2021. 2. 25.).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보도자료. p. 6.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관계기관 30여 개 공공 서비스에 대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1c). 또한 2022년에는 민·관 협력 서비스 발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고도화와 행정·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민·관 협력 서비스 발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c).

나.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1)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2019년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이기호, 2021, p. 61).

1단계인 2020년까지 BRP/ISP 사업을 통해 정보화 전략, 관리 체계 수립,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명확한 업무 설계 및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하였다(한국보건 의료정보원, 2020b, p. 8). 2단계인 2021년에는 공공 및 2·3차 의료기관 EMR 시스템 개발 및 의료데이터 연계, 웨어러블 기기 시범 연계, 표준화 시스템 적용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3단계인 2022년까지는 1차 의료기관 EMR 연계 및 웨어러블 기기 연계 확대, 표준화 시스템 적용 확대 등이 계획되어 있다(한국보건 의료정보원, 2020b,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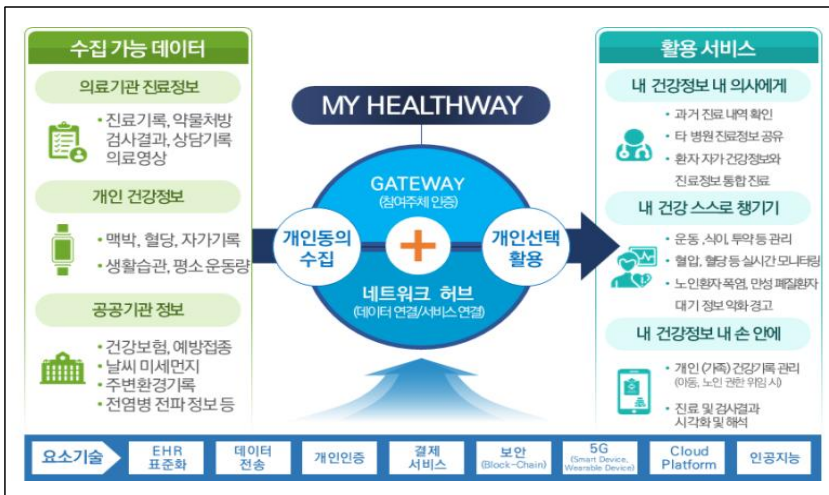
개인의 의료정보를 제3의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0년 3월 4일 개정된 의료법 제21조 제5항이다¹⁸⁾. 개정 의료법을 통해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동의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 헬스웨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플랫폼에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기

18) 의료법 제21조: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관이 보유한 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 개인 건강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저장도 가능하다. 조회 또는 저장한 데이터는 이용자가 선택하여, 개인 건강정보 활용기관에 제공하면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4).

[그림 4-7]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구조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p.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통합된 개인 의료데이터(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유전체 정보 등)는 빅데이터, AI 등을 결합하여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과 진료 지원에 활용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7). 예를 들어 만성폐질환자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 및 자외선 세기 등 주변 기후·환경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가 악화됨을 경고하고, 노인 환자에게 폭염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8).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MRI·CT·X-Ray 등의 영상 자료도 전자적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기 투병 환자의 완치 기록, 자녀의 출생 기록 등 개인에게 중요한 진료 기록을 개인이 저장장치에 보관함으로써 병원의 휴·폐업 등으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8).

제공기관별로 상이한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해,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표준 제공 항목(Core Data Set for PHR)을 확정하고, 국내외 의료분야 표준화 동향을 고려하여 데이터 세부 항목별 설명 및 데이터값, 참조한 용어 표준·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2. 24).

〈표 4-3〉 데이터 항목별 표준 제공 항목(예시)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데이터값	참조 용어 표준·기준
개인 식별 정보	개인 ID	개인 식별자	텍스트	
	성명	개인 성명	성/이름 구성	
	생년월일	개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코드	개인 성별 코드	M/F	
	주소	도로명, 도로번호, 상세주소, 우편번호	텍스트	
진단 내역	진단일자	해당 상병의 진단일자	YYYYMMDD	
	상병 코드	상병 코드	코드	보건의료 용어 표준(진단), KCD7
	진료 구분 코드	외래/입원 등 구별 코드	HL7 Act코드	HL7 Act코드
약물 처방 내역	처방 일시	약품의 처방 일시	YYYYMMDD	
	처방 약품 코드	처방된 약품 상품 코드	KD코드	KD코드
	주성분 코드	처방 약품의 주성분 코드	ATC 코드	ATC 코드

항목	세부 항목	설명	데이터값	참조 용어 표준 기준
	용량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양의 정수값	
	복용 단위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약 총용량 단위	텍스트	
	횟수	처방된 약품의 1일 투여 횟수	자연수	
	투여 기간	처방된 약품의 총투약 일수	자연수	
병리 검사 결과	검사 일시	해당 검사 수행/시행 일시	YYYYMMDD	
	검사 코드	해당 검사 코드 -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EDI	심평원 EDI코드, 보건의료용어표준(검사)	심평원 EDI코드, 보건의료용어표준
	검사결과값	해당 검사의 결과값 (수치 결과 또는 문자열)	텍스트	
생체 신호	측정일자	측정일자	YYYYMMDD	
	혈압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측정된 혈압	0~300 사이의 자연수	LOINC
	심박수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측정된 체온	임의 정수값	LOINC
	산소포화도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측정된 심박수	임의 정수값	LOINC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p. 1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API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데이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원천 유형별로 HL7 FHIR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표준연계 API를 구축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0).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공공기관 데이터 연계 허브로 기존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1).

〈표 4-4〉 병원 의료데이터 제공 API 목록(예시)

API 명	API 상세 설명
환자 기본 정보 API	사용자의 기본 정보 조회
개인 인증 API	마이 헬스웨이 게이트웨이를 통한 사용자 인증
개인 동의·철회 API	사용자의 동의·철회 상태 조회
진단 내역 API	사용자의 진단 내역 조회
약물 처방 내역 API	사용자의 약물 처방 내역 조회
검체 검사 결과 API	사용자의 검체 검사 결과 조회
병리 검사 결과 API	사용자의 병리 검사 결과 조회
영상 검사 결과 API	사용자의 영상 검사 결과 조회
기능 검사 결과 API	사용자의 기능 검사 결과 조회
수술내역 API	사용자의 수술 내역 조회
알러지 및 부작용 API	사용자의 알러지 및 부작용 조회
예방접종 내역 API	사용자의 예방접종 내역 조회
생체신호 및 상태 API	사용자의 생체신호 및 상태 조회
흡연 및 음주 상태 API	사용자의 흡연 및 음주 상태 조회
진료 예약 API	사용자의 의료기관 진료 예약
수납 내역 확인 API	사용자의 수납 내역 확인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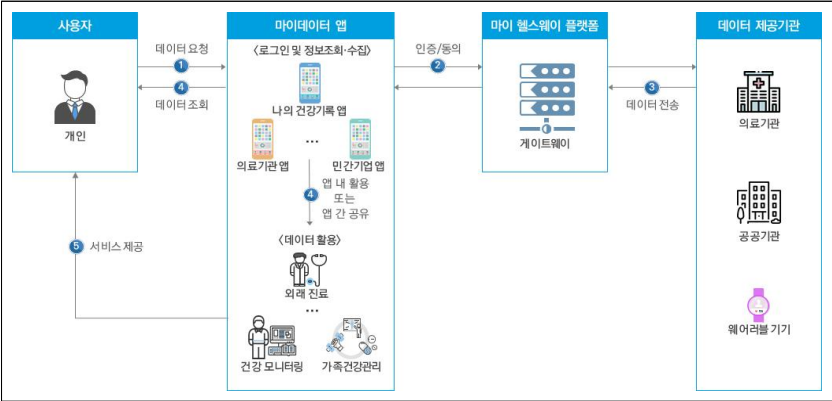
종합병원 이상에는 EMR 서버에 매핑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직접 연계하며, 병의원에는 민간 EMR 솔루션에 표준 모듈을 배포하여 연계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1). 한편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연동하기 위해 국제 의료데이터 교환 표준(ISO/IEEE 11073), 국내 표준(TTA.KO) 등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활용하게 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1).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과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문성 등을 심사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5).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보건의료정보원이 전담하여 플랫폼 운영 및 사전 심사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8).

의료데이터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를 구현하기 위한 BPR/ISP 컨설팅이 진행되어, ‘나의건강기록 앱(APP)’이 개발되었다. 이 앱은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으로부터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 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 이력(질병관리청) 등을 조회하고 HL7 FHIR 또는 PDF 등의 표준화된 형식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또 이를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등 제3의 서비스 앱에 공유할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도 전송할 수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22).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서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21. 2. 24). 첫째, 사용자는 본인이 선택한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 등 데이터 제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데이터의 전송을 요청한다. 둘째,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를 인증하고 제공기관에 인증 및 동의 결과를 전달한다. 셋째, 개인데이터 제공기관은 인증 및 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전송한다. 넷째, 사용자는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를 조회 후, 저장하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전송 또는 공유한다. 다섯째,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은 사용자에게 의료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설명 등 콘텐츠 정보 제공, 진료나 건강관리서비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8] 플랫폼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12.12.).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이용자는 본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열람, 저장 및관리한다. 스마트폰 또는 개인 클라우드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저장하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연결된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다.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해석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보여줄 수도 있다.

<표 4-5> 연계 대상 기관 및 주요 의료데이터 목록

공공기관	PHR 활용 가능한 주요 의료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 정보, 진료 및 투약 정보, 진료 내용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제 의약품 내역, 약품 코드, 진료 일자, 진료과, 요양급여 명세서 등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내역 등
국립암센터	중앙 암 등록 자료 등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자료,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 등

자료: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2020a). EMR 인증기준 표준 개발 가이드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개인 건강데이터(PHR) 모바일 서비스 개념검증 사업 제안요청서. p. 15.

‘나의건강기록’ 앱과 연동되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본인 동의 후,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제3의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전달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마이 헬스웨이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서 향후 비의료 건강정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통해 교류되고 있는 진료기록요약지(Care Record Summary, CRS) 서식을 참고하여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병원 의료데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진료기록요약지에는 진단 내역, 약물 처방 내역, 검체·병리·영상·기능 검사 결과, 수술 내역, 알리지 및 부작용, 생체 신호 및 상태 등의 데이터가 기록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12).

아울러 현재 시판 중인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라이프로그(Lifelog) 중 생체 신호(혈당, 혈압, 심박수), 운동(걸음 수), 신체 측정(키, 몸무게), 휴식(수면) 등 주요 항목 위주로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로써 여러 디바이스를 사용하거나 디바이스를 변경할 경우에도 개인 의료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보존할 수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13).

응급 상황이나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 EMR으로 의료데이터를 전송하여 의료진이 기존의 치료 이력을 참고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동의하면 현재 진료 중인 의료진이 의료데이터를 즉시 열람 가능하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p. 6).

〈표 4-6〉 마이데이터 활용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예시)

❶ 외래진료 중복 처방 방지 서비스	❷ 응급상황 정보 공유 서비스
다운로드한 투약 이력을 외래 진료시 의사에게 보여주고 중복 처방 방지	응급 상황 발생시 한번의 클릭만으로 본인 진료 기록을 구급 대원과 병원 응급실에 전송
❸ 백신 부작용 알림 서비스	❹ 약물 알려자부작용 알림 서비스
예방접종 백신 투여 시 의료진에게 과거 병력 투약 이력 정보를 전송하여 부작용 방지	약물 처방투여 시 의료진에게 알려자부작용 정보를 전송하여 의료 사고 방지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p. 7.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저장하고, 정보 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동의하에 조회·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한편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는 2021년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대상으로 한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앱)를 먼저 제공한 후,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의료기관 진료 기록, 라이프로그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이기호, 2021).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전 심사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2) 지방자치단체 복지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기호, 2021, p. 62).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안심 이용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공공 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 경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이동 경로가 겹칠 경우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개인의 통행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기호, 2021, p. 62에서 재인용).

대전시는 마이데이터 기반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대전복지재단에 등록된 장애인의 개인데이터와 대전시가 보유한 도시데이터를 결합하여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과 결제가 간편한 원스톱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자신문, 2020).

부천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개인의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최적의 교통수단 재배치 방안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이동 데이터, 카드 및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하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중심 마이데이터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경기도는 가치 공유에 중점을 둔 데이터 배당 정책과 간편 복지서비스

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배당 정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다. 2020년 2월 지역 화폐 카드 중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36만 782개에 대해 카드당 120원을 자동 지급하였다(경기도청, 2020; 이기호, 2021, p. 63에서 재인용).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서비스 구현 사업은 청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중 제출 서류가 많아 불편하고 지역 화폐로 수급이 가능한 10여 개를 선별하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경기도의 맞춤형 복지 정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받게 되며, 한번의 클릭으로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경기도청, 2020; 이기호, 2021, p. 63에서 재인용).

3) 기타: 복지멤버십

2021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365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 기준도 복잡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이기호, 2021, p. 63).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하다(이기호, 2021, p. 63).

복지멤버십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21년 9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1차 도입한 후 2022년에는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기호, 2021, p. 63).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사회보장정보시

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 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안내 대상이 되는 사업은 2021년 9월 1차 개통에서 현금 급여 사업, 감면 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적용한 후 2022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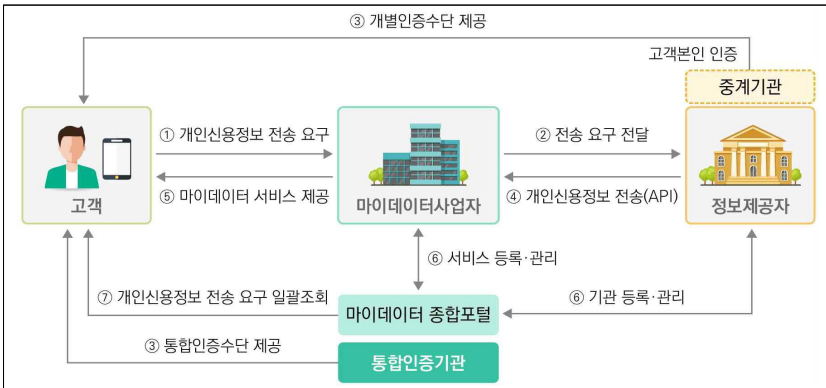
복지멤버십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수집된 국민의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할 수 있음)와 다소 차이가 있다(이기호, 2021, p. 64). 그러나 복지멤버십은 향후 마이데이터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커진다면 실질적인 사회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기호, 2021, p. 64).

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2018년 7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이기호, 2021, p. 60).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2021).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4-9]와 같다.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①)를 하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전달(②)하고 고객 본인 인증(③)을 통해 정보 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API 방식¹⁹⁾으로 수집(④)하고,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분석하여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통합 조회 등)를 제공(⑤)하게 된다.

[그림 4-9]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성 및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p. 30.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재무 현황 분석, 신용 관리·정보 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추천 등이 있다(〈표 4-7〉 참조).

19)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 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 규격 및 절차(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p. 5).

〈표 4-7〉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내용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 은행·카드·보험사·통신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하여,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재무 현황 분석	-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 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 위험, 소비 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분석
신용 관리·정보 관리 지원	- 금융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 시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긍정적인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적인 정보 삭제·정정 요청 등을 수행
금융상품 정보 제공·추천	-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 상태·재무 현황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

자료: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p. 3.

첫째, 신용정보 통합 조회는 은행·카드·보험사·통신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 거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 주체 본인이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재무 현황 분석은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 정보 등을 기초로 정보 주체의 소비 패턴·신용도·재무 위험 등 재무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신용·정보 관리는 재무 현황 분석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하고, 필요할 때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긍정적인 정보를 제출하며, 부정적 정보의 삭제·정정 요청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금융상품 정보 제공·추천은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재무 현황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금융상품별 가격·혜택을 비교하여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에서 비롯한다.

20)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신용정보 주체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신용정보 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정보를 통제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조항에 의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때 주요 사항을 우선 고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시 주요 사항에 한정할 수 있어 동의 원칙을 완화하였다. 또한 정보 활용 등급을 부여한 후 정보 활용 동의 시 등급을 같이 고지하는 동의 등급제를 도입하여 신용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4-8〉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신용정보 제공자	제공되는 신용정보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등	1. 금융거래 정보 2. 국세·지방세 납부 정보 3. 보험료 납부 정보 4. 기타 주요 거래 내역 정보	정보 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CB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료: 관계 부처 합동.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 예고 주요 사항.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에 영향을 받아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개별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 API를 준비 중이다.²¹⁾

21) 금융결제원. (2020. 5. 21). 금융인증센터로 인증시장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

[그림 4-10] 표준 방식의 신인증 서비스 개념도



자료: 금융결제원. (2020. 5. 21.). 금융인증센터로 인증시장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변경했고, 일부 은행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인증 방식은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여러 금융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 본인 확인, 약관 동의, 출금 동의 등에 활용 가능하다. 이용자가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면 이용자에게 이를 안내한다(임태훈 등, 2020, p. 53). 금융결제원은 이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DID) 및 목소리 인증 등의 융합 인증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표 4-9〉 현행 인증 방식과 신 인증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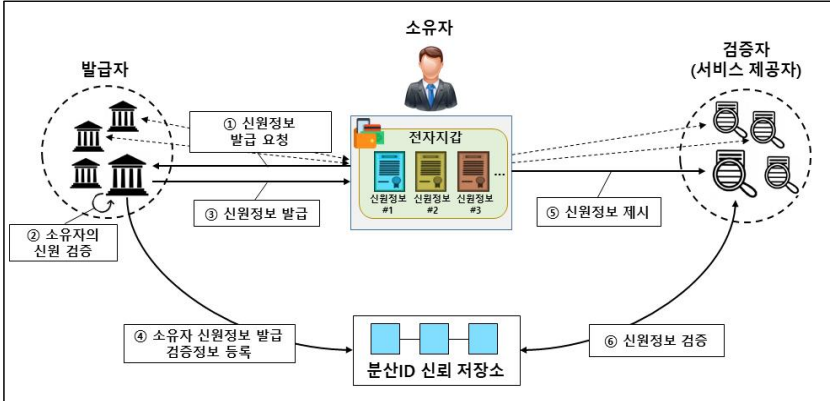
구 분	현행 인증 방식	신 인증 방식
인증서 발급	은행별 절차 복잡·상이	절차 간소화 및 단일화
인증서 유효 기간	1년	3년
인증서 갱신	갱신 시기에 고객이 직접 갱신 필요	자동 갱신 가능
인증서 비밀번호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인증서 이용 범위	은행·신용카드·보험·정부 민원	다양한 영역 확장
인증서 보관	하드/이동식 디스크 등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일부는 고객 단말기 보안영역)
인증서 이동·복사	이동·복사 절차 수행 필요	이동·복사 불필요 (클라우드 연결하여 이용)

자료: 금융결제원. (2020. 5. 21.). 금융인증센터로 인증시장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

한편 금융보안원은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의 기술 명확성 제공 및 상호 운용성·보안성 확보를 위해 「분산ID를 활용한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표준을 제정하였다.²²⁾ 분산ID(DID:Decentralized IDentity)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생활의 신분증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 정보(디지털 신분증)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이며,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분산ID 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 및 표준 전문가가 분산ID 표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분산ID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의 적합성과 활용 가치를 검증하게 된다(임태훈 등, 2020, p. 54).

22) 금융보안원, 분산ID 금융보안표준 제정, 보도자료, 2020. 4. 1.

[그림 4-11]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개요



자료: 금융보안원. (2020. 4. 1.). 분산ID 금융보안 표준 제정. 보도자료.

이 표준은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 신원증명 및 상호 연동 방법 및 정보보호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다. 분산ID를 이용한 신원 관리를 구성하는 기술적·관리적 요소를 프레임워크로 정의하고,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다양한 구현 모델을 정의하여 분산ID 기술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임태훈 등, 2020, p. 55). 분산ID의 기능, 신원증명 유형 및 신원보증 수준을 정의하고, 신원정보 구성 방법, 검증 절차 및 방법 등 분산ID 동작 방식과 분산ID 상호 연동 지원을 위한 구현 방법 및 요구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거버넌스, 서비스, 보안 연결, 네트워크, 데이터,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저장, 이용·제공, 관리, 법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도 정의하고 있다(임태훈 등, 2020, p. 55).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등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2021년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

대면 정보기술(IT)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표준 API 개발 인력이 부족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 제공자의 API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고, 적용 정보 표기 및 과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 가입 방지 정책 등 일부 중요한 정책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2년 1월로 연기하였다(이기호, 2021, p. 61). 향후 금융 마이데이터는 제공 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통신 등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이 등을 검토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c).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9~2020년에 5대 분야(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학술)에서 17개 실증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및 실증서비스 협의체도 운영하였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해커톤, 컨퍼런스,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 및 데이터 이동권, 동의 방식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표 4-10〉 2019~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분야 (연도)	과제명	서비스
의료 (2019)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검진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 검진·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양 건강식단 추천 서비스
의료 (2019)	응급 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 응급 환자가 응급 진료기록 및 일상 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건강지갑” 서비스
의료 (2019)	MyHealth Data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 환자가 동의한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 개발,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하여 개인 맞춤 코칭 서비스
금융 (2019)	본인정보 통합조회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에너지 (2019)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절감 서비스	- 세종시 주민 대상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수급 예측,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통 (2019)	개인데이터 저장소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관리 서비스	- 결제 데이터와 가맹점 방문객 정보, 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상 경영 개선 및 개인 대상 할인·이벤트 정보 제공 서비스
유통 (2019)	소상공인 성장을 돕는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위한 문서 자금 플랫폼을 통해, 간편 본인정보 전송, 계산서 발급 및 정책 자금 매칭 등 경영 지원 서비스
기타 (2019)	연구자를 위한 매칭 및 분석 서비스	-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학술 연구자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 “스칼라뱅크” 구축
의료 (2020)	DTC(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를 통한 개인 건강 코디네이터 서비스	- 처방전, 건강검진, 유전자 검사 결과 통합관리 플랫폼 및 맞춤형 토달헬스케어 서비스(보험 분석, 건강식품 추천, 처방 복약 지도 등)
의료 (2020)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커넥티드 헬스케어 서비스	- 건강검진, 처방전, 라이프로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개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정신건강·생활습관 관리, 암 리스크 분석 등)
금융 (2020)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및 금융상품 개발	- 개인의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공공·금융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
금융 (2020)	모바일에서 결합한 MyData로 개인이 혜택받는, 라이프 스타일 금융 플랫폼	-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단일 내 개인정보 저장소에서 결합하여 금융자산 관리,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및 보상 제공
교통 (2020)	포스트 코로나19(감염병) 대비 공공 교통수단 안심 이용 서비스	- 공공 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 이동 데이터를 통합관리 플랫폼 및 개인 통행 특성 기반 재난 알람,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114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분야 (연도)	과제명	서비스
교통 (2020)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서비스	- 공유 모빌리티, 대중교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적 교통수단 이용 방안 제공
생활 (2020)	직장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M-Box	- 개인의 건강진료와 카드 내역 분석을 통한 직장인 맛집 추천, 정신 건강 관리, 장보기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2020)	소상공인 신용평가 기반 상가 부동산 가치 정보 거래 플랫폼	- 상가 부동산 데이터 수집 및 유통을 통한 대출 연계 소상공인 평가모형으로 투명한 점포 거래 시장 조성 및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복지 (2020)	마이데이터 기반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 분산된 개인·공공·도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대상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c).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마이데이터(본인정보활용지원) 사업을 중심으로(내부자료). p. 15.

제2절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Legal)

1.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유럽연합(EU)은 1995년부터 시행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5월 27일 채택하고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자연인의 자유와 기본권,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럽연합(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제1조)²³⁾”으로 하며, “개인정보 삭제권, 처리 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등의 신규 권리를 추가하고 기존 권리의 명확화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대·강화”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법적 취지와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는 전문(Recital) 173개 조항과 본문 11장(Chapter), 99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4-11〉 참조).

〈표 4-1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조문 구성

구분	조문
전문	- 법적 취지와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해설 등 173개 조항
본문	- 제1장 일반 규정 · 제1조 주제 및 목적, 제2조 물적 범위, 제3조 영토의 범위, 제4조 정의- - 제2장 원칙 ·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6조 처리의 적법성, 제7조 동의의 조건, 제8조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제9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 범죄 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 신원 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2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p. 16.

구분	조문
	- 제3장 정보 주체의 권리 · (제1절 투명성 및 형식) 제12조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 (제2절 정보 및 개인정보 열람) 제13조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제14조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제15조 정보 주체의 열람권 · (제3절 정정 및 삭제) 제16조 정정권,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 제18조 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 (제4절 반대할 권리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 결정) 제21조 반대할 권리,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 결정 · (제5절 제한) 제23조 제한 -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 (제1절 일반적 의무) 제24조 컨트롤러의 책임, 제25조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제26조 공동 컨트롤러,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제28조 프로세서, 제29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권한에 따른 처리, 제30조 처리 활동의 기록, 제31조 감독 기관과의 협력 · (제2절 개인정보의 보안) 제32조 처리의 보안, 제33조 감독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제34조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 (제3절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사전 자문) 제35조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제36조 사전 자문 · (제4절 데이터보호 담당관) 제37조 데이터보호 담당관의 지정, 제38조 데이터보호 담당관의 지위, 제39조 데이터보호 담당관의 업무 · (제5절 행동 강령 및 인증) 제40조 행동 강령, 제41조 승인된 행동 강령의 모니터링, 제42조 인증, 제43조 인증 기관 -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 제44조 이전을 위한 통칙, 제45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제46조 적절한 안전 조치에 의한 이전, 제47조 의무적 기업 규칙, 제48조 유럽연합 법률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이전 또는 제공, 제49조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제50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 제6장 독립적인 감독 기관 · (제1절 독립적인 지위) 제51조 감독 기관, 제52조 독립성, 제53조 감독 기관 위원(들)의 일반 조건, 제54조 감독 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 · (제2절 법적 자격, 업무 및 권한) 제55조 법적 자격, 제56조 선임 감독 기관의 법적 자격, 제57조 업무, 제58조 권한, 제59조 활동 보고서 -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 (제1절 협력) 제60조 선임 감독 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 기관 간 협력, 제61조 상호 지원, 제62조 감독 기관의 공동 작업 · (제2절 일관성) 제63조 일관성 메커니즘, 제64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제65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회의 분쟁 해결, 제66조 긴급성(시급성) 절차 · (제3절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제68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제69조 독립성, 제70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회의 업무, 제71조 보고서, 제72조 절차, 제73조 의장, 제74조 의장의 역할, 제75조 사무국, 제76조 기밀성 - 제8장 구체적 책임, 책임, 처벌 · 제77조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제78조 감독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제79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제80조 정보 주체의 대리, 제81조 법적 절차 중지, 제82조 보상 권리 및 책임,

구분	조문
	제83조 행정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조건, 제84조 처벌 - 제9장 특정 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 · 제85조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 제86조 개인정보 처리 및 공식 문서 공개, 제87조 국가 식별 번호의 처리, 제88조 고용 환경에서의 처리, 제89조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적용의 일부 제외, 제90조 기밀 유지의 의무, 제91조 교회 및 종교 단체의 현행 정보보호 규정, - 제10장 위임 법률 및 이행 법률 · 제92조 위임의 행사, 제93조 위원회 절차 - 제11장 최종 규정 · 제94조 지침 95/46/EC의 폐기, 제95조 지침 2002/58/EC와의 관계, 제96조 이전에 체결된 협정과 관계, 제97조 집행위원회 보고서, 제98조 기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검토, 제99조 발효 및 적용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번역문. (조문 형식으로 재구성)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은 유럽에서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현을 위한 마이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표 4-12〉 참조).

〈표 4-12〉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0조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1.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a)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따른 동의나 제6조(1)의 (b)호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 (b)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이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주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접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제17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식 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GDPR소개-정보 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 <https://gdpr.kisa.or.kr/gdpr/static/infoSubjectsRights.do>에서 2021. 8. 5. 인출.

이 권리에 따라 정보 주체는 정보컨트롤러(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지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조성은 등, 2019, p. 112). 또한 이 권리에 따라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컨트롤러(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업자가 비록 경쟁 사업자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직접 전송해야 하며, 이는 정보 주체에게 무엇보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조성은 등, 2019, p. 112). 이는 유럽의 마이데이터 취지와 일맥상통하며 정보 주체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게 하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조성은 등, 2019, p. 112).

2. 유럽연합(EU)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유럽연합(EU)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 통합된 지급 결제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12월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대상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지침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및 IT 업체들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The Revised 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이명호, 2020, p. 187).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은 117개 조항이며, 연관된 주제에 따라 주제, 범위 및 정의, 결제서비스제공자, 지불 서비스에 대한 조건 및 정보 요구 사항의 투명성, 결제서비스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

무, 위임된 행위 및 규제 기술 표준, 최종 조항 등 6개의 타이틀(Title)로 구성되어 있다(〈표 4-13〉 참조).

〈표 4-13〉 유럽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구분	조문
타이틀 I: 주제, 범위 및 정의	- 제1조 주제, 제2조 범위, 제3조 제외, 제4조 정의
타이틀 II: 결제서비스제공자	- 제1장 지불 기관 · (섹션 1: 일반 규칙) 제5조 승인 신청, 제6조 지분의 통제, 제7조 초기 자본금, 제8조 자체 자금, 제9조 자체 자금의 계산, 제10조 보호 요건, 제11조 권한 부여, 제12조 결정의 전달, 제13조 승인 철회, 제14조 본국 회원국 등록, 제15조 EBA 등록, 제16조 승인 유지, 제17조 회계 및 법정 감사, 제18조 활동 · (섹션 2: 기타 요구 사항) 제19조 아웃소싱하는 대리인, 지점 또는 법인의 사용, 제20조 책임, 제21조 기록보관 · (섹션 3: 권한 있는 당국 및 감독) 제22조 권한 있는 당국의 지정, 제23조 감독, 제24조 직업상의 비밀, 제25조 법원에 신청할 권리, 제26조 정보 교환, 제27조 서로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불일치 해결, 제28조 서비스 제공의 설립 및 자유의 권리 행사 신청, 제29조 설립권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행사하는 결제기관에 대한 감독, 제30조 예방 조치를 포함한 불이행 시 조치, 제31조 사유 및 의사 소통 · (섹션 4: 면제), 제32조 조건, 제33조 계정정보 서비스 제공자, 제34조 통지 및 정보 - 제2장 공통 사항 · 제35조 결제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36조 신용 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액세스, 제37조 결제서비스 제공자 외의 경제 서비스 제공 금지 및 고지 의무
타이틀 III: 지불 서비스에 대한 조건 및 정보요구 사항의 투명성	- 제1장 일반 규칙 · 제38조 범위, 제39조 연합법률의 기타 조항, 제40조 정보에 대한 요금, 제41조 정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제42조 소액결제 수단 및 전자화폐에 대한 정보 요건의 일탈, - 제2장 단일 결제 거래 · 제43조 범위, 제44조 사전 일반 정보, 제45조 정보 및 조건, 제46조 지불 명령 개시 후 지불인 및 수취인에 대한 정보, 제47조 결제 개시 서비스의 경우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48조 지급명령 접수 후 지급인에 대한 정보, 제49조 집행 후 수취인에 대한 정보 - 제3장 기본 계약 · 제50조 범위, 제51조 사전 일반 정보, 제52조 정보 및 조건, 제53조 기본 계약의 정보 및 조건에 대한 접근성, 제54조 기본 계약 조건의 변경, 제55조 해지, 제56조 개별결제거래 실행 전 정보, 제57조 개별결제거래에 대한 지불인에 대한 정보, 제58조 수취인에 대한 개별결제거래에 관한 정보 - 제4장 공통 조항 · 제59조 통화 및 환전, 제60조 추가 요금 또는 감면 안내

구분	조문
타이틀 IV: 결제서비스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 제1장 공통 사항 · 제61조 범위, 제62조 적용 가능한 요금, 제63조 소액결제 수단 및 전자화폐에 대한 부분적 수정 - 제2장 결제 거래 승인 · 제64조 동의 및 동의 철회, 제65조 자금 가용성 확인, 제66조 결제지시서비스의 경우 결제계좌 접근에 관한 규칙, 제67조 계좌정보 서비스 시 결제계좌정보 열람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8조 결제 수단 사용 및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결제계좌 액세스 제한, 제69조 결제 수단 및 개인화된 보안인증서에 관한 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제70조 결제수단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71조 승인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실행된 결제 거래의 통지 및 수정, 제72조 결제 거래의 인증 및 실행에 관한 증거, 제73조 부정 결제 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74조 승인되지 않은 지불 거래에 대한 지불인의 책임, 제75조 거래 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지급 거래, 제76조 수취인에 의해 또는 수취인을 통해 시작된 결제 거래에 대한 환불, 제77조 수취인에 의해 또는 수취인을 통해 시작된 결제 거래에 대한 환불 요청 - 제3장 결제 거래 실행 · (세션 1: 결제 주문 및 이체된 금액) 제78조 지불 명령 접수, 제79조 지불 명령 거부, 제80조 지불 주문의 취소 불가능성, 제81조 이전된 금액 및 수령한 금액, 제81조 송금 금액 및 수령 금액 · (세션 2: 실행 시간 및 평가 일자) 제82조 범위, 제83조 지급계좌에 대한 지급 거래, 제84조 지불계좌에 입금된 현금, 제86조 국내 결제 거래, 제87조 평가 일자 및 자금 가용성 · (세션 3: 책임) 제88조 잘못된 고유 식별자, 제89조 결제 거래 미이행, 하자 또는 지연에 대한 결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90조 지급 거래 미이행, 하자 또는 지연에 대한 지급 개시 서비스의 경우 책임, 제91조 추가 금전적 보상, 제92조 청구권, 제93조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 제4장 데이터 보호 · 제94조 데이터 보호 - 제5장 운영 및 보안 위험과 인증 · 제95조 운영 및 보안위험 관리, 제96조 사건보고, 제97조 인증, 제98조 인증 및 통신에 관한 규정 기술 표준 -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절차 · (세션 1: 불만 처리 절차) 제99조 불만 사항, 제100조 관계 당국 · (세션 2: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및 처벌) 제101조 분쟁 해결, 제102조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 제103조 벌칙
타이틀 V: 위임된 행위 및 규제 기술 표준	- 제104조 위임 행위, 제105조 위임의 행사, 제106조 소비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
타이틀 VI: 최종조항	- 제107조 조화, 제108조 심사 조항, 제109조 경과 규정, 제110조 지침 2002/65/EC에 대한 수정, 제111조 지침 2009/110/EC에 대한 수정, 제112조 규정(EU) No 1093/2010에 대한 수정, 제113조 지침 2013/36/EU에 대한 수정, 제114조 폐지, 제115조 양도, 제116조 발효, 제117조 제출

자료: EU. (2015). Directive (EU) 2015/236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L2366&from=EN> 에서 2021. 12. 20. 인출.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제36조(신용 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접근)에서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신용 기관(credit institution)은 그들이 관리하는 결제계좌서비스에 결제 기관(payment institutions)이 어떠한 방해나 차별 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4-14〉 참조). 이는 금융서비스 영역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고객의 금융 데이터의 열람 및 이용을 포함한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한 것으로 마이데이터 개념과도 부합한다.

〈표 4-14〉 개정된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 제36조

제36조 신용 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대한 접근
회원국은 결제 기관이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비례적으로 신용 기관의 결제계정(계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결제 기관이 방해받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 신용 기관은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자료: EU. (2015). Directive (EU) 2015/236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L2366&from=EN> 에서 2021. 12. 20. 인출.

한편 동 지침 제66조와 제67조에서는 결제지시서비스의 경우 결제계정 접근에 관한 규칙, 계좌정보 서비스 시 결제계좌정보 열람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 결제지시서비스제공기관가 신용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요건 및 범위, 계좌정보 열람 및 이용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이동권

가. 개요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정한 대표적인 법령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사업관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동법 동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뿐 아니라 본인 신용정보의 범위,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철회, 전송 정지 및 중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 4-15〉 참조).

〈표 4-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 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 주체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으로서 전송 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은 제32조 제7항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⑦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은 신용정보 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20. 12.29., 법률 제17799호)

한편 2021년 10월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 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접수·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보유기관에 행정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서는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표 4-16〉, 〈표 4-17〉 참조).

〈표 4-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 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관세법」 제116조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7. 「주민등록법」 제30조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건축법」 제32조 11. 「상업등기법」 제21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종류를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해당 행정정보의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용·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 이용)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민원인은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행정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 ⑦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가 위조·변조·훼손·유출 또는 오용·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요구 방법, 해당 행정정보의 제공 방법·제공 기준, 종류 및 그 세부 유형, 수수료, 보안대책 및 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20. 10. 20., 법률 제17515호)

〈표 4-17〉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43조의2(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① 정보 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 사무·조정 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등
 2.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② 정보 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정보 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 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의2(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정보 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전자정부법(타법개정 202. 12. 29., 법률 제17799호)

반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마이데이터 추진 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 근거가 이미 마련된 공공 및 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全) 분야의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정

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한 개정안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부안²⁴⁾)

1) 제안 이유

2021년 9월 21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4)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12723, 2021. 9. 29.

2) 주요 내용

정부안의 주요 내용 중 마이데이터와 특히 관련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이동권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8>과 같다.

<표 4-18> 정부안 중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 본인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보 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

현행	개정안
	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정보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 12723) 의안원문. pp. 80-85.

정부안 제35조의2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한 신설된 조항이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제1항),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요건(제2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전송 방법(제3항), 개인정보처리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제4항),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금지(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대통령령) 위임 관련 사항(제6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민형배 의원안²⁵⁾)

1) 제안 이유

2021년 5월 27일 민형배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형배 의원안”)을 발의하였다. 민형배 의원안은 “정보 주체인 시민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 주체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또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민형배 의원안의 주요 내용 중 마이데이터와 특히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안 제4조 제3호, 제35조의 2 신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9>와 같다.

25)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0400, 2021. 5. 27.

〈표 4-19〉 민형배 의원안 중 마이데이터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 2.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 5. (생략)	제4조(정보 주체의 권리)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같다) 및 전송 -----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나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 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일 것 3.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및 가공을 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② 정보 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전송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구조화된 형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현행	개정안
	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정보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개인의 법률상 보호받는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대상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방법 및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안번호 12723) 의안원문. pp. 80-82.

민형배 의원안 제4조 제3호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에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권리를 추가하였다. 또한 제35조의2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와 관련한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제1항),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제2항), 정보 주체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전송 의무(제3항), 정보 주체의 요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제5항),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가 다른 개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금지(제6항), 정보 주체의 요청시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대상, 전송 기한, 방법, 수수료, 전송 요구 거절 및 중단 방법 등(제7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기타: 「데이터 기본법」의 데이터 이동권(조승래 의원안²⁶⁾)

1) 제안 이유

2020년 12월 8일 조승래 등 34인의 국회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이하 “조승래 의원안”)을 발의하였다. 조승래 의원안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조승래 의원안의 주요 내용 중 마이데이터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안 제15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0>과 같다.

<표 4-20> 조승래 의원안 중 데이터 이동권 조항

현행	제정안
<제 정>	제15조(데이터 이동권) ① 데이터 주체는 매출액, 저장·관리하는 개인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주체의 규모, 처리하는 개인데이터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데이터처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26)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182, 2020. 12. 8.)

현행	제정안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데이터 주체 본인 2. 본인데이터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데이터처리자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데이터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데이터 주체의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개인데이터처리자 사이에서 처리된 개인데이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개인데이터처리자가 데이터 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데이터 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제공한 정보 다. 데이터 주체와 개인데이터처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데이터일 것 3. 개인데이터처리자가 개인데이터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개인데이터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데이터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5. 「의료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주체 본인이 개인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데이터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개인데이터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데이터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

현행	제정안
	할 수 있다. ⑤ 데이터 주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데이터처리자로서 전송 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데이터 3. 전송 요구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데이터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데이터의 전송 사실을 해당 데이터 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3. 그 밖에 개인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데이터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데이터의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데이터처리자는 데이터 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6182) 의안원문. pp. 16-19.

조승래 의원안 제15조는 데이터 주체가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에 대한 전송 요구(제1항), 데이터 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범위(제2항),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 전송 의무(제3항),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제4항), 데이터 주체가 본인에 관한 데이터 전송 요구 시 특정해야 하는 사항(제5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전송 사실 통보 예외 사항(제6항),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 전송 요구 철회(제7항), 개인정보처리가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제8항), 전송 요구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 방법, 전송 거절이나 정지·중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대통령령) 위임 관련 사항(제9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조승래 의원안은 민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그러나 타 법률 및 관계 부처와의 소관 및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내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에 따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1. 09. 14.)’에서 대안 반영 폐기되었다.

제3절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Technology)

1.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술

가. 개요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의 생명 주기(수집, 저장, 가공, 관리, 활용, 유통 등)에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조직 등의 인프라의 통칭이다. 국내 데이터 플랫폼은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a, p. 1).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 분석 도구, 공간 등 시설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자, 이용자, 전문가 협업 활성화가 가능한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 협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 플랫폼이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인 중심의 개인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개인을 비롯한 다수의 데이터 보유자, 데이터 활용자 등의 이해 관계자들이 개인데이터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 중심의 데이터 통제와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본인 인증, 데이터 신뢰성 검증부터 데이터 이력 관리, 법제도 준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임태훈, 2020, p. 95).

하지만 현재는 개인데이터가 분야별로 개별 관리 활용되어 정보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 역시 분야별로 구축되다 보니 개인 중심의 통합관리는 쉽지 않다. 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해 시스템(플랫폼)을 적용하고,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와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정보 플랫폼은 개인 동의하에 개인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제공기관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플랫폼으로 수집하여 개인 또는 서비스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임태훈 등, 2020, p. 95).

개인데이터 플랫폼 설계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플랫폼 조직 구조와 역할에 있어 통합 개인정보 플랫폼의 ICT 기능을 구현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집/저장, 분석, 보안, 서비스, 관리/기획 등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조직은 각 담당이 원활히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역량 수준에 따른 역할 배분이 필요하다(임태훈 등, 2020, p. 96).

둘째, 개인정보 플랫폼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통합 개인정보 저장소에 대한 원칙, 정책 및 프레임워크 관리를 위해 ICT 관련 지침, 내부 규정 등이 필요하며, 통합 개인정보 플랫폼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절차 및 수행 역할, 업무 간의 선/후행 관계가 정의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조직에 의해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정보 관리도 필요하다(임태훈 등, 2020, p. 96).

셋째, 개인정보 플랫폼 관리 시스템에 있어 통합 개인정보 플랫폼은 ICT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구축된 관리시스템은 일반적인 ICT 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운영해야 한다(임태훈 등, 2020, p. 96). 또한 통합 개인정보 플랫폼 관련 서비스를 개인, 제공기관, 활용기관 간에

제공되는 API, 앱/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와 같은 ICT 자원은 운영기관의 합의 절차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임태훈 등, 2020, p. 97).

넷째, 개인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저장소에 있어 개인데이터 제공기관에 개방할 서비스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와 활용기관에 개방할 개인데이터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API 정의가 필요하며, 개인데이터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변경 없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데이터와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개인데이터셋에 대한 구조 정의가 필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요소 중 데이터 규칙과 프로세스는 전(全) 단계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기본 요소로 정의해야 한다(임태훈 등, 2020, p. 97).

나.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능

1) 개인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능

수집 및 관리 기능은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데이터를 수집해서 개인이 통합 조회하고,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즉 개인데이터 저장소(Storage)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 조회, 삭제, 수정 등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데이터를 직접 입력 및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저장소에 저장된 개인데이터를 다운로드 혹은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개인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송, 인증 및 동의관리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2) 개인데이터 유통 기능

개인데이터 유통 기능은 개인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및 조직 등에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로 개인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개인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통 기능은 대부분 저장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판매 방식에 따라 중개, 위탁, 직접 판매 유형으로 분류한다. 중개 기능은 개인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고 거래 과정 및 실행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위탁 기능은 개인데이터 판매자가 판매조건과 함께 데이터를 위탁하면 구매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거래 여부 판단, 조건에 맞는 거래를 실행한다. 직접 판매는 개인사용자에게 개인데이터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한 뒤 가공 및 분석하여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다.

3) 인증 기능

인증 기능은 사용자의 본인 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Identity, ID)를 지원하는 것이다. 인증 지원과 함께 개인의 다양한 신분 증명 및 아이덴티티(ID) 등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이덴티티(ID) 유형은 <표 4-21>과 같이 중앙집중형, ID제공자 기반형,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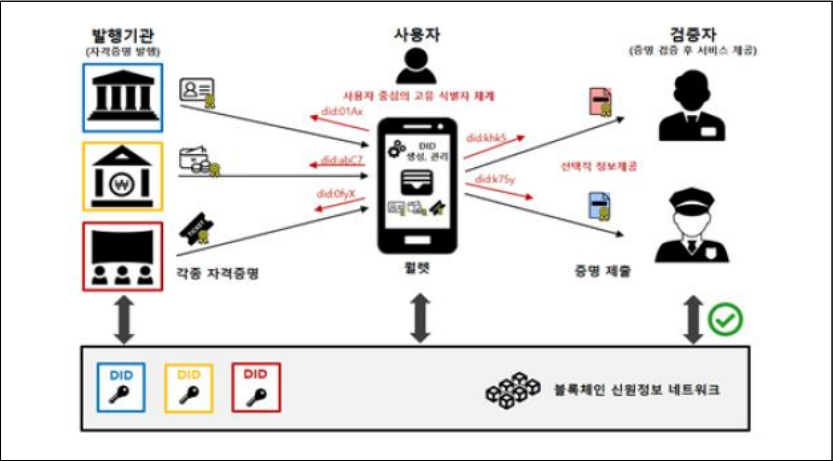
〈표 4-21〉 아이덴티티(ID) 유형

유형	설명
중앙집중형 아이덴티티	- 사용자가 각각의 사이트에 이름과 비밀번호로 계정을 만들어서 회원 가입한 계정을 통해 본인 증명 - 프로토콜은 TSL(Transport Layer Security) 및 SSL(Secure Socket Layer)
아이덴티티 제공자 기반 아이덴티티	- 한 곳에서 발급받은 인증 방식을 다른 서비스에 연동해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계정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접속하지 않도록 지원 - 프로토콜은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OAuth, Open ID connect 등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형 아이덴티티	- 신원데이터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두 당사자 간의 신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 - 공개 표준으로는 World Wide Web Consortium(W3C)의 검증할 수 있는 자격 증명(Verifiable Credentials)과 Decentralized Identifiers(DIDs), OASIS의 탈중앙화된 키 관리시스템,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ETF), Digital Identity Foundation(DIF)의 DID Auth, SOVRIN 재단의 인증기관이 필요 없는 영구적인 ID 등

자료: 권동승, 이현, 박종대. (2019).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동향. pp. 115-116.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신원데이터를 관리하는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 SSI)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분산 아이덴티티(Decentralized Identity, DID)를 지원한다. 분산 아이덴티티(DID) 기술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데이터를 직접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수의 분산 아이덴티티(DID)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림 4-12] 분산형 SSI 개념도



자료: 김현식. (2019).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확인 기술 동향. p. 24.

현재 우리나라의 분산 아이덴티티(DID)는 전자서명법 개정 등 정부의 새로운 본인 확인 및 인증 관련 정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분산 아이덴티티(DID) 금융 보안 표준을 제정하였다.

<표 4-22> 국내 DID 추진 동향

구분	이니셜 DID 어소시에이션	DID 얼라이언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마이키펜 얼라이언스
주요 참여사	통신 3사 코스콤 KEB하나은행 삼성전자	라운시큐어 BC카드 삼성SDS 등	아이콘루프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코인 플러그, 매직에코 PSI 컨설팅 등
특징	정부24 연계 공공 제증명 서비스 예정	DID네트워크 간 기술 및 서비스 모델의 상호 호환성 마련	금융권 중심 전자 증명	국내외 게임, 미디어, 정부·민간 조직 등

자료: 블로코. (2020). DID(분산 ID)와 SSI(자기주권신원) 단순 로그인을 넘어서. p. 6.

민간기업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분산 아이덴티티(DID)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는 분산 아이덴티티(DID) 단독 인증이 불가능하고, 본인 확인 기관의 2차 확인이 필수다. 본인 확인 기관과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겸하는 경우만 2차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분산 아이덴티티(DID)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있다.

4) 개인데이터 분석

개인 사용자가 제공한 다양한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진단, 비교, 예측, 조언, 추천, 새로운 인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어떤 데이터를 융합 및 활용하여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 가능하다. 주제 분야별로 건강, 자산 등 개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진단이 가능하고, 비교, 예측, 조언, 추천 등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고려한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지원하기도 한다.

개인 사용자들이 제공받은 서비스가 자신의 정보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맞춤형 정보제공 형태의 서비스 사례로 VaxAbroad는 사용자의 백신 접종 이력을 기반으로 여행지와 관련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한다. 맞춤형 비교 및 추천 서비스로는 우리나라의 뱅크샐러드(banksalad.com)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사용자의 실제 카드 이용 내역을 기반으로 할인 및 적립이 가능하다. 개인별 진단 및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지출 내역에서 구독 서비스 등의 고정비 지출 내역을

자동 추출하여 구독 서비스 목록, 결제일 및 금액 등 알림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을 계기로 국내 자산관리 서비스 중 신한 SOL, 토스 등에서 고정비 및 구독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구독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임태훈 등, 2020, p. 36).

5) 동의 관리

다수의 개인정보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공존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조건을 관리하고, 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의 규제 요건 등도 준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사용자에게 수집할 데이터의 유형을 알리고 데이터 처리 목적을 위해 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사용자는 동의 내역을 관리하고 자신의 데이터 권한(접근, 전송,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동의 관리 서비스는 개인 사용자의 동의 관련 요청을 데이터 공급망 전체에 걸쳐 자동으로 전달한다. 개인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쉬운 동의 변경 및 처리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 준수 위반의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데이터 보유 및 활용기관으로 인해 증가하는 동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 데이터 연계

데이터 보유기관은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제3의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의 기술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경우,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개인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계 대상 개인데이터는 활용 관점의 데이터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 즉 데이터 현행화 및 의미 있는 값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경우 N:N 데이터 연동시 발생하는 비용 및 운영 비효율 절감을 위해 API 개발·운영과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데이터 연계를 하려는 주체(개인,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API 방식을 적용하면 주체에 대해 사전 심의, 심사가 용이하다. 연계 목적, 범위, 용도, 기간 등도 개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개인데이터의 전송 기술: API

가. API 개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컴퓨터 시스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경로이며,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의 경계라 할 수 있다. 데이터 공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포털사이트의 날씨 정

보, 지도 정보, 각종 페이(Pay) 기능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보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능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 API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또는 기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규칙 집합으로 인증 자격 증명을 통해 데이터를 요청한다.

〈표 4-23〉 API의 장점

구 분	장 점
데이터 접근 권한	- 데이터 보유기관과 제3자 사이의 API 연결 승인 -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입력 - 이용자의 추가 노력(비용) 없이 제3자에게 전송 가능
데이터 접근 유지	- 자동으로 데이터 갱신(최신 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데이터 무결성	- 제3자가 데이터 보유기관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데이터 보안	- 이용자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가능
개발 편의성	- 개발자들은 API 선호 - 정적 파일보다 더 많은 동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음

자료: 임태훈 등. (2020).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 p. 105.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Open API 서비스 플랫폼 공유, 모바일 기기의 접속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 인증과 접근 관리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한된 영역의 접근 시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계정 관리, 인증 관리, 모바일 기기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접근 통제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한다. 중요한 정보를 조회·변경하는 경우 추가 인증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유 식별 정보, 금융정보 및 중요한 개인정보를 조회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근할 때는 ID와 패스워드 외에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등의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계정 도용, 정보 유출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임태훈 등, 2020, p. 106).

한편 보안 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인증으로는 ID와 패스워드 외에 다

른 인증 수단을 추가해서 보안 강도를 높이기 위한 멀티팩터(multi factor) 인증 방식이 있다(임태훈 등, 2020, p. 106). 멀티팩터 인증으로는 첫째, PIN 코드, 미리 설정해 놓은 질문 답변 등의 지식(Knowledge) 기반 인증, 둘째, 휴대폰 SMS 인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소유(Possession) 기반 인증, 셋째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등 속성 기반(Inherence) 인증이 있다(임태훈 등, 2020, p. 106).

나. 오픈 API 인증 프로토콜: OAuth 2.0

인증은 핀테크 업체 A를 이용자 B의 은행 C에 있는 계좌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자 B가 해당 계좌정보 접근권을 업체 A에 사전에 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데이터는 “엑세스 토큰(access token)”이라 하며, 금융업계에서는 공개 API의 인가를 하는 구조를 구현할 때 “OAuth 2.0”으로 불리는 프로토콜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임태훈 등, 2020, p. 28).

OAuth2.0을 이용한 인증 구조는 금융 분야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이미 도입하였다. 이는 인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 표준으로 2012년에 인터넷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체(IETF: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공표하였다(임태훈 등, 2020; pp. 28-29). 그러나 OAuth2.0은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큰 틀과 다양한 옵션의 절차만 규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설정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다(임태훈, 2020, p. 29). OAuth2.0을 서비스 내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는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업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임태훈 등, 2020, p. 29).

OAuth 2.0 기술을 적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임태훈 등, 2020, p. 29). ① 이용자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앱을 구동한다. ②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의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매개로 금융기관에 접속 허가를 요청한다. ③ 금융기관은 ①을 구동한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등록된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이용자 인증)한다. ④ ③의 인증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②의 접속 허가 요청을 허용 또는 거부한다. 이용자는 승인이 허용될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송신한다. ⑤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의 브라우저를 매개로, 금융기관 접근이 승인된 것을 증명하는 정보(엑세스 토큰)를 발행하고, 핀테크 기업은 신청할 권리가 부여된 정보(인가 코드)를 발행한다. ⑥ 핀테크 업체는 인가 코드에 해당 기업만 보유하고 있는 비밀 정보(정당한 핀테크 업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엑세스 토큰의 발행을 요구한다. ⑦ 금융기관은 허가 코드를 검증하고, 위의 ⑥의 비밀 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핀테크 기업임을 인증한다. ⑧ 상기 ⑦이 성공할 경우에 금융기관은 엑세스 토큰을 핀테크 업체에 발행한다. ⑨ 업체는 엑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접속한다.

OAuth 2.0의 권한 승인은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에 인증을 완료하면 권한 부여 기능을 수행하는 엑세스 토큰을 증표로 전달하는데, 처음 토큰을 발급할 때 리프레시 토큰(Refresh Token)도 함께 발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접근은 매우 수월하다(임태훈 등, 2020, p. 29). 엑세스 토큰(Access Token)은 보호된 자원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대표하여 확인용으로 사용하며, 엑세스 토큰 하나로 계정 인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임태훈 등, 2020, p. 30). 엑세스 토큰은 한 번 발급받을 때 유효 시간이 지정되며,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엑세스 토큰을 얻을 때는 리프레시 토큰(Refresh Token)을 이용하게 되고, 권한 서버는 새로운 엑세스 토큰을 발급한다(임태훈 등, 2020, p. 30).

다. API 방식의 데이터 수집과 제공

API 방식은 스크린 스크래핑에 비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²⁷⁾ API 방식은 스크린 스크래핑에 비해 악의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다. 스크린 스크래핑의 경우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면 스크래핑을 수행하는 핀테크 기업도 추가적인 변경 작업을 해야 하지만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예를 들면 핀테크 기업) 간의 계약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 방식은 이런 불편이 없다.

또한 스크린 스크래핑의 경우 사용자별로 계층을 분화하여 보안 규칙을 정할 수 없으나 API 방식은 가능하므로 권한별 접근 제어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스크린 스크래핑은 데이터 주체를 대신하여 데이터 활용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 주체가 공유 대상인 데이터를 선택할 권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에는 API 방식이 적합하다.

〈표 4-24〉 Open API와 스크린 스크래핑의 기술적 측면 비교

	Open API	스크린 스크래핑
사용자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사용자 자격 증명을 보호하는 OpenID Connect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 위임된 액세스가 가능 - API 사용 업체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볼 수 없음	- 제3자가 사용자의 온라인 뱅킹 인증 정보를 획득, 저장 및 사용하도록 요구함 - 악의적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계정 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음 - 일회성 암호나 보안 토큰이 필요할 때 통합이 어려움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계약”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표준화된고 버전이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변화가 느린 온라인 뱅킹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음

27) Chris Wood. (2017). Why Do Fintechs Want to Save Screen Scraping?.

	Open API	스크린 스크래핑
		- 소비자는 변경 사항을 갱신하거나 동적으로 변경 사항을 흡수해야 함
계층화된 보안사항	- 필요한 경우 웹 API가 여러 계층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음	- 온라인 뱅킹이 소비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소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별도의 보안 계층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규정된 범위	- 웹 API는 엔터티의 모델링과 OAuth 범위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제3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줄임(GDPR과 같은 엄격한 데이터 사용 규정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	- 온라인 뱅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음. - 기능, 데이터 또는 시간의 길이 측면에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자료: Chris Wood. (2017). Why Do Fintechs Want to Save Screen Scraping?; Megan Harrison. (2018). Open Banking vs. Screen Scraping;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 연구. p. 51에서 재인용.

고객 사용성 측면에서도 API 방식은 속도, 보안, 고객 보호, 권한 취소 등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보다 장점이 많다(Chris Wood, 2017; 임태훈 등, 2020, p. 51에서 재인용).²⁸⁾ 따라서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보다는 정보보호 및 보안 측면에서 우월한 오픈 API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임태훈 등, 2020, p. 51). 데이터 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이 또한 스크린 스크래핑보다 API 방식이 적합하다(임태훈 등, 2020, p. 51).

〈표 4-25〉 Open API와 스크린 스크래핑의 고객 사용성 측면 비교

	Open API	스크린 스크래핑
속도	- 목적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단 몇 초 만에 제공 가능	- 연결이 끊어질 수 있으며,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걸림

²⁸⁾ Chris Wood. (2017). Why Do Fintechs Want to Save Screen Scraping?

	Open API	스크린 스크래핑
보안	- 표준화된 요구 사항 존재 -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으며 European Banking Standards를 따름	- 표준화되지 못하여 보안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자별로 차이가 큼 -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서 접속의 불안정성 존재
고객 보호	- 서드 파티는 계정 자격 증명을 절대 처리할 수 없음(익명화 토큰으로만 가능) - 드물기는 하나 누출이나 위반이 발생하면 사용자, TPP 또는 은행에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음 - 액세스를 처리하고 비활성화하는 여러 모델을 통해 고객 보안이 전반적으로 향상됨	- 스크린 스크래핑을 사용하는 기업은 개인적이고 기억에 남는 정보를 포함하여 전체 은행 로그인 세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 - 위반사항 발생시 정보들이 누출될 수 있음
권한 취소	- 고객은 언제든지 온라인 뱅킹에서 서비스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드 파티를 통해 서드 파티에서 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음	- 고객은 은행 계좌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고객은 업체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온라인 뱅킹 세부 정보를 모두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자료: 임태훈 등. (2020).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분야 개인정보 활성화 방안 연구. p. 52.

API를 개방하여 활용하면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된다. 개인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여 개인데이터 활용 기업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고, 고객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개방형 API는 서비스 간 경쟁을 촉진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적절한 대책 및 운용을 함으로써 보안 강화에 기여한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 마이데이터와 같이 API로 개방할 데이터 항목을 미리 정하면 이 또한 데이터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전문 처리 방식의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문 처리 방식의 스크래핑은 API와 마찬가지로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활용 기업이 사전에 협약을 맺어 데이터 주체가 동의한 데이터 항목에만 접근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 API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문 처리 방식의 스크래핑은 스크린 스크래핑에서 API로 진화하는 과도기에 적용해 볼 만한 대안이다.

3. 개인데이터 활용 내역 확인기술: 데이터 영수증

가.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이용 안내 메일을 보내는 등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이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다. 이용자 대상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부분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데이터 이용 시 발급하는 데이터 영수증 기능은 ‘기존 이용 내역 통지’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²⁹⁾ 데이터 영수증은 개인데이터 출처에 따라 분류하여 발행 가능하며,

29)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p. 44-46 재구성.

개인데이터 수집 시에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 이용 기간 내 별도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데이터 영수증의 주요 항목

개인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영수증에 명시할 주요 항목은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시작한 날짜(시작일), 개인데이터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데이터 항목명, 개인데이터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영수증의 ID 등이다(임태훈 등, 2020, p. 107). 데이터 영수증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내려받기할 때에도 발행 가능하다. 이 경우 데이터 영수증에 명시할 주요 항목은 내려받기한 날짜, 내려받기 방식(폴더 저장, 이메일 전송, 메신저 전송 등), 내려받은 개인데이터의 항목명과 형식 등이다(임태훈 등, 2020, p. 107).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발행하는 데이터 영수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때 제3자 제공 시 발행하는 데이터 영수증의 주요 항목은 개인데이터 제공을 시작하거나 실행한 날짜, 구체적인 제공의 목적, 제공자(본인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기업)명, 제공한 개인데이터 항목, 제공한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기업)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데이터 영수증 ID 등이다(임태훈 등, 2020, p. 107).

[그림 4-13] 데이터 영수증(예시)

M3 MyData 내정보관리 >> 동의 영수증	M3 MyData 내정보관리 >> 공유 영수증	M3 MyData 내정보관리 >> 내려받기 영수증
동의영수증 영수증ID C12345678 동의여부 동의 동의구분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동의일시 2019년 9월 8일 13시 29분 동의자 홍길동(서비스 이용자 본인) 동의요청자 가나다 자산관리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CI), 연바심가입정보 개인데이터 활용 목적 내자산서비스 활동지수 기반 포인토 적립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 시 발행기관 가나다 자산관리	공유영수증 영수증ID S98765432 공유일 2019년 10월 5일 15시 08분 목적 맞춤형 상품추천 제공자 가나다 자산관리 대상기관 G 카드 개인데이터 항목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CI), 은행거래내역(2018.01.01-2019.09.30) 카드사용내역(2018.01.01-2019.09.30) 보유 및 이용기간 취득후 1년 관련 동의 영수증 ID C12341234 발행기관정보 가나다 자산관리	내려받기영수증 영수증ID D12345678 일시 2019년 9월 8일 13시 29분 내려받기 방식 구글드라이브에 전송(aasbbb@gmail.com 계정) 개인데이터 항목 통합계좌거래내역(2019.01.01-2019.08.31) 포인토 적립내역(2019.01.01-2019.08.31) 개인데이터 형식 CSV 발행기관명 가나다 자산관리 발행기관정보 담당자 김자산 연락처 00-000-0000 다운로드, 공유, 인쇄 아이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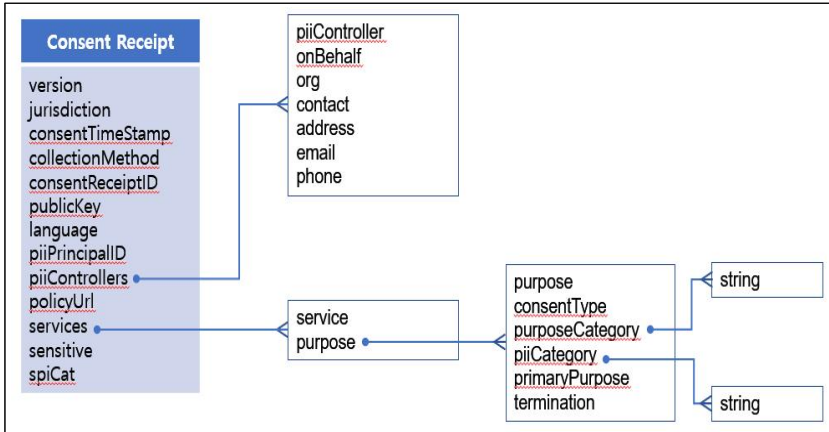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p. 49-50.

다. Kantara 동의 영수증 구현 표준

해외 사례로, Kantara 동의 영수증 구현 표준(Consent Receipt Specification Ver.1.1.0)³⁰⁾이 있다. 이는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에 대한 영수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준은 데이터 영수증의 기술적 구현 방안, 민감 정보 등에 대한 고려 사항, 데이터 영수증 예시를 제공한다.

30)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 Ver.1.1.0. Kantara Consent & Information Sharing Work Group.

[그림 4-14] 데이터 영수증의 구조(예시)



자료: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Ver.1.1.0), p. 14.

동의 영수증은 JSON으로 구현하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 영수증에 포함된 항목은 동의 방식, 민감 정보 여부, 수집 대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 활용 방식(제3자 공유 여부, 공유 대상 기관(업) 등), 동의 효력 기간 등이다. 동의 영수증은 ① 동의 영수증 트랜잭션 부분(Consent Receipt Transaction Fields), ② 동의 트랜잭션 주체 부분(Consent Transaction Parties Fields), ③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부분(Data, Collection, and Use Fields)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첨삭할 수 있다.

① 동의 영수증 트랜잭션 부분(Consent Receipt Transaction Fields) : 동의 트랜잭션과 전체 동의 영수증의 메타데이터의 관리 영역

〈표 4-26〉 메타데이터 관리 영역

구분	필수/선택	의미	예시	유형	JSON	비고
버전 (Version)	필수	동의 영수증 명세의 버전	KI-CR-v 1.1.0	문자열 (string)	version	
관할 (Jurisdiction)	필수	본 건의 관할(관련) 기관(들)		문자열 (string)	jurisdiction	
동의 시각 (Consent Timestamp)	필수	동의 날짜와 시간. 초 단위까지 명시	1970-01-01 00:00:00	정수 (integer)	consent Timestamp	ISO 8601 날짜·시간 표시 형식
수집 방법 (Collection Method)	필수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문자열 (string)	collection Method	
동의 영수증 ID (Consent Receipt ID)	필수	동의 영수증 고유식별 번호		문자열 (string)	consent ReceiptID	UUID-4 (RFC4122)
공개 키 (Public Key)	선택	개인정보 관리자의 공개 키		문자열 (string)	publicKey	
언어 (Language)	선택	동의 획득에 사용된 언어		문자열 (string)	language	ISO 639

자료: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Ver.1.1.0), pp. 10-11 재구성.

② 동의 트랜잭션 주체 부분(Consent Transaction Parties Fields) :
동의 절차에 연결되어 있는 주체들에 관한 정보 영역

〈표 4-27〉 주체들의 정보 영역

구분	필수/선택	의미	예시	유형	JSON	비고
개인정보 주 ID (PII Principal ID)	필수	개인정보 에 주로 사용되는 ID	이메일	문자열 (string)	piiPrinci palID	ID가 없으면 동의 불가능
개인정보 관리자들 (piiControllers)	필수	하나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아이템		배열 (array)	piiContr ollers	
개인정보 관리자 (PIIController)	필수	데이터를 수집하는 첫번째 개인정보 관리자의 이름. 목적과 유형을 결정		문자열 (string)	piiContr oller	
개인정보 관리 대행인 (On Behalf)	선택	개인정보 관리 또는 처리 대행인	서비스 분석 대행사	논리 자료형 (boolean)	onBehalf	
개인정보 관리자 연락처 (PII Controller Contact)	필수	개인정보 관리자 연락처 (성명)		문자열 (string)	contact	
개인정보 관리자 사무실 주소 (PII Controller Address)	필수	동의 관련 개인정보 관리자에 게 연락 가능한 주소		객체 (object)	address	https://sc hema.org /PostalAd dress

구분	필수/선택	의미	예시	유형	JSON	비고
개인정보 관리자 이메일 (PII Controller Email)	필수	동의 관련 개인정보 관리자에 게 연락 가능한 이메일		문자열 (string)	email	
개인정보 관리자 전화번호 (PII Controller Phone)	필수	동의 관련 개인정보 관리자에 게 연락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문자열 (string)	phone	RFC 3966 [RFC 5341]
개인정보 관리자 연락처 정보 URL (PII Controller URL)	선택			문자열 (string)	piiContr ollerURL	
개인정보 관리 지침 (Privacy Policy)	필수	동의 약관이 포함된 개인정보 관리 지침		문자열 (string)	policyU RL	

자료: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Ver.1.1.0), pp. 11-12 재구성.

③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부분(Data, Collection, and Use Fields) : 서비스, 개인정보 분류(카테고리), 속성, 개인정보 및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영역

〈표 4-28〉 개인정보 영역

구분	필수/선택	의미	예시	유형	JSON	비고
서비스들 (services)	필수	하나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각각의 아이템이 포함된 배열		배열 (array)	services	
서비스 (Service)	필수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그룹		문자열 (string)	service	
목적들 (purposes)	필수	하나의 목적을 표현하는 각각의 아이템이 포함된 배열		배열 (array)	purposes	
목적 (Purpose)	선택	개인정보가 필요한 간결하고 분명한 이유		문자열 (string)	purpose	
목적 분류 (Purpose Category)	필수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들		문자열 (string)	purpose Category	
동의 유형 (Consent Type)	필수	동의 유형	명시적 동의	문자열 (string)	consent Type	
개인정보 분류 (PII Categories)	필수	개인정보 분류 목록		배열 (array)	pii Category	

구분	필수/선택	의미	예시	유형	JSON	비고
주 목적 (Primary Purpose)	선택	개인정보 관리자의 핵심 서비스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논리 자료형 (boolean)	primary Purpose	
종료 (Termination)	필수	동의 종료의 조건		문자열 (string)	terminat ion	
제3자 공시 (Third Party Disclosure)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공시)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논리 자료형 (boolean)	thirdParty Disclosu re	
제3자 명칭 (Third Party Name)	필수	개인정보 제공 대상인 제3자의 명칭		문자열 (string)	thirdParty Name	
민감 개인정보 (Sensitive PII)	필수	민감 개인정보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논리 자료형 (boolean)	sensitive	
민감 개인정보 분류 (Sensitive PII Category)	필수	민감 개인정보 분류 목록		배열 (array)	spiCat	

자료: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Ver.1.1.0), pp. 12-14 재구성.

Kantara 동의 영수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4-29〉 Kantara 데이터 영수증(예시)

동의 영수증				
버전	KI-CR-v1.1.0			
관할	ABC 컴퍼니			
동의 일시	2017.11.13. PM 12:00:00 EST			
수집 방법	마케팅을 위한 옵트인 방식의 웹 회원 가입 양식			
동의 영수증 ID	c1befd3e-b7e5-4ea6-8688-e9a565aade21			
공식 키(Public Key)	04:a3:1d:40:53:f0:4b:f1:f9:1b:b2:3a:83:a9:d1:40:02:cc:31:b6:4a:77:bf:5e:a0:db:4f:ea:d2:07:c4:23:57:6f:83:2c:3d:3e:8d:e7:02:71:60:54:01:f4:6a:fb:a2:1e:8b:42:53:33:78:68:d9:7d:5e:b2:cc:0b:f8:a1:bf			
언어	한글			
동의 내용				
정보 주체				
개인식별정보 주 ID	홍길동			
정보 처리자(서비스 기업)				
개인정보처리 기관명	ABC 컴퍼니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김OO, ABC 컴퍼니 데이터 관리팀			
개인정보처리 기관 주소	서울 OO구 OO로 OO-OO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이메일	yheekim@abcservice.net			
개인정보처리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1234			
개인정보처리 안내 URL	https://www.defservice.net/pii/contact			
개인정보처리 정책	https://www.defservice.net/pii/policy_2017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명	DEF 서비스			
수집 및 활용 목적				
목적	목적_분류	동의 유형	개인정보_분류	주요 목적 여부
서비스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약관	명시적 동의	인구학적 정보 금융정보 연락처	해당
마케팅	마케팅	명시적 동의	인구학적 정보 연락처	비해당
금융정보 보관	신탁	N/A	금융	비해당
법률 적용	법적 의무	N/A	ALL	비해당
개인정보 제공 철회		https://www.abcservice.net/pii/contact/termination		
제3자 공시		해당		
제3자 명칭		OOO출판, OOO서비스, OOO은행, (주)OOO		
민감 개인정보		해당		
민감 개인정보 분류		금융정보		

자료: Richard Beaumont et al,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Ver.1.1.0), pp. 24-25 재구성.

4. 자동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Privacy by Design)

가. 개요

사물인터넷 등 센서에 의한 정보 수집,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나,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임태훈 등, 2020, p. 89). 개인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환경에서는 개인데이터의 열람, 정정, 삭제 그리고 피해 시 배상 요구 등 사후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 개인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는 기기 제조업체도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임태훈 등, 2020, p. 89).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EU에서 제기되고 있는 “Privacy by Design”을 중심으로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10대 수칙은 <표 4-3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rivacy by Design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를 의미한다. 즉 프라이버시 관련 침해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프라이버시 위협을 예측·예상하거나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 등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p. 11). 이 개념은 EU GDPR 제25조의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표 4-3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요

단계	수칙	내용
기획	수칙 1.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인지, 확인	▶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 해당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기획
	수칙 2.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 사항을 확인	▶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의무 등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의 의무사항을 확인 ▶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획
설계	수칙 3.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으로 처리	▶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처리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되지 않도록 확인 절차 마련 ▶ 익명·가명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시스템 설계시 적용
	수칙 4.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적절한 안전 조치 적용	▶ 최소 인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속기록 등을 관리 ▶ 암호화 조치 등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시스템 설계에 반영
	수칙 5. 개인 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	▶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기기 특성에 맞게 공개하는 등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설계
	수칙 6. 정보 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장	▶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의 요구 방법을 쉽게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수칙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안내	▶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하도록 설계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수칙 8. 정보 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 법령상 개인정보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설계 ▶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가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를 제거·회수하는 절차 마련
점검	수칙 9. 사업 종료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 사업 양도·양수 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등의 권리를 안내하는 절차 마련 ▶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정보 주체가 관련 개인정보를 백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수칙 10.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 점검	▶ 서비스 출시 전, 본 수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 서비스 개선, 다른 서비스와 연계·연동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 점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rivacy by Design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pp. 3-4 재구성.

나. 해외 사례

EU GDPR 제25조 설계 기본 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p. 12).

〈표 4-31〉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5조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① 최신 기술과 비용, 개인정보 처리의 성격과 범위, 상황, 목적 등을 포함하여 처리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고려	권리와 자유 침해 방지
	② 컨트롤러는 처리 수단을 결정할 시점 및 처리 당시 시점에서 데이터 처리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행하고 GDPR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처리 최소화
	③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관리 조치(처리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포함하기 위해 고안된 가명 처리 등)를 이행하여야 함.	정보 주체 권리보호 및 안전 조치
2	① 컨트롤러는 기본 설정(by Default)을 통해, 개별적인 특정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도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② Data Protection by Default는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 해당 처리의 범위,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접근가능 기간을 설정하는 시점에 적용하여야 함.	적용 부분 및 시점
	③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개입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기본 설정(by Default)을 통해 보장	접근 제한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rivacy by Design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p. 12.

한편 ENISA(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는 기업들이 서비스(또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할 프라이버시(Privacy by Design) 8대 원칙을 〈표 4-3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p. 12).

〈표 4-32〉 “Privacy by Design” 8대 원칙

원칙	내용
① 최소화 (Minimize)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것
② 숨기기 (Hide)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 외부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것
③ 분리 (Separate)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한 사람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④ 총계화 (Aggregate)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할 경우,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식별자를 최소화하고, 처리 결과는 범주화할 것
⑤ 정보제공 (Inform)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과 방법 등 전반에 대해 정보 주체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것
⑥ 통제 (Control)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개인정보의 잘못된 활용이나 보안 수준에 대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함
⑦ 집행 (Enforce)	내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법·제도 의무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함
⑧ 입증 (Demonstrate)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 유출 사고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rivacy by Design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p. 13.

5. 알기 쉬운 동의 기술

현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는 이용자가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 약관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며 읽기도 쉽지 않아, 이용자가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용이하도록 알기 쉬운 동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충분한 동의서를 구성할 필

요가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6; 임태훈 등, 2020, p. 103에서 재인용). 동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수집·이용·제공·위탁·접근)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 동의는 핵심 내용을 고지하여 동의서별 제목만 보고 선택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 제시해야 하며, 개인데이터 수집, 이용, 제공의 목적과 항목, 이용 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 등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6; 임태훈 등, 2020, p. 103에서 재인용).

동의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동의 시 이용 가능한 추가 서비스, 후속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하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6; 임태훈 등, 2020, p. 103에서 재인용).

개인데이터의 활용 목적은 부가 서비스 개발, 상품 개발, 마케팅 및 이벤트, 연구 목적 등으로 다양하며 서비스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개인데이터 플랫폼은 이용자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제3의 서비스 기업에 제공 시 그 대상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7; 임태훈 등, 2020, p. 103에서 재인용). 개인데이터 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 범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구성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제공할 기관(기업)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동의 여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화면을 설계해야 한다(임태훈 등, 2020, p. 103). 개인데이터 선택 동의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동의 화면 내에 동의의 목적과 기관, 동의할 개인정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는 목적별, 제공기관별로 동의 화면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 및 개별 동의는 개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목적이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목적, 기관, 범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 화면을 제공하고, 동의 선택 시 이용 약관 등 전체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동의 내용의 핵심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8; 임태훈 등, 2020, p. 104에서 재인용).

[그림 4-15]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동의 화면 예시

The image displays two versions of a consent screen for 'M3 MyData'. Both screens have a header with the logo and the text '회원가입 >> 동의' (Sign Up >> Consent).

The left screen is titled '필수' (Required) and contains two main sections under '선택' (Optional):

-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Consent for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r additional services): Includes options for '구매내역 분석 서비스' (Purchase history analysis service) and '등록하신 기관(업)의 구매물품정보' (Purchase item information of the registered organization/industry). A warning icon indicates that image-based services can be used.
- 마케팅 및 상품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Consent for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rketing and product guidance): Includes options for '이벤트 및 상품 정보 안내 및 가입 권유' (Event and product information guidance and membership encouragement) and '휴대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Mobile number, gender, birth date, and residence area). A warning icon indicates that marketing information will be sent via phone, text, or email.

The right screen is titled '선택' (Optional) and features a checkbox for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Consent for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rket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 research). Below this, it lists specific data items and their uses:

- 트렌드 분석, 신상품 개발, 기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연구 (Research for trend analysis, new product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existing services)
-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역, 거래내역, 구매내역 (Gender, birth date, residence area, transaction history, purchase history)
- 회관 (Hui-gwan) and 금융지주 계열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group)
- B연구소 (B-research institute) and 금융지주 계열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group)

Below the list, there are two numbered points:

- 동의 시 매년 1,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We will accumulate 1,000 points for you when you agree.)
- 제공대상기관(업)과 개인정보범위는 상세내용에서 더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You can select more details about the provider and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etailed content.)

At the bottom, there are two checkboxes: '모두 동의합니다' (I agree to all) and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I do not agree to all). A large '확인' (Confirm) button is at the very bottom.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 31.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해치지 않도록 동의 절차를 디자인하고, 시각적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8; 임태훈 등, 2020, p. 104에서 재인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는, 동의 절차상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게 제공해야 하며, 명시적 동의를 위해 개인이 동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선택 사항을 분리 제시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8; 임태훈 등, 2020, p. 104에서 재인용). 특히 개인데이터의 활용 목적을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제공에 동의해야 할 정보를 각각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항목도 가급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8; 임태훈 등, 2020, p. 104에서 재인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데이터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목적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동의 방식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일한 목적 내에서 제공기관이나 개인데이터 범위에 대한 개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의 선택 시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 혜택 관련 정보, 동의 선택 시 개인에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 해당 동의와 관련 있는 추가정보 확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 28; 임태훈 등, 2020, p. 105에서 재인용). 한편 ‘온라인 프라이버시 안내와 동의’에 관한 국제표준도 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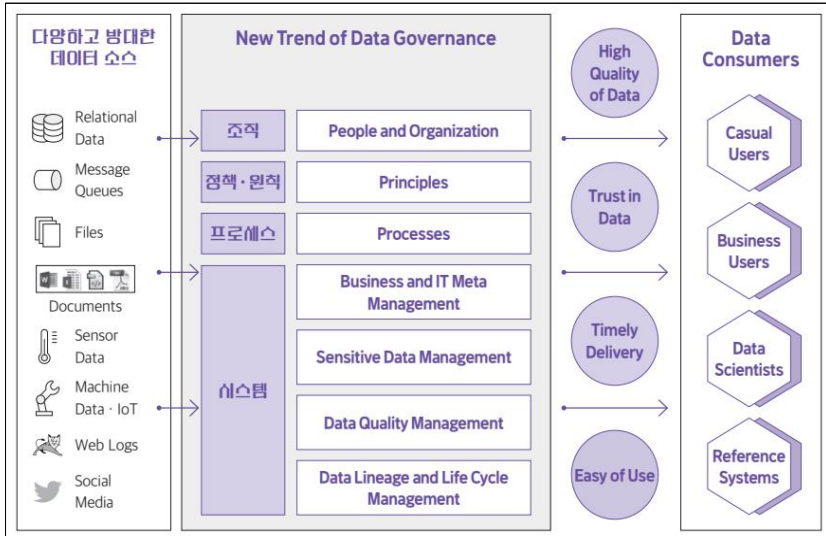
6.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가.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의 진화 방향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관리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서비스를 정의하는 관리 체계를 말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6). 데이터 거버넌스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유출 우려도 커지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데이터 수명 관리가 소홀해져 데이터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6).

개인데이터 보호 등 법제도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 데이터 생태계 전체의 문화적 변화 등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기능도 적절히 변화해야 한다. 최근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용자 중심’, ‘단위 거버넌스의 연계’, ‘시각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그림 4-16]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2019 데이터산업 백서. p. 227.

첫째, 기존에는 분석 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였던 데이터 거버넌스가 점차 사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이는 사용자들이 직접 보다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셀프 분석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고,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만들어 내며,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 번에 여러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되므로 권한 범위별로 다양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며, 데이터 세트별 수명 주기와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사용자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적절한 권한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샌드박스와 같은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이 있다. 사용자 중심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관점의 메타데이터 관리, 샌드박스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의 역할이 갖추어져야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임태훈 등, 2020, p. 23에서 재인용).

둘째,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위 데이터 거버넌스가 연계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지금까지 데이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여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 절차 연계가 미흡하고 일부 영역은 통합되지 않아 단위 거버넌스로만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절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조직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 절차 및 기능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7). 여러 데이터 소스의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 식별, 연관 관계 인지, 활용 유형 등에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8; 임태훈 등, 2020, p. 23에서 재인용).

셋째, 데이터 현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 기능을 강화한 ‘보이는 데이터 거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8; 임태훈 등, 2020, p. 24에서 재인용). 기업이 보유 중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가 생성된 지점, 활용한 지점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된 정보가 제공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로 발전 중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p. 228; 임태훈 등, 2020, p. 24에서 재인용). 한편 데이터 거버넌스는 시스템 도입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임태훈 등, 2020, p. 24).

나. 데이터 거버넌스의 요소

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분석하려면 여러 분야에 표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원활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따라야 할 표준 시스템은 기초 표준, 데이터 표준, 기술 표준, 플랫폼/툴 표준, 거버넌스 및 관리 표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 산업 응용 표준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p. 13-14).

첫째, 기초 표준은 데이터의 타 분야 표준 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용어, 참조 아키텍처 표준 등 데이터에 대한 업계 간 인식이 동일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3).

둘째, 데이터 표준은 주로 데이터 자원, 교환 및 공유 등 기본 데이터 관련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3). 데이터 자원 표준은 데이터 요소, 메타데이터, 참조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데이터 모델 및 기타 표준 등 데이터 자체가 대상으로 하고, 교환 및 공유 표준은 데이터 트랜잭션 및 개방형 공유 표준을 포함해 데이터 순환 관련 기술, 아키텍처 및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3).

셋째, 기술 표준은 주로 데이터의 일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세트 설명, 데이터 수명주기 처리 기술, 데이터 개방 및 상호 운용 기술, 현장 중심의 데이터 기술을 포함한다. 데이터 세트 설명 표준은 주로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표준 측정 방법을 다룬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넷째, 플랫폼/툴 표준은 데이터 시스템 제품 및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포함해 데이터 관련 플랫폼 및 툴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데이터 시스템 제품 표준은 주로 업계에서 데이터 수명주기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류 데이터 제품의 기능과 성능

의 표준을 다루며, 데이터베이스 제품 표준은 주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성능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다섯째, 거버넌스 및 관리 표준은 데이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실행되며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적용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거버넌스 표준은 데이터 거버넌스 계획 및 특정 구현 방법 개발을 다루며, 관리 표준은 데이터 관리 모델, 메타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목록 관리, 데이터 자산 관리 및 기타 이론적 방법을 다룬다. 평가 표준은 거버넌스 표준 및 관리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 기능, 데이터 서비스 기능, 데이터 거버넌스 효과 및 데이터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을 총괄적으로 다룬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여섯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표준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 보안, 서비스 보안, 플랫폼 및 기술 보안을 포함하여 전체 데이터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실행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데이터와 기타 분야의 통합에 존재하는 보안 문제를 다루며, 데이터 보안은 개인정보보호, 중요 데이터 보안, 국가 간 데이터 보안 표준을 다룬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서비스 보안은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서비스 보안 기능, 교환 및 공유 보안, 데이터 제품 및 솔루션의 보안 요구 사항을 다루며, 플랫폼 및 기술 보안은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시스템 보안, 인터페이스 보안, 기술 보안의 표준을 다룬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일곱째, 산업 응용 표준은 산업, 행정, 전력 및 생태 환경과 같은 일반 응용 프로그램 및 수직 산업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p. 14).

제4절 소결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도입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추진한 주요 외국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화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정부 주도 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데이터 사용의 투명성과 개인데이터 오너십 보장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서비스는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 도입이 다소 늦었던 우리나라는 공공, 금융, 의료 등 정부 주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함께 2019년부터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다. 정부 주도 서비스에 비해 아직까지 민간서비스 개발은 뚜렷한 성과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관련 법제도의 부재와 시범사업 성격의 서비스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여겨지며, 향후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민간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유럽연합(EU)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 등 일부에서 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 외의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안 및 의원안 등으로 다각도로 추진중인데,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등 마이데이터 관련 핵심적인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마이데이터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개인데이터 전송 및 활용

등 마이데이터 관련 필요 기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인데이터 전송 기술, 개인데이터 활용 내역 확인 기술, 자동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 알기 쉬운 동의 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등에 대한 각각의 요소 기술 및 기능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규격을 규정하고 표준 기술 지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5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제1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제2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사항 분석

제 5 장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및 이슈 분석

제1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1. 조사 개요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별 신청 시 필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청 대상이 많아 마이데이터 도입 시 가장 유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조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현행 복지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개인 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해 복지서비스 신청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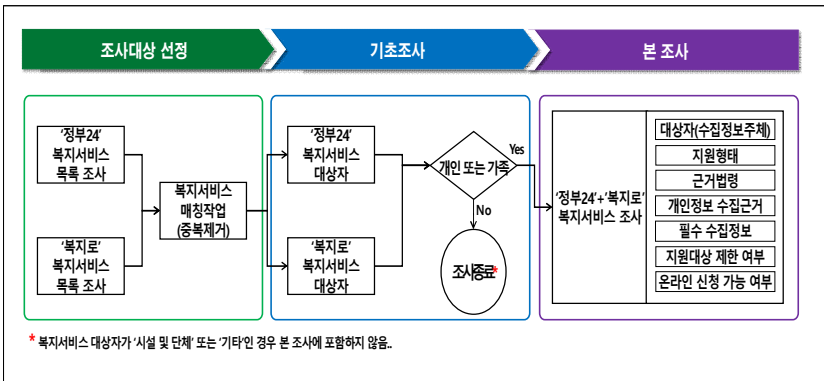
‘정부24(<http://www.gov.kr>)’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 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로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정부24가 각 기관과 연계하여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다. 약 90,000건의 서비스가(정부서비스 약 85,000건, 민원서

비스 약 5,000건) 제공되고 있고, 약 1,000여 건의 서비스 신청·발급이 가능하다(정부 24, 2021). 다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약 90,000건의 서비스 중 현행 복지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조사 시점(2021년 6월 5일) 기준에 ‘정부24’의 분야별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 분야 서비스로 분류되는 486건의 서비스를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한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사이트이다(복지로, 2021). 조사 시점(2021년 6월 5일) 기준으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 정부서비스 35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조사는 조사 대상 선정작업, 기초조사, 본 조사 순으로 실시하였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조사 절차



자료: 연구자 작성

2. 조사 대상 선정

조사 대상 선정은 2개의 사이트(정부24, 복지로)에 대한 개별 조사 시 공통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각각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만 유일하게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도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사이트를 개별 조사하면 동일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24’와 ‘복지로’에서 공통적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의 매칭작업 후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대표사이트에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서비스 매칭작업은 서비스명으로 하였으며, 서비스명이 일부 상이한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 검토 후 동일한 복지서비스로 판단되면 ‘정부24’의 복지서비스명을 기준으로 매칭하였다.

〈표 5-1〉 ‘정부24’와 ‘복지로’의 서비스명 매칭 사례

구분	정부24	복지로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	생계급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3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4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 스타트)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 스타트 사업)
5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 사후 관리) 의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7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8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3. 기초조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개인, 개인이 포함된 가구(가족 포함)가 아닌 시설이나 단체, 알 수 없는 경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조사 실시 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제외할 목적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인 경우 ‘개인 또는 가구’로 분류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특정 업종 또는 시설의 영업, 변경, 폐업 등의 신고(허가) 또는 그 외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단체’로 분류하였고, 서비스 내용이 단순히 대국민 정보제공이나 안내 등 지원 대상을 특정 짓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정부24’의 경우 지원 대상 분류 결과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인 경우는 277건(정부서비스 159건, 민원서비스 118건), ‘시설 또는 단체’ 197건(정부서비스 23건, 민원서비스 174건), ‘해당 없음’ 13건(정부서비스 13건, 민원서비스 0건)이었다.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 및 ‘시설 또는 단체’에 모두 해당되는 중복데이터는 1건으로, 지원 대상은 총 487건으로 나타났다(〈표 5-3〉 참조).

기초조사 결과 지원 대상이 ‘시설 또는 단체’, ‘해당없음’으로 분류된 서비스 200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부합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로 판단되어 조사 결과에서는 제외³¹⁾하였다.

31) [부록 1]과 같이 ‘정부24’의 복지서비스 487건을 분석함. 다만 지원 대상이 ‘시설 또는 단체’, ‘해당없음’으로 분류된 서비스는 본 조사의 조사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음.

〈표 5-3〉 ‘정부24’ 지원 대상 분류 결과

(단위: 건)

구분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계
개인 또는 가구	159	118	277
시설 또는 단체	23	174	197
해당없음	13	0	13
계	195	292	487 ^{주)}

주: 민원서비스 1건이 ‘개인 또는 가구’와 ‘시설 또는 단체’에 중복 체크됨.
 자료: 연구자 작성

다음으로 ‘복지로’에서만 제공하는 26건의 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이면 ‘개인 또는 가구’로, 지원 대상이 특정 업종 또는 시설이면 ‘시설 및 단체’로 분류하였다. 해당 복지서비스 상세정보 페이지가 열람이 되지 않으면 ‘확인 불가’로, 별도의 신청서식 또는 신청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5-4〉 참조).

〈표 5-4〉 지원 대상 분류 결과(복지로)

(단위: 건)

구분	복지서비스
개인 또는 가구	12
시설 또는 단체	1
확인 불가	3
기타	10
계	26

자료: 연구자 작성

‘정부24’ 조사와 동일하게 기초조사 결과 지원 대상이 ‘시설 또는 단체’, ‘확인 불가’, ‘기타’로 분류된 서비스 14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4. 조사방법

‘정부24’는 서비스명, 근거 법령,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서비스 구분, 서비스명, 근거 법령, 필수 수집 정보, 수집 정보 주체, 서비스 대상 자격 제한, 지원 형태, 온라인 신청 등 8개 항목을 정리하였다. 조사 범위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앙 서비스로 제한하였다³²⁾.

‘서비스 구분’과 ‘서비스명’, ‘근거 법령’은 정부24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앙 서비스는 다시 민원 서비스와 정부서비스로 나뉘는데 행정안전부 고시(제2021-11호)인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라 생성된 민원을 ‘민원서비스’로, 그 외 서비스를 ‘정부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따랐다.

‘필수 수집정보’는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신청서 작성예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였고(그림 5-3)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 구비서류에 명시된 서식의 내용을 따랐다. 다만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확인 불가로 처리하였다. ‘수집정보 주체’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원 형태’의 경우 정부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는 지원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발급, 현물/현금, 기타(신고, 신청, 이의제기 등)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대상 자격 제한’ 여부는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을 참고하여 연령, 성별, 소득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나이 구간을 명시하거나(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등), 특정 연령 그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노인, 초등학생, 미성년자, 신생아,

32) 정부24(<http://www.gov.kr>) 홈>서비스>분야별 서비스>중앙 서비스

영유아, 아동, 미취학 아동 등) 연령 제한이 있는 서비스에 포함했다. 여성장애인, 임산부와 같이 성별이 특정되는 서비스는 성별 제한이 있는 서비스에 포함하였다. 중위소득, 수급(권)자³³⁾, 차상위계층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소득’과 관련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득수준 제한이 있는 서비스에 포함하였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정부서비스의 경우 안내 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온라인 신청 항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불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민원서비스는 안내 페이지의 신청방법에 ‘인터넷’이 있는 경우 실제 링크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그 외의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온라인 신청경로는 서비스 검색 결과에서 서비스명 우측에 표시되는 ‘신청’ 또는 ‘사이트 가기’ 링크를 참고하여 사이트명을 기재하였다. 본 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른 항목별 조사방법 세부 내용은 <표 5-3>에 정리하였다.

한편 ‘복지로’의 조사항목 및 기준은 ‘정부24’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성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복지로’ 구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33) 수급(권)자에는 의료급여수급자, 노령연금수급자, 장기요양수급자, 가정양육수당수급자 등 다양한 수급자 기준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편의상 수급자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음.

[그림 5-3] 정부24의 서비스별 신청서 작성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

수급자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성명 1 신청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소 2 검색

세대주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3 검색

수령방법선택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수령방법 4 온라인발급(본인인증) 검색

수령기관선택 5 검색

신청내용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용도

제출처

수급자와의 관계 6 검색

신청일 2020 년 04 월 03 일

〈표 5-5〉 필요데이터 조사방법

구분		조사 경로	수집 또는 분류 기준	제외 기준
필수수집 정보		- 신청 작성 예시 또는 신청서, 구비서류에 명시된 서식	-	-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 불가한 것으로 간주
수집정보 주체		-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름	-	-
지원 형태		- 정부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지원 형태(복지로 서비스 포함) - 민원서비스: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발급, 현물/현금, 기타(신고, 신청, 이의제기 등)로 구분	-	- 정부서비스: 명시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제한 여부	연령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따름	1) 특정 나이 구간을 명시(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1세 이상-만 6세 미만 등) 2) 특정 나이가 속하는 그룹을 명시(노인, 초 등학생, 미성년자, 신생아, 영유아, 아동, 미취학 아동 등)	-
	성별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따름	1) 특정 성별 명시(여성 장애인) 2) 임신부	-
	소득 수준	- 지원 내용, 지원 대상에 따름	1) 중위소득 기준을 명시(중위소득 50% 이하 등) 2) 수급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표현 사용/ 수급자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음 3) 그 외: 일정소득 이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선정 기준액인 자 등 '소득'과 관련된 조건이 있을 경우	-

구분	조사 경로	수집 또는 분류 기준	제외 기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 정부서비스: 안내 페이지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온라인 신청' 항목 참고 - 민원서비스: 안내 페이지의 '신청방법'에 '인터넷'이 있는 경우, 실제 링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것으로 봄
	경로	-	-

자료: 연구자 작성

5. 조사 결과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24' 조사 대상 서비스 277건과 '복지로' 조사 대상 서비스 12건을 포함하여 289건을 조사하였다.

가. 지원 형태

지원 형태는 정부서비스의 경우 '정부24'의 서비스 안내사항에 명시된 지원 형태에 따라 현금/현물, 정보제공, 교육/용역, 서비스이용권, 감면/면제, 대납지원, 시설이용, 대여, 융자지원, 기타로 분류하였다. 민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내용을 토대로 증명발급, 현물/현금,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복지로'의 중앙서비스는 정부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지원 형태는 현금/현물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76, 증명발급 39건, 교육/용역 26건, 정보제공 20건, 서비스이용권 12건, 시설이용 10건, 감면/면제 7건, 대여 3건, 대납지원과 용자지원 각 2건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

〈표 5-6〉 지원 형태 분석 결과

(단위: 건)

구분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계
현금/현물	93	26	119
정보제공	20	0	20
교육/용역	26	0	26
서비스이용권	12	0	12
감면/면제	7	0	7
대납지원	2	0	2
시설이용	10	0	10
대여	3	0	3
용자지원	2	0	2
증명발급	0	39	39
기타(분류없음 포함)	23	53	76
계	198 ^{주)}	118	316

주: 정부서비스 27건이 중복 체크됨.
자료: 연구자 작성

2) 근거 법령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근거법에서 데이터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24’와 ‘복지로’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근거가 법령인 경우가 277건, 행정규칙인 경우 2건, 법령과 행정규칙 모두 명시한 경우 2건, 정관 및 약관 2건, 근거 미표시 6건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표 5-7〉 근거 법령 분석 결과

(단위: 건)

구분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계
법령	161	116	277
행정규칙	1	1	2
법령+행정규칙	1	1	2
정관/약관 등	2	0	2
근거 미표시	6	0	6
계	171	118	289

자료: 연구자 작성

한편 서비스의 근거 법령은 법령 78종, 행정규칙 1종, 정관/약관 등 2종으로 조사되었다(〈표 5-8〉 참조).

〈표 5-8〉 근거 법령 현황

법령(78종)			
1	영유아보육법	40	학교급식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	식품위생법
3	장애인복지법	42	긴급복지지원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	사회보장기본법
5	노인복지법	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5	지역보건법
7	국민연금법	46	국민건강증진법
8	의료급여법	47	치매관리법
9	공중위생관리법	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49	보건의료기본법
11	안마사에 관한 규칙	50	구강보건법
12	입양특례법	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2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법령(78종)			
1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4	아동수당법	53	암관리법
15	국민건강보험법	54	건강검진기본법
16	한부모가족지원법	5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7	의료법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8	아동복지법	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기초연금법	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	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진강진단규칙	5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1	모자보건법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3	검역법	6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24	장애인연금법	6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	국민영양관리법	64	민법
26	사회복지사업법	6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6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8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6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69	법률구조법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1	선원법
33	결핵예방법	7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74	노후준비 지원법
36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77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39	약사법	78	환자안전법
행정규칙(1종)			
1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정관 및 약관(2종)			
1	지원근거: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2	○○○○지원사업안내

자료: 연구자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근거

서비스 신청 시 신청양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사 결과 78종의 서비스의 근거 법령 중 46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표 5-9〉 참조).

〈표 5-9〉 서비스 근거 법령 중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한 법령 현황

구분	관련 법령	관련 조항
1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제21조(급여의 신청)
5	노인복지법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7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8	의료급여법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9	입양특례법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10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11	아동수당법	제7조(조사·질문 등) 부칙 제4조(개인정보에관한경과조치)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13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4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15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의2(미숙아 등의 정보기록·관리)
16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17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제12조(자료 또는정보의 처리 등)

194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구분	관련 법령	관련 조항
1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21	결핵예방법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2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23	약사법	제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24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사후조사)
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급신청 등)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지역보건법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27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31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32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3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교육지원신청) 제12조의4(조사·질문 등)
3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제7조의7(조사·질문 등)
3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4(조사·질문 등)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3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조사·질문 등)
3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피해자 등록)
4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4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 신청)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 등 발급 등)
45	노후준비 지원법	제16조(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자료: 연구자 작성

〈표 5-10〉의 예시를 살펴보면 서비스 근거 법령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 및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5-10〉 서비스 근거 법령 중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규정한 법령(예시)

법령	조항	내용
영유아 보육법	제9조의3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1.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자료 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8.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 9.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밖에 보육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0조의5 (감염병 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음 1. 감염병환자 등의 인적사항 2. 감염병 치료내용, 그 밖에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는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1.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분석(예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신청서식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289건의 서비스 조사 결과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서식은 총 17건의 서비스 신청 시 이용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³⁴⁾’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서식으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표 5-11>과 같다. 그 외 각 서비스별로 명시하고 있는 자세한 필수 수집정보는 <부록 1>에 정리하였다.

<표 5-1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구분	수집항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및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 관계(법률훨, 사실혼, 사실상 이혼 중 선택), 외국여권 소지자명, 국외출생자명, 복수국적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자료: 연구자 작성

5) 지원 대상의 제한

복지서비스 중 일부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과 같이 특정 자격 조건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총 289건의 서비스 중 지원 대상의 제한이 있

34)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4호, 2021. 8. 5. 일부 개정)」의 [별지 제1의4] 서식

는 경우를 연령, 성별,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총 123건(정부서비스 108건, 민원서비스 15건)으로 확인되었다(〈표 5-12〉 참조).

〈표 5-12〉 지원 대상 제한 유형 분석 결과

(단위: 건)

구분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계
연령	31	1	32
성별	5	0	5
소득수준	28	14	42
연령+성별	1	0	1
연령+소득수준	38	0	37
성별+소득수준	1	0	1
연령+성별+소득수준	3	0	3
계	108	15	123

다만 지원 대상에 연령과 성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와 같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연령(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과 성별(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표 5-13〉 참조). 따라서 〈표 5-12〉는 키워드에 따라 임의 분류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5-13〉 복수의 지원 자격을 포함하는 서비스(예시)

서비스명	연령	성별	소득수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서비스 제공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영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치매관리), 영유아(영양플러스)	임산부(영양플러스, 철분제, 엽산제 제공)	취약계층(영양플러스)

자료: 연구자 작성

6)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산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였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경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조사 결과 총 277건의 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122건(정부서비스 55건, 민원서비스, 67건)이었다(〈표 5-14〉 참조).

〈표 5-1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단위: 건)

구분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계
온라인 신청 가능	55	67	122
온라인 신청 불가	116	51	167
계	171	118	289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122건의 서비스를 다시 신청경로에 따라 ‘정부 24’, ‘복지로’, ‘기타’로 분류한 결과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48건(9.3%),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14건(11.5%), ‘기타’ 56건(45.9%), ‘확인 불가’ 4건(3.3%)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56건에 해당하는 신청경로는 총 26가지였다(〈표 5-15〉, 〈표 5-16〉 참조).

〈표 5-15〉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의 신청경로

구분	정부24	복지로	기타	확인 불가	계
건	48	14	56	4	122
비율(%)	(39.3)	(11.5)	(45.9)	(3.3)	(100.0)

자료: 연구자 작성

〈표 5-16〉 정부24 및 복지로 외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경로

신청경로	사이트명
http://minwon.nps.or.kr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nps.or.kr	국민연금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lic.mohw.go.kr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http://minwon.nhic.or.kr	국민건강보험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chrd.childcare.go.kr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http://www.mothersafe.or.kr	마더세이프
http://www.ehaneul.go.kr/portal/fres/cremRsvGuide.do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시스템
http://cpms.childcare.go.kr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www.knat.go.kr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http://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k-medi.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경로	사이트명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dementia.or.kr	대한치매학회
http://www.childcare.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kwcu.or.kr	한국사회복지공제회
http://www.silwel.or.kr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http://csa.nps.or.kr/counsel/visit.do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http://www.nosmokeguide.go.kr	금연길라잡이
http://www.nrc.go.kr	국립재활원
http://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http://www.kscia.org	한국척수장애인협회
http://mindup.kcpi.or.kr	마음성장 프로젝트
http://www.kops.or.kr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자료: 연구자 작성

6. 기타: 개인정보파일 조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개인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을 조사하였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동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privacy.go.kr>)’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조직도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본부, 12개 소속기관, 2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포털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메뉴에서 기관명을 각각 검색하였다. 조사시점(2021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총 40개 기관 중 목록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기관은 38개였으며, 총 944개의 개인정보파일이 검색되었다(〈표 5-17〉 참조).

〈표 5-17〉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수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파일 수	비고
본부	보건복지부	19	
소속기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1	
	국립공주병원	2	
	국립나주병원	1	
	국립마향의동산관리원	3	
	국립부곡병원	1	
	국립소록도병원	5	
	국립재활원	16	
	국립정신건강센터	14	
	국립춘천병원	5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7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7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	-	검색결과 없음
산하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3	
	국립암센터	27	
	국립중앙의료원	15	
	국민건강보험공단	118	
	국민연금공단	12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파일 수	비고
	대한적십자사	46	
	사회보장정보원	11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0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	
	재단법인의료기관평가인증원	-	검색결과 없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1	
	한국공공조직은행	1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1	
	한국보육진흥원	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7	
	한국한약진흥원	4	
	아동권리보장원	65	

자료: 연구자 작성

각 기관에서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의 업무 분야를 조사한 결과 총 31개로 확인되었다. 업무 분야를 ‘기타’로 구분한 개인정보파일이 2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233건), 기타복지지원(132건), 의료지원(65건), 홈페이지(61건), 복지여성(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장학, 감사, 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분야는 업무 분야가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표 5-18〉 참조).

〈표 5-18〉 업무 분야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현황

분야	행정지원	내부행정	일반행정	행정	민원
건수	8	10	4	16	10
분야	전자민원	감사	고객지원	복지여성	보건
건수	8	1	13	48	233
분야	의료지원	장학	위원회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지원
건수	65	1	1	5	4
분야	교육지원	홈페이지	안전보건	사회복무	지도감독
건수	26	61	2	1	1
분야	근로감독	도서관	체육	교통	자활지원
건수	1	1	1	1	18
분야	노후복지지원	기타복지지원	병적관리	등록관리	단체관리
건수	11	132	1	1	1
분야	기타				
건수	258				

업무 분야별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토대로 사회보장 관련 개인데이터를 분류하면 복지여성, 보건, 의료지원, 장학,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자활지원, 노후복지지원, 기타복지지원 등이 있으나 세부 정보를 살펴본 결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업무 분야의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공주병원의 환자진료정보 파일은 업무 분야가 ‘보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진료정보 파일은 ‘의료지원’ 업무에 속했다. 또한 2개 기관의 개인정보파일명이 ‘환자진료정보’로 동일했으나 상세정보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등에 차이가 있었다(〈표 5-19〉 참조).

〈표 5-19〉 동일 명칭의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업무 분야로 구분한 사례

구분	사례1	사례2
기관명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부서명	기획운영과	서무과
업무 분야	보건	의료지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명칭	국립병원EMR시스템	국립병원EMR시스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환자진료정보	환자진료정보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환자진료 및 진료비청구	입원 및 외래환자 자격관리, 입원 및 외래환자 심사 청구, 입원비 및 외래진료비 수납, 입원 및 재원환자 의무기록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 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 이름: 필수, 집주소: 필수, 집연락처: 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필수, 건강: 필수, 기타 (인적 사항, 주된 증상, 병력 및 가족력, 진단명,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등), 진료일시: 필수 2)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 이름: 필수, 집주소: 필수, 집연락처: 필수, 핸드폰(연락처): 필수, 주민번호: 필수	1) 정보 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타 (의료보험증번호, 성별, 직업,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정보) 2) 법정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 이름, 기타(정보 주체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서 지정된 기간 있음 (10년)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서 지정된 기간 있음 (20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사례1	사례2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거	법률에 의한 제공(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국민건강 보험법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 병, 요양일수, 본인부담금, 비용청 구액, 처방전내용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증번호, 성 명, 주소, 생년월일, 과거병력, 진 료정보(정신질환기록 포함), 장애 정보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 수	16,871건	30,849건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 분야도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은 121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업무 분야는 민원이 7건(5.8%), 고객지원이 1건(0.8%), 기타복지지원이 6건(5.0%), 기타가 107건(88.4%)으로 나와 있어 대부분의 업무 분야가 기타로 분류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세부 개인정보 항목 및 특성,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략적인 개인정보의 명칭, 수집 근거, 개인데이터 항목, 처리 방법, 보유 기간, 정보 주체 수 등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

제2절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 사항 분석

1.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이동권 제정 검토 필요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공공 분야와 금융 분야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함으로써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 분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공 분야나 금융 분야 등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동권을 별도의 관련법에서 제정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는 별도로 사회보장 분야에 데이터 이동권을 제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즉 신규 입법 추진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기존 법률 중 대표적인 법률에 데이터 이동권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신규 입법을 추진하면 타 부처와의 정책영역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법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입법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법률 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데이터 이동권을 제정하는 방법은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보장 분야 법률 중 기본법 또는 일반 법적 성격의 법률에 데이터 이동권 관련 규정을 넣어 사회보장 분야에 일괄 적용하면 타 부처와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법률 개정 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단 사회보장 분야 기존 개별법 중 어떤 법률을 선별하여 데이터 이동권

을 명시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관련 78종의 근거 법령은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시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법률이다. 즉 78종의 근거 법령을 포함한 법률 중 사회보장 관련 기본법 또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 내에 데이터 이동권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사회보장 분야에 일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복지서비스 신청의 온라인화 필요

공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활성화는 본인정보를 데이터세트(꾸러미) 형태로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예를 들어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확인 증빙으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마이데이터가 적용되면 여러 서류들을 보다 신속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의 경우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차등록원부(갑),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등 8종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난임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 일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³⁵⁾.

35) 정부24 홈페이지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비스, <https://www.gov.kr/mw/>

이처럼 서류 제출의 간소화와 더불어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개개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단계부터 온라인화해야 한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이 개인 또는 가구인 서비스 289건(정부24 277건, 복지로 12건) 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122건(42.2%)에 불과했다. 즉 현행 복지서비스 중 과반이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복지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복지서비스의 마이데이터 적용은 기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우편이나 방문과 같은 오프라인 방식에 의존하는 복지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3.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플랫폼 일원화 필요

복지서비스 신청의 온라인화가 가능해도 신청경로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플랫폼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중복적인 입력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임신부 철분제 지원 서비스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 예방접종증명 서비스 등 다수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관할 보건소(임산부 철분제 지원 서비스)에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복지로(만 0~5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와 정부24(예방접종증명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면 신규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가용한 정보는 기존에 입력한 것을 활용하고 신청자는 추가 정보만 입력하므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조사 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122건의 서비스 중 신청경로가 정부24인 서비스는 48건(39.3%), 복지로 14건(11.5%), 확인 불가 4건(3.3%), 기타 56건(45.9%)으로 온라인 신청경로가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기타로 분류된 56건의 신청경로는 총 26가지로 조사되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청경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24’와 ‘복지로’마저도 서비스명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경로의 중복이 확인되면 서비스명 재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필요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관과 시스템 간 데이터의 거래, 유통, 융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시행)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공공데이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여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개인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유통의 한 측면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복지서비스 신청 시 이용하는 시스템은 주로 국가·공공기관 시스템이며 「공공데이터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거 법령이나 개별 서비스의 신청서식들에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을 지칭하는 용어가 서로 달랐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항목 중 신청서에서 빈번하게 수집되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등의 메타데이터마저도 사업이나 서비스의 편이에 따라 서로 달리 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5-20〉 참조).

〈표 5-20〉 개인정보 항목별 표현(예시)

개인데이터 항목		해당서식
성명	이름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개인별지원계획 지원 신청서 등
	신청인 성명	난청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등
	수급자 성명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수급권자(출산자)	요양비지급청구서 등
주소	자택주소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소(거주지)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서 등
	집주소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
	주소(실제 거주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
	(현)주소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주소 또는 거소	마약류중독자 등 입원 의뢰(통보)/입원 신청서 등
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
	연락처(자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

개인데이터 항목		해당서식
	자택전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
	자택전화번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
	연락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전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등
	집전화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등
	연락처(휴대폰)	난청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등
	연락전화번호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등
	전화번호(휴대폰)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등
주민등록 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번호(외국 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진단서(검사비) 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
전자우편	이메일	난임부부 사술비 지원 신청서, 노후간접자금 대부 지원 신청서 등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등
	전자메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등
	이메일주소	암환자의료비지원 등록 신청서 등
	E-mail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등
	e-mail	의료분쟁 조정 신청서 등

우선 성명은 신청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각각 구분하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성명의 정확한 메타데이터값은 오히려 성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신청자 성명이 적합하다. 다만 신청자라는 표현은 복지서비스별로 신청자, 신청인, 신고인, 수급권자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또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주소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전화번호는 집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한다. 특히 최근에는 집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만 쓰는 사례가 많아 이를 통합하여 연락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매뉴얼에 따르면 전화번호는 단어+단어로 구성된 복합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경우의 예시로,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도록 복합어로 등록하는 것이 맞기에 자택전화, 전화 등의 표현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라고 표현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쓴다.

전자우편은 한글, 영어 등 표기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외래어 중 표준국어대사전에 한글로 등재된 경우 한글표기를 하며 이 경우 영문표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으므로 E-mail, e-mail 등의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5. 필요데이터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의 한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 활용기관 간의 전송데이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데이터 현황 조사 결과 구비서류의 경우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본 조사의 한계이자 마이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결이 필요한 이슈 사항이다.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도하였으나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 구비서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일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 명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필요데이터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구비서류 예시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자상위계층 증빙서류,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6. 사회보장 분야 연계 대상 개인정보 조사 필요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보를 어디서 보유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수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뿐 아니라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조사를 시도하였다. 각 기관에서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을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나 기관별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이나 업무 분야를 분류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관 내에서도 업무 분야가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따라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수집, 활용,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제1절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제2절 구축 방향 및 전략

제3절 세부 수행 과제

제6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제1절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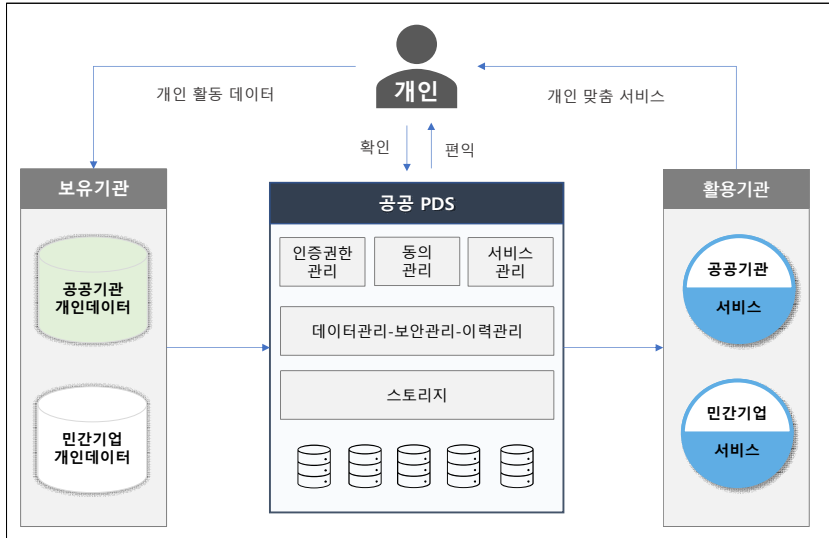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유형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공공 주도형,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민간 규제형, 민간 자율형’ 등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고 각 모형의 장단점과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1. 공공 주도형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권한 관리, 동의 관리, 서비스 관리, 데이터 관리, 보안 관리, 이력 관리는 물론 개인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클라우드 포함)까지 제공하는 모형이다. 이는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다. 시기적으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초기단계에 공공부문이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적합한 모형이다([그림 6-1] 참조).

36)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기본 유형은 이영환(2020)의 ‘개인주도형 본인정보 통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연구 저자와 자문 회의를 통해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임.

[그림 6-1]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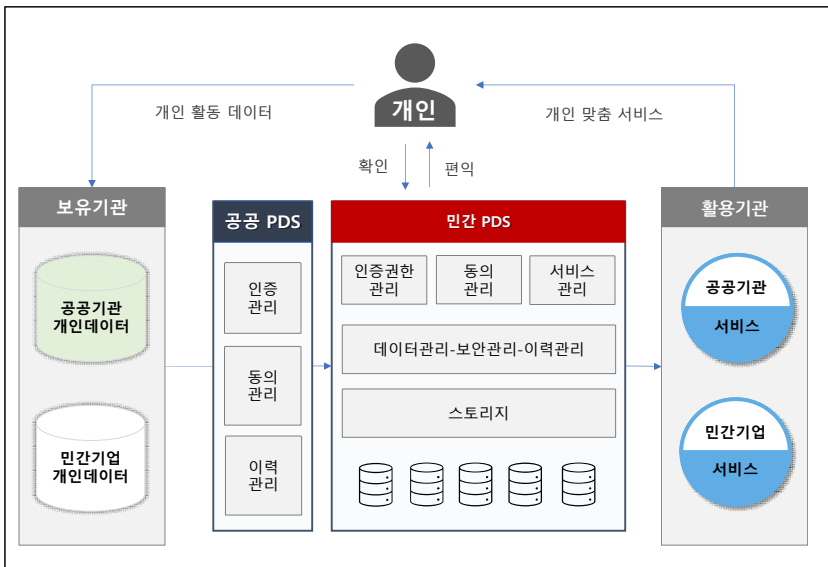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주로 공익적 목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현행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단기간에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며,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모형 도출이 가능하고, 초기에는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민간부문의 참여 제한으로 지속적인 성장 촉진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통제한다는 심리적 반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2.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개인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민간부문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인증관리, 동의관리, 이력관리 등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모형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서비스와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하다. 시기적으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마이데이터 편익에 대한 경험 또는 기대감이 높아진 단계에 적절한 모형이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공공 - 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자료: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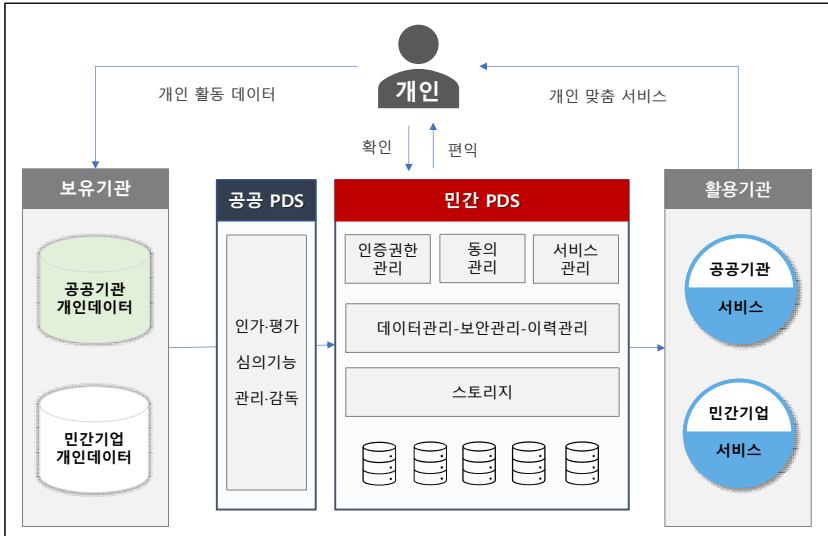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민간부문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자격 조건,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보안 심의, 서비스 인허가 등을 하는 것이다. 또 민간부문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산업별 또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어느 한 쪽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민의 개인데이터 주권 신장과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양자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하며, 상호경쟁력 있는 부분을 특화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제공뿐 아니라 민간부문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선정, 관리, 통제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능적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3. 공공-민간 규제형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심의·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공공부문이 직접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필요성이 적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된 단계에 적합한 모형이다([그림 6-3] 참조).

[그림 6-3] 공공 - 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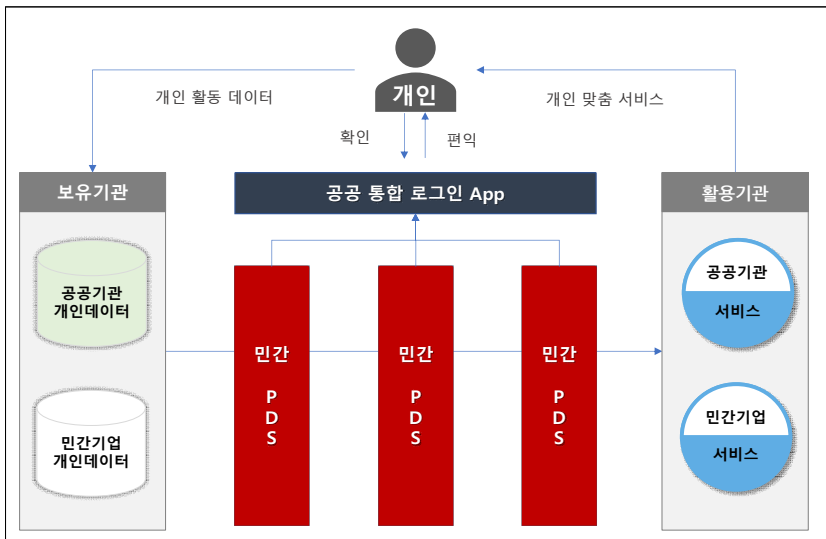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작성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지 않고 심의·인허가만 담당하며, 민간부문은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이 직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전반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4. 민간 주도형(민간 자율형)

‘민간 주도형 또는 민간 자율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산업별 또는 분야별로 고유한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공공부문은 이들을 연결하는 통합 로그인 앱(App)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등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모형이다([그림 6-4] 참조).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민간부문을 연결하거나 개인 인증과 관련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며,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분야 특성을 갖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4]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자료: 연구자 작성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산업별 또는 분야별로 각각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인의 기호와 편의를 고려한 선택권이 부여됨과 동

시에 다양한 서비스 경쟁으로 발전적 동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자율적 통제와 관리가 어려워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플랫폼별 가입, 동의 절차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기존의 거대 민간기업 중심의 독점적 시장 형성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5.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 제안

앞서 살펴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정도에 따른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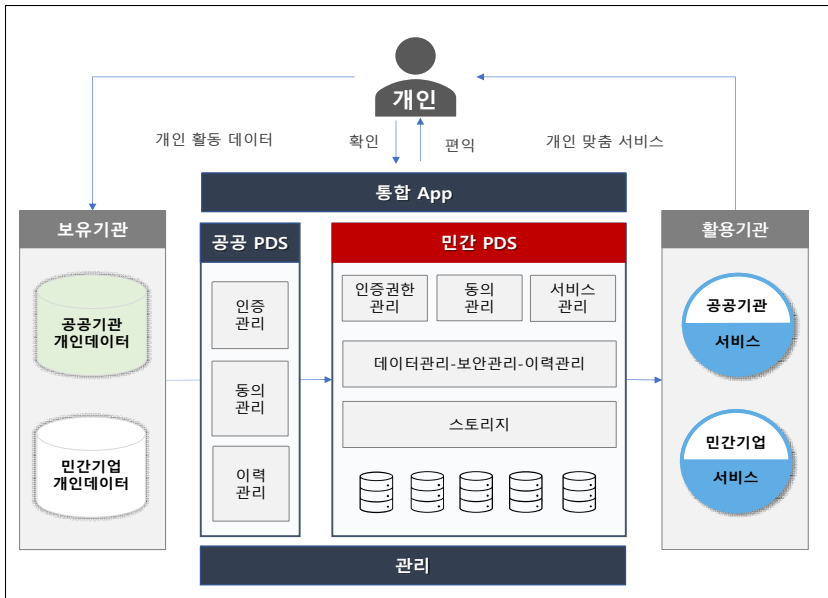
첫째, ‘공공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초기단계에 적합한 유형이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개인데이터저장소(PDS)를 통해 통합관리하고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 및 확산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용이하다. 다만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추진이나 활성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안정화된 단계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유형이다. 사회보장 분야의 특성상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 서비스 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 제시, 보안 심의, 서비스 인허가 등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한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 마이데이터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보장 분야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복지서비스가 많아 민간부문 중심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모형인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나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적합하지 않다. 다만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의 민간부문 데이터 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성장을 위한 자격 여부를 심의·인허가 하는 기능과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의 싱글사인온(SSO) 같은 통합인증 기술은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도 요구되는 기능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4가지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본 모형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참고하여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으로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제시한다(그림 6-5) 참조).

[그림 6-5] 공공 - 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자료: 연구자 작성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장하는 통합형 모형이다. 공공부문은 개인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구현이 부족한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 특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며,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국민의 편익과 체감이 높은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은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기능을 개선하였다.

첫째, ‘민간 주도형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싱글사인온(SSO) 같은 통합 인증 기술을 통합 로그인 앱(APP) 및 포털사이트에 적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로 관리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통합 로그앱(App) 관리 측면에서 ‘공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의 인증 관리, 동의 관리, 이력 관리 같은 공통 기능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데이터주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통해 개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유통에 요구되는 기술 및 보안 가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활용기관을 심의·심사 후 인증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공공-민간 규제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과 같이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하고, 일부 거대 민간기업 등에 의한 시장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심의·심사 및 인증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구축 방향 및 전략

1.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방향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방향을 서비스(Business), 법제도(Legal), 기술(Technology), 사회(Society) 등 4가지 관점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Business) 관점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혁신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어느 한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주도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개발 및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관련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추구하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최소한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나. 법제도(Legal) 관점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과 최근에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하면 사회보장 분야의 관련 법령 중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법까지 확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전송 방법, 개인정보처리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가 다른 개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금지 등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다. 기술(Technology) 관점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보장 관련 개인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정보, 장애정보, 가족정보, 소득 및 재정정보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불법적 해킹이나 내부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각종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술적 수준이 높은 블록체인 DID 기술, 데이터 암호화, 위변조 방지 등 최신의 보안기술을 개인데이터저장소(PDS)에 접목을 시도하는 등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UI, UX)을

개발하고 개인의 인지적 관점에서 ‘알림 및 동의 등’ 등 요소 기술 표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접근수준과 역량수준, 활용수준 등이 부족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을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UX)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라. 사회(Society) 관점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는 개인이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민간-시민(국민)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이 있다. 즉 사용자인 국민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과정의 각 과정마다 직접 참여하여 이슈와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략

최근 들어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찍부터 마이데이터 도입을 준비한 공공(행정)분야 및 금융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방안에서도 단계적 추진을 통한 서비스 확대,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림 6-6>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략으로 기반 조성, 성장 및 활성화, 안정화 등 3단계를 제시한다.

[그림 6-6]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략

	기반 조성 (1단계)	성장 활성화 (2단계)	안정화 (3단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 기존 마이데이터 실증과제 성과 평가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공공)우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지원 · (민간)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촉진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 (공공/민간)우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지원 · (민간)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 촉진
마이데이터 법제도	·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	· 민간부문 참여촉진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사 제도 마련	· 민간부문 참여촉진을 위한 보상체계 운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사 제도 운영
마이데이터 기술	·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 개발 · 마이데이터 필요기술 개발 지원	·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 배포 · 마이데이터 필요기술 개발 지원	·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 개선 · 마이데이터 필요기술 개발 지원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및 개선 · 공공-민간-국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자료: 연구자 작성

기반 조성 단계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제도를 마련하며, 데이터 및 기술 지침을 개발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수행한 마이데이터 실증과제 중 사회보장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증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해야 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뿐 아니라, 필요 시 복지서비스 관련법의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체계적인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성장 및 활성화 단계에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의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 중 우수한 것을 선별하여 확산을 추진하며,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및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을 배포하고 마이데이터 필요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안정화 단계에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공공

-민간-국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산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을 추진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해 마련한 보상체계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 공기관 평가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개선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기술 지침을 개선하고, 마이데이터 필요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측면에서는 사회 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공공-민간-국민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참여하여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제3절 세부 수행 과제

1. 서비스(Business) 관점 세부 수행 과제

가.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실증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보장 분야와 밀접한 사례를 평가하고, 이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우수한 실증 사례를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도입 및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보를 위해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뿐 아니라 실증사업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 등 비용 일부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나.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이 중 우수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최소한의 이익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다. 표준 서비스 및 기술 지침 개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보유기관, 활용기관, 개인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의 역할 및 의무, 개인데이터의 전송 대상 정보,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방법과 절차, 정보 전송 방법과 절차,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본인 인증, 보안 등과 관련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격을 규정한 표준 기술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라. 데이터 표준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보유기관, 활용기관, 개인 간의 데이터 전송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표준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데이터의 세부 항목, 세부 항목별 설명, 데이터값, 참조 용어표준 및 기준 등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보유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를 표준 데이터 항목을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2. 법제도(Legal) 관점 세부 수행 과제

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공공과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

련될 것으로 여겨지나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대상과 기준, 개인데이터 제공 및 활용 범위, 절차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나.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의 경우 데이터 전송 수수료 등 데이터 제공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사제도 마련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개인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의 자격을 평가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자로서 개인데이터 활용기관의 전문성,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기술 수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기관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기술(Tech) 관점 세부 수행 과제

가. 개인 관점의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은 개인마다 상이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이 이해하기 쉬운 동의,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 기능,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등 정보 주체인 개인 관점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나. API 기술 지원

개인데이터 보유기관과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간의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의 송수신하기 위한 API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API 목록을 정의하고 API 목록별 기본정보, 요청 메시지 명세, 전송방식 등을 정의하여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 지원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전송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은 필수 핵심 요소이다. 개인 또는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이 제공한 개인데이터에 위변조 및 제3자 제공 등 불법적인 활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 개인데이터 저장소(PDS)의 암호화 기술 등 개인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회(Society) 관점 세부 수행 과제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 본인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인식을 드높일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민간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그 기관의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민간기관에 있는 개인데이터가 해당 기관의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즉 개인이 민간기관에 본인의 개인데이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 공공-민간-국민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확산,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공공과 민간부문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제 7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치 척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 전통 산업의 가치 창출이 데이터에 의해 발현된다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진입하고 있다(이기호, 2021, p. 52).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처리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 손실과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데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데이터 가치의 손실 없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기호, 2021, p. 53).

한편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중앙과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인식 부족으로 복지서비스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스스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모두 파악하여 본

인의 생애주기별로 최적화된 복지서비스를 신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추천)을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사회보장 분야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원칙, 마이데이터 생태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마이데이터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외국 사례 및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핵심 쟁점 사항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관련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으로는 우선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부문으로 단계적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둘째,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1년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주요 외국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주권 강화 및 개인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공부문의 선도하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에 비해 다소 늦은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2021년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까지 6차례의 주요 정책을 통해 공공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셋째,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법제도, 기술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하였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국내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주요 외국의 경우 이미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 측면에서 개인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데이터 전송, 데이터 활용 내역 확인,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현행 복지서비스 실태 및 신청 시 수집되는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관련 서비스의 지원 형태, 근거 법령, 개인정보 수집 근거, 수집하는 개인데이터 항목, 지원 대상의 제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슈 사항으로는 온라인화, 신청경로 일원화,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즉 서비스의 과반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데다가 온라인 신청경로도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신청경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개인데이터 수집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 선행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유형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정도에 따라 ‘공공 주도형, 공공-민간 협력형, 공공-민간 규제형, 민간 자율형’ 등 4가지 모형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으로는 ‘공

공-민간 협력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기반으로 각모형의 장점을 통합한 '공공-민간 통합형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 법제도, 기술 관련 이슈 사항을 토대로 서비스, 법제도, 기술, 사회 등 4가지 관점의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는 서비스 관점에서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혁신 구현, 법제도 관점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 기술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 사회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기존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전략으로 기반 조성, 성장 및 활성화, 안정화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해야 하지만 민간부문과 국민이 적극 참여하여 공공-민간-국민의 협력체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덟째,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서비스, 법제도, 기술, 사회 등 4가지 관점에서 세부 수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관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확산, 표준 서비스 및 기술 지킴 개발, 데이터 표준화 개발이 세부 수행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도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심사제도 마련 등이 세부 수행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Tech) 관점에서 개인 관점의 기술 개발 지원, API 기술 지원, 정보보호 및 보안 기술 지원이 세부 추진 과제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

관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국민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이 세부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선행 연구,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서비스, 법률, 기술 현황 분석과 ‘정부24’ 및 ‘복지로’ 등의 현행 복지서비스 필요 데이터 현황조사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모형, 구축 방향 및 전략, 세부 수행 과제 등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 통합관리의 법제도 근거 마련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컨트롤타워는 주무 부처나 주무 부처의 소속 및 산하기관 또는 제3의 기관 등이 담당할 수 있다. 기존 조직들의 반발과 소극적 참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개인데이터 보유기관들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개인데이터를 공유할 유인책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이동권은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보장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별도의 사회보장 분야 관련 법률에서 데이터 이동권 규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사회보장 관련 법률 중 대표적인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데이터 이동권, 삭제권, 철회권 등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인 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구분하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개인 실명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인증 체계의 근거,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개인데이터를 대리하여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기본증명서 등 행정안전부의 행정공동망과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거와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 활용기관(기업)을 사전 심사 또는 허가할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기관은 데이터 융합 분석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기관의 역할도 겸해야 한다. 따라서 가명정보 결합기관의 자격과 권한, 의무 사항 등도 정해 두어야 한다.

2.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조직 및 인력, 예산 확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보장 분야 개인정보 통합 및 관리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전담조직은 주무 부처가 직접 수행하거나 주무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담당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전담조직은 주무 부처와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서비스 발굴 및 확산 방안, 관련 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데이터 표준화,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분야, 금융 분야, 공공 분야 등 분야별 전담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본인 인증 등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야 간 경계가 없는 이상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도기에는 분야별 전담기관 운영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향후 분야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담기관 간 데이터 상호 운용이 가능해지면,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하나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나의 기관이 처음부터 모든 분야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되, 이들 전담조직을 총괄할 수 있는 상위의 총괄 기구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담조직은 우선 전담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조직 내 세부 하위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의 유형과 데이터 생명주기별 세부 업무를 정의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라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업무 범위 조율, 관련기관 간 협력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세부 업무 정의 및 업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나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등 거버넌스 요인별 세부 지침과 수행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3. 사회보장 분야 연계 대상 개인데이터 조사

사회보장 분야 주무 부처의 부서별,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집, 활용, 유통되는 개인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수집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 대상과 방법을 상세히 설계해야 한다.

우선 종이 신청서를 통해 접수되는 사회보장 관련 복지서비스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 종이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은 행정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서버 등과 같은 저장매체에 남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특히 종이 신청서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기록하는 것으로 데이터 열람권 행사의 대상이기도 하다. 종이 신청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별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유형(개인·기업·공공 등), 데이터 포맷, 데이터량, 메타데이터, 보관 연한 등도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별로 사회보장에 필요한 연계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고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데이터 제공 범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사회보장 분야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 또는 소득이나 가족 사항 등 신고를 통해 입력되는 항목을 우선 연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만약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가급적 폭넓게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 중 실명 정보, 가족관계 정보, 재산 등 타 관계기관과 공유해야 할 데이터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분류 체계, 데이터 등급 설정, 개략적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 개발 범위와 대상, 업무 절차별 세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정의하고, 주요 구성원과 역할을 정립하며 데이터 가치사슬에 따라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보건복

지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와 그 관계 부처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하다. 이러한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들은 ‘복지로’ 기준 약 360개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로부터 국민이 복지서비스 신청 시 수집한 개인데이터를 비롯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내역에 대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해당 복지서비스의 근거법을 살펴본 후,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여부를 확인하고 API 연계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들을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과 지원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개인데이터 거래에 따른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플랫폼의 데이터 표준 및 융합, 분석 기능을 구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단계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개인데이터뿐 아니라 각종 공공데이터, 민간단체나 기업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동의 기반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비동의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할 것이 아니라, 수집된 개인데이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필요 시 가명처리하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되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관계기관의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먼저 추진한 금융 분야의 경우, 비교적 정형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금융데이터 특성에도 불구하고 표준화에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표준화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데이터 표준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표준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선 선정하여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되 복지서비스의 다양성과 관계기관 간의 업무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는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고려하여 데이터 세부 항목별 용어와 데이터값에 대한 용어 표준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데이터 보유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를 표준 항목으로 변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가급적 자동화된 맵핑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며, 데이터 항목과 값에 대한 데이터 용어 사전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구축 비용을 산정하는 과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전략 기획 요소 중 하나이다.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품질관리, 보안, 메타데이터 설계, 동의/비동의 방식, 비식별화 방식, API 표준, 데이터 영수증 등 주요 기능별 기술 적용 방안도 계획해야 한다.

5.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개인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데이터 활용의 보상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 개별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사용자 인증 및 동의 체계를 구현하고,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보유기관 대상 API 구축 지원 및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로 개발할 제3의 서비스 기업 지원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용 앱(APP)과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활용 서비스 연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 시스템을 갖추어 연동시키고 플랫폼 구축 계획 단계의 표준에 따라 제공기관 별로 상이한 사회보장 데이터를 표준 항목으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정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 개인 등 플랫폼 이용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아이디(ID) 및 가입 승인 여부 등 이용자와 기관, 기업들의 등록 정보를 관리하고,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현황, 데이터 오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관점에서 간소한 인증 절차를 통해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에 접근하여 본인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과 같은 다른 마이데이터 플랫폼 연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6.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생태계 확대

정보 주체 중심의 사회보장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포함한다. 타 분야 공공데이터, 기업데이터,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정책 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센서데이터·가상현실 등으로 사회보장 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품질 수준, 보호 수준, 표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데이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개인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보유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는 정보 주체, 개인데이터 보유 기관, 개인데이터 관리자(플랫폼), 개인데이터 활용 기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개인데이터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자 역할을 하면 사회보장 분야 공공기관 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 데이터 연계성이 가장 크고 기관 간 마찰은 제일 적으며, 지자체와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력 충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마이데이터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여러 군데 개인데이터 보유기관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통합 조회할 수 있고, 개인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제3의 기관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데이터를 전송 받은 제3의 기관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 간의 개인데이터 수집, 이용, 저장, 제공 및 파기 등 일련의 처리과정 중 개인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 관련 개인데이터는 개인의 건강, 장애, 가족, 소득 및 재정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의 불법적 해킹이나 내부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정보 주체인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정보보안 및 보호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이데이터 도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금융 분야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보유, 수집 및 활용하는 정보 제공자, 정보 수신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절차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요구 사항은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개인정보 활용기관 등 관련기관이 개인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사회보장 개인데이터의 정보보안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1. 국내 문헌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19.12.12.).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최-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024?category=report>에서 2021. 10. 1.에 인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a),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시스템 플랫폼에서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b).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 (2021c).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a).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 2. 1.-2. 2): 주제1-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https://www.4th-ir.go.kr/topic/6/detail/11>에서 2021. 1. 2.에 인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b).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18.4.3.-4.4): 주제1-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https://www.4th-ir.go.kr/topic/7/detail/13>에서 2021. 1. 2.에 인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자료(2021. 2. 17.).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202?boardName=internalData&category=agenda>에서 2021. 5. 23. 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rivacy by Design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Privacy by Design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번역문.
<https://gdpr.kisa.or.kr/gdpr/static/gdprProvision.do>에서 2021.
8. 5. 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1. 5.).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첫 걸음 내딛어-
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1차 회의 개
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
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
ode=C020010000&nttId=7649](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649)에서 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1. 13.).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청
사진 마련한다-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 10대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우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보도자료. [https://
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
&mCode=C020010000&nttId=7796](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796)에서 인출.
- 경기도청. (2020. 3. 18.). 마이데이터 활용한 복지정보 서비스 사업자 공모 제
안요청서.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5696>
에서 2021. 5. 23. 인출.
- 고환경, 손경민, 차현정, 김지훈, 지용환. (2019).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방
식개선 연구.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 11.).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보도자료.
[https://www.msit .go.kr/bbs/view.do?sCode=user&mId=113&
mPid=112&bbsSeqNo=94&nttSeqNo=2919095](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2919095)에서 2021. 10. 1. 인출.
- 관계 부처 합동.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관계 부처 합동.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관계 부처 합동. (2019).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
- 관계 부처 합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 관계 부처 합동.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관계 부처

- 합동 정책 설명자료.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785에서 2021. 7. 1. 인출.
- 관계 부처 합동.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mgZ94HmTueg6iIomA-c97hGG.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76460&bbsTyCode=BBS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에서 2021. 7. 1. 인출.
- 권건보. (2014).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7-42.
- 권동승, 이현, 박종대. (2019).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4(3). 114-124.
- 권현준. (20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36(1). 673-734.
- 권현영. (2019). 데이터 규제 3법 개정 전망과 과제. KISO Journal, (36). 16-21.
- 금융결제원. (2020. 5. 21.). 금융인증센터로 인증시장을 선도합니다. 금융결제원 인증업무팀 보도자료. <https://www.kftc.or.kr/kftc/pr/EgovPrList.do?category=bodo>에서 2021. 7. 1. 인출.
- 금융보안원. (2020. 4. 1.). 분산ID 금융보안표준 제정. 금융보안원 융합보안부 보도자료. <https://www.fsec.or.kr/user/bbs/fsec/41/18/bbsDataView/1392.do?page=1&column=bbsDataTitle&search=%EB%B6%84%EC%82%B0ID&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에서 2021. 10. 1. 인출.
-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서울: 금융보안원.

-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2021).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 김윤미. (2018). 해외 마이데이터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CIS이슈리포트, 2018(11), 1-13.
- 김인현, 오희영. (2017). 마이데이터 생태계.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208>에서 2021. 7. 21. 인출.
- 김현식. (2019).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확인 기술 동향. 지능정보통신, 20(1), 11-25.
- 노현주. (2021).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서울: 보험연구원.
- 마이데이터 코리아. (2014). 마이데이터 백서. <http://www.mydatakorea.io/whitepaper>에서 2021. 5. 30. 인출.
- 박정선. (2014).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보장연구, 30(1), 81-103.
- 박주석. (2010).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 학회지, 3(1), 41-46.
- 박효주, 양진홍. (2020). 공공영역에서 의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13(6), 511-522.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우리 기업을 위한 2020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뱅크샐러드 홈페이지 <https://banksalad.com/> (접속일: 2020. 12. 11.)
- 보건복지부. (2021. 2. 24).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763에서 2021. 10. 1.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9. 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보도자료. <http://www.mohw.go>.

- 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page=1&CONT_SEQ=367794&SEARCHKEY=TITLE&SEARCHVA
LUE=%EC%82%AC%ED%9A%8C%EB%B3%B4%EC%9E%A5에서 202
1. 10. 1. 인출.
- 블로코, DID(분산ID)와 SSI(자기주권신원) 단순 로그인을 넘어서, 2020. 10.
- 손형섭. (2021).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유럽
헌법연구, (37). 229-269.
- 양경란, 박수경, 이봉규. (2020).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유형 연구. 한국경영
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 양승민. (2020. 8. 11.). 대전시-KISTI,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동 개발 추
진.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00811000170>에서 2021.
10. 1. 인출.
- 이기호. (2021).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 보건복지
포럼, (301). 52-68.
- 이명호. (2020). 국내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미국, 유럽 마이데이터 비교 연
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183-201.
- 이영환. (2020). 개인주도형 본인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서
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이욱재. (2020). 가명정보활용세미나 발표자료-동형암호 및 재현데이터 구현 기
술을 이용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https://www.privacy.go.kr/cmm/
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841064&file_Sn=1](https://www.privacy.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841064&file_Sn=1)
에서 2021. 02. 03.에 추출.
- 임민철. (2018. 8. 21.).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미국 IT 거인들 뭉쳤다. 구글·MS·
아마존·IBM 등 의료정보 호환 협력. ZDNet Korea. [https://
zdnet.co.kr/view/?no=20180819124912](https://zdnet.co.kr/view/?no=20180819124912)에서 2021. 7. 5. 인출.
- 임태훈, 김규억, 이영환. (2020).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
정보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보원.
- 정책위키. (2021). 데이터경제. <https://www.korea.kr/special/policy>

- CurationView.do? newsId=148863563 에서 2021. 08. 03. 인출.
- 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 (2019).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연구.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영은, 최정민.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슈
와 논점, (1767). 1-4.
- 최정민, 조영은.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
제와 법, 13(2), 92-107.
- 최창수. (2019).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83). 서울: 국회도서관.
- 핀란드 교통통신부. (2014). 마이데이터 백서. [http://www.mydatakorea.io/
whitepaper](http://www.mydatakorea.io/whitepaper)에서 2021. 6. 4. 인출.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a). 2019 데이터산업백서, 서울: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b).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서울: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a). 2020년 데이터산업 백서. 서울: 한국데이터산
업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b). 중국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과 표준화 동향, 데
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2020(6). 1-22.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c). 마이데이터 정책 현황-마이데이터(본인정보활
용지원) 사업을 중심으로(내부자료). 서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a). EMR 인증기준 표준 개발 가이드 마련을 위한 공
공기관 중심의 개인 건강데이터(PHR) 모바일 서비스 개념검증 사업 제안
요청서. [https://www.k-his.or.kr/board.es?mid=a10304000000&
bid=0009&list_no=57&act=view](https://www.k-his.or.kr/board.es?mid=a10304000000&bid=0009&list_no=57&act=view)에서 2021. 5. 20. 인출.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b). 개인 주도형 건강데이터(PHR) 이용 활성화
BPR/ISP 컨설팅 사업 제안요청서. [https://www.k-his.or.kr/board.es
?mid=a10304000000&bid=0009&act=view&list_no=19&tag=&nP](https://www.k-his.or.kr/board.es?mid=a10304000000&bid=0009&act=view&list_no=19&tag=&nP)

- age=1에서 2021. 5. 20. 인출.
- 한국은행. (2019). 영국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동향 및 특징.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9(3).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일본 정보은행 관련 정책 추진 동향.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유럽의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관련 동향.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a). 일본 정보은행 사업의 인증 현황 및 기타 추진 사례.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b).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EU 데이터 전략 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시민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전략. IT&Future Strategy, (4).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1). GDPR대응센터 홈페이지-GDPR소개: 정보 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 <https://gdpr.kisa.or.kr/gdpr/static/infoSubjectsRights.do>에서 2021. 8. 5. 인출.
-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사전. 사회보장. <https://kapa21.or.kr/bbs/dictionary/6286>에서 2021. 8. 7. 인출
- 행정안전부. (2021).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https://www.mois.go.kr/frt/sub/a06/b02/digitalOpendataMydata/screen.do>에서 2021. 5. 23. 인출.
- 행정안전부. (2021. 2. 25.).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한 번 혁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3044에서 2021. 9. 30. 인출.
- 행정안전부. (2021.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

- STR_000000000008&nttId=85278에서 2021. 9. 30. 인출.
- 행정안전부. (2021c).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https://www.mois.go.kr/frt/sub/a06/b02/digitalOpendataMydata/screen.do>에서 2021. 5. 23. 인출.
- 황종성, 김기환, 윤상오, 박정은, 이유택. (2013). 영국과 미국의 개인데이터 활용 정책사례 비교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2. 외국 문헌

- Chris Wood. (2017). Why Do Fintechs Want to Save Screen Scraping ?. <https://nordicapis.com/fintechs-want-save-screen-scraping/>에서 2020. 5. 10. 인출.
- EU. (2015). Directive (EU) 2015/236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5L2366&from=EN>에서 2021. 12. 20.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European strategy for dat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DC0066>에서 2021. 3. 21. 인출.
- KELA. (2020). Estonian e-prescriptions are now valid to buy medicines in Finland. <https://www.kela.fi/web/en/-/estonian-citizens-can-now-purchase-medicines-in-finland-with-an-e-prescription-issued-in-their-own-country>에서 2021. 3. 24. 인출.
- Meeco Planet Pty Ltd. (2018). Zero Knowledge Proofs of the modern

- digital life for access, control, delegation and consent of identity and personal data. https://media.meeco.me/public-assets/white_papers/Meeco_Zero%20Knowledge%20Proofs%20of%20the%20modern%20digital%20life_V1.0_20180513.compressed.pdf에서 2021. 2. 5. 인출.
- Megan Harrison. (2018). Open Banking vs. Screen Scraping. <https://www.openwrks.com/blog/open-banking-vs-screen-scraping-infographic>에서 2021. 3. 17. 인출.
- OBIE. (2021). Annual Report 2020. <https://www.openbanking.org.uk/insights/the-obies-annual-report/>에서 2022. 1. 30. 인출.
- OECD. (2018). Digital Government Studies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Morocco. https://read.oecd-ilibrary.org/governance/digital-government-review-of-morocco_9789264298729-en#page1에서 2021. 3. 10. 인출.
-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Review of Panama: Enhanc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ector.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digital-government-review-of-panama_615a4180-en에서 2021. 3. 10. 인출.
- Outi Lehtokari. (2019). Kanta services for healthcare: Prescription service and Patient Data Repository. Finnish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https://www.youtube.com/watch?v=WXu2T1AmmOQ>에서 2021. 3. 20. 인출.
- Pimcity. About the Technology. <https://www.pimcity-h2020.eu/about-the-technology>에서 2021. 5. 10. 인출.
- Richard Beaumont, Chris Cooper, Sal D'Agostino, 6Rupert Graves, Iain Henderson, Mary Hodder, 7Harri Honko, Andrew Hughes, Tom Jones, 8Robert Lapes, Oliver Maerz, Eve Maler, Jim Pasquale, 9Samuli Tuoriniemi, John Wunderlich. (2018). Consent Receipt

Specification Ver.1.1.0, Kantara Consent & Information Sharing Work Group. https://kantara.atlassian.net/wiki/spaces/archive/pages/3508790/Consent+Receipt+Specification?preview=/3508790/3513775/Consent%20Receipt%20Specification%201_1_0%20DRAFT%208.docx에서 2020. 3. 21. 인출.

3.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400 (202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12723 (202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2020).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182 (20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5호 (2020).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1호 (2021).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4호 (2021).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99호 (2020).
전자정부법, 법률 제17799호 (2020).



[부록 1] ‘정부24’ 및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조사 결과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가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	민원	보육교육지원 경력(제24) 증명서	영유아보육법(제1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1조)	성명, 생년월일, 보육시설명, 소재지, 신청구분(경력/제24)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2	민원	예방접종 증명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2조별지 제16호))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교부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교부대상자와의 관계, 접종구분(경제, 국가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개별선택), 국가예방접종(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Hib, 폐구균 패혈, A형간염), 기타 예방접종(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황열, 콜레라,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바이러스, 헬프스파라증)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3	민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 9호)	이름, 주소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4	민원	영문장애인증 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 9호)	이름, 주소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5	민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수급자와의 관계	개인/ 가구	증명 발급	X	X	O	O	O	
6	민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9 제1항 제3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민원처리기관, 주소, 교육과정(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자격증시험(시행일, 합격일), 구비서류 제출방법)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7	민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노인복지법(제39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9 제1항 제3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민원처리기관, 주소, 교육과정(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자격증시험(시행일, 합격일), 합격일)	개인	증명 발급	X	X	O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복지로
8	민원	장애인등록신청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의2) 장애등급심사규정(제12조 제2항)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의 범위 및 상태, 보호자 성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 배송지 및 반송지(장애인 자택, 보호자 자택, 장애인 직장, 보호자 직장, 장애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개인		X	X	X	O		O
9	민원	장애인등록증 등차 등 포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1호)	〈신청인 정보〉 구별(내국인,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정보〉 구별(내국인,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보행장 장애 유무 〈운전자 정보〉 구별(내국인,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자동차 정보〉 소유자 구별(내국인, 외국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증명 발급 개인		X	X	X	O		O
10	민원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호의2 서식)	〈장애인 정보〉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전의 등록증 발급기관, 장애의 범위 및 상태 〈세대주(보호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복지로구내용(장애인보호기구지원, 학비, 직업훈련, 장애수당 등, 취업알선, 시설입소, 특수교육, 자급대여, 기타), 재발급사유(분실, 훼손, 신용카드는 등과 통합된 등록증발급신청, 기타), 카드구분(신용, 직불, 기타(일반장애인등록증)) 〈자동차(체신장) 배송지/반송지(장애인 자택, 보호자 자택, 장애인 직장, 보호자 직장, 장애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증명 발급 개인/기구		X	X	X	O		O
11	민원	개장신고서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27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제18조)	〈개장 허가 신청서 내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의외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지 또는 봉안장소, 주소, 매장 또는 봉안 연월일, 개장장소, 주소, 개장 방법(매장/화장), 개장 사유, 매장(봉안)기간	개인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2	민원	국민연금 기입자 자격확인청구	국민연금법(제14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9조)	〈자격확인 청구서 내 확인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 현재 자격, 주소 〈자격확인 청구내역〉 자격확인 청구 사유, 근무 중(하였던) 사망장-명칭/사망/사망/소재지 주소, 근무 및 신고 누락 현황-근무기간/누락기간/누락사유, 기타 참고사항	개인		X	X	X	O		O	
13	민원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	의료급여법(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신청내용〉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발급 신청사유 〈수령방법〉	개인/ 가구	증명 발급	X	X	X	O		O	
14	민원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국민연금법(제7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2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취득일자, 가입종별(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기입자) 〈반납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개인		X	X	X	O		O	
15	민원	장해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0조의8)	〈발급신청 시 신규 대상자〉 장해지도사 교육과정 수료 증명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해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전공과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 현장실습확인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4제2호및제3호에 따른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3cm, 세로4cm)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16	민원	장해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0조의8)	〈재발급 신청 시〉 자격증(해소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3cm, 세로4cm),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17	민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국민연금법(제9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2조)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납부예외기간〉 납부 예외기간, 추납 회망기간, 납부방법	개인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8	민원	이(미)용사 면허신청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졸업학교명, 학과명,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 자격명(이용사/미용사(일반)/미용사(미부)),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19	민원	배경화장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1별지2호)	<신청구분> 매장/화장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매장 또는 화장장소 주소, 분묘설치 연월일	개인		X	X	X	O		O	
20	민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신청구분> 미용사/이용사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명(이용사/미용사/미용사(일반)/미용사(피파)/미용사(네일)/미용사(메이크업)), 처리기관검색 <면허정보> 신청사유, 재발급사유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21	민원	장애인복지법 조정신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제출서류, 장애인증명	개인		X	X	X	O		O	
22	민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3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1별지1호)	<미성년자 관련 정보> 보호시설명, 소재지, 보호경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 직업정보> 직업, 직장명, 직위	개인		X	X	X	O		O	
23	민원	아마추어격증 재발급 신청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4조1항제4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자에게 관한 규칙(제11조1항제6호)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 정보> 번호, 발급일자 <신청사유> 자격증 원본, 사진 2장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4	민원	장애인등록증 기초사항 변경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제4항, 별지5)	〈장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기관〉 - 〈변경내용〉 현행, 변경, 사유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변경내용 증명서류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25	민원	개인가족 자연감지 변경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	〈소재지 정보〉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수목/화초/잔디/수분장림/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사유(면적/조성, 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주소 〈조성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관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신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개인		X	X	X	O		O	
26	민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	국민연금법(제80조 제5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9조)	〈납부의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정보〉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납부기한 연장사유〉 연장월, 연장사유 〈구비서류〉 연장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개인		X	X	X	X		O	
27	민원	안면사자력 인정신청서	안면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세주소 〈교육 및 수련이수현황〉 교육차, 졸업일, 수련과정, 제명차, 수련일 〈구비서류〉 사진 외, 의료법제8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8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전단서 1부	개인		X	X	X	O		O	
28	민원	양친가정조사	임양특례법(제10조)(제11조 제3항) 임양특례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양친자 정보(부 모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정보〉 주택종류(자가/전세/월세), 매지면적, 건물면적, 부동산 가액, 등산가액, 부채금액 〈가족사항 정보〉 성명, 생년, 연령, 학력, 직업 〈임양특례이동 정보〉 생년, 연령, 특이사항	개인		X	X	X	O		O	

270 사회보장 분야 마디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복지로
29	민원	장애인보조기 교부(대여, 사후관리)의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신청서 구분〉 교부, 대여, 사후관리 〈인적사항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보조기기 정보〉 보조기기 교부/대여(품목 및 제품 종류), 사후관리(수리 필요 부위, 점검사항 등), 비교	개인	재활 보조 기구 구입, 수리 필요 비용	X	X	X	X		O
30	민원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용 신고	국민연금법(제64조 제1항) (제64조의2 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4항)	〈신고인 정보〉 구분(생활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배우자였던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유지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사유(실종/거주불명/합의/재판) 〈분할 비율 별도결정〉 유형(당사자 간 합의/재판), 별도결정일, 비용(합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분할연금 수급권자) 〈대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신고인 확인, 기관장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 신고의 경우),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법원의 재판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당하는 경우), 분할 비용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또는 재판서(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하는 경우)	개인		X	X	X	X		O
31	민원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 신청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4항)	〈보장기관 정보〉 기관명, 의료급여 종별(1종/2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보조기기명 〈종합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장예유형〉, 〈주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부장애유형〉, 〈부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인 정보〉 성명,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개인	보조 기기 급여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32	민원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별지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 진료받은 사람: 장애인 등록 전 여부,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중월(1종/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장애인분: 장애유형(주장애) 및 중복장애유형(부장애), 세부유형, 척수손상(완전/불완전),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 처방 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물통 및 클린 지지대/팔 지지대 및 웹트레이/머리 및 목 지지대/다리 및 발 지지대/이동식전동리프트/육상예방매트리스/육상예방방석/목출혈 고정신발류/침방포행보조차/ 후방보행보조차/ 의지, 보조기 유형 및 좌우 - 검사결과: 자세보조용구(다리맨손근력검사 좌우 등감, 큰 동작기능 분류체계, 영상의학 검사-코브각도, 척추앞굽음 각도, 척추뒤굽음 각도, 엉덩관절이동지수), 이동식전동리프트, 육상예방매트리스(수장바렐지수 검사 총점수 및 의자, 침대 이동 항목 점수, 다리맨손근력검사 좌우 등감),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척방의견 포함) -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개인	장애 간병비	X	X	X	X	O	
					개인	개인, 가타(시원)	X	X	X	O	국민연금 금 정지된 원서비	O
33	민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제개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28호서식) 국민연금법(제91조)	〈지역가입자 신고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향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번호, 전거유연주소, 납부 예외 신청 시(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제개 예정일), 납부 제개 신고 시(납부 제개월, 소득월액, 제개월납부회당 여부(의무/미의무), 특수직종부호)	개인, 가타(시원)	개인	X	X	X	O	국민연금 금 정지된 원서비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40	민원	사회보장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	국민연금법(제127조)	확인필요 사회보장법에 의한 한국급여 청구서, 신청규약별 구비서류	개인	한국 급여	X	X	X	X		O	
41	민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제42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청소노동자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제38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장애인동 복복지원법 시행규칙		개인/ 가구	사회 보장 급여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제4조 제1항)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42	민원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내용없음 - 요양비지급청구서(별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19호의3, 제19호의4 서식) 확인 필요	개인	요양 비	X	X	X	O		O
43	민원	의료인면허(자 제)등록증명	의료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면허자격증명 발급규정 제3조(별지1호)	<신청인>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면허자격 종별, 면허자격 번호, 우편수령 주소, 전화번호 <용도> <신청수량>, <수령방법>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a href="http://lic.mo
hw.go.
kr/">http:// lic.mo hw.go. kr/	O
44	민원	외국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국민연금법(제126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54조)	<신고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이동전화), 주소 <신고내용> 국적, 체류자격, 국민연금가입(예정)일, 우편물 수령 장소, 월소득액, 취득월 납부 여부(의임/미의임), 임종직업, 코드, 납부예의(해당번호, 사유, 기간), 적용제외(해당번호, 사유)	개인		X	X	X	X		O
45	민원	아동 가정 복귀 신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1조의4 별지 제10호의4) 아동복지법(제16조 제2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정외박)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후대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구비서류> 평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개인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경로	
49	민원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기초연금법(제17조)(제18조)	〈수급자(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권 상실사유〉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지연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상실사유 발생일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수급권 상실사유 증명서류	개인		X	X	X	O	
50	민원	개인모지 변경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지4호))	〈개인모지〉 소재지, 지면, 지목, 면적, 합장 여부, 합장내용, 분묘형태(분묘/평분/평장), 설치연월일, 시설물 설치(비석/상석/ 기타 석물/알몸), 설치변경(설치변경연월일, 설치변경사유-면적/ 시설물 설치/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연월일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안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개인	X	X	X	O		O
51	민원	개인모지 설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지4호))	〈개인모지〉 소재지, 지면, 지목, 면적, 합장 여부, 합장내용, 분묘형태(분묘/평분/평장), 설치연월일, 시설물 설치(비석/상석/ 기타 석물/알몸), 설치변경(설치변경연월일, 설치변경사유-면적/ 시설물 설치/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연월일 〈설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안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도면	개인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52	민원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재발급 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제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강진단일, 수행방법 (구비서류) 신분증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난임부부 중 여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배우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시술 종류 및 차수〉 시술 종류(신선배아/동결배아(임공수정), 시술 회차 〈인적사항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지영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지영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확인〉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고지금(월산금액) (당연수급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계층 확인) (구비서류) 난임 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개인/가구	난임 부부 시술 비	X	X	O	O		O	
53	민원	난임부부시술 비 지원 신청	모자보건법										
54	민원	조화를 통한 자원결정동지 출력	상동			난임 부부 시술 비	X	X	O	O		O	
55	민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재교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별지 13호)	(1급, 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번호, 자격일자, 신청사유 구비서류) 자격증이 없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규격은 3.5cm×4.5cm) 1장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lic.mohw.go.k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56	민원	국제공인예향 접종 증명서 발급	검역법(제28조) 검역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31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구분) 황열/물레리/증명서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진화, 성별, 주소, 국적, 여행지, 여행 목적, 진 발급 장소, 진 발급연월일	개인	증명 발급	X	X	X	X		O	
57	민원	국민연금 입의임의계속 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제21조 제2항 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6조 제2항)	신청구분) 내용변경신고/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가입자 종별, 부호 변경내용) 일자,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X	X	X	X		O	
58	민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국민연금법(제77조, 80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1조)	신청구분)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위 수급권자(단독/동 순위자 인원수), 대표자 신청 여부(신청/미신청)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 문서/전자우편주소/문서 및 전자우편주소 가입자(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지급제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동 순위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청(신청일자, 서명 또는 인)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음/있음(국가명, 가입기간) 외국 거주기간) 없음/있음(국가명, 거주기간) 선택급여) 발생일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인	반환 일시 금, 사망 일시 금	X	X	X	O	국민연 금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59	민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 자격상실신고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제12조)(제2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15조)(제16조 제2항)	-기초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해의이주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국외 이주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인/ 가구		X	X	X	O	4대사 회보합 정보연 제센터	O	
				신청구분) 내용변경신고/자격상실신고/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세대주(건강보험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상실) 연월일, 국민연금(초월 취득당월 상실자 남부 여부), 변경(상실)부호), 건강보험 변경(상실)부호, 외국인(국적, 체류자격) 변경내용(변경 전, 후) 구비서류)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 -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			X	X	X	O	http:// www. nps.or. kr		
60	민원	국민연금 가입자중서 제교부	국민연금법(제16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0호서식)	가입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발급통 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구비서류) 국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감용할 수 있음)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61	민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청구	의료급여법(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1. 출산비/복막투석/자기도뇨/기타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기관 명칭,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구분(인원/외래), 처방 전 발행일, 진료기간 또는 출산일, 상병명, 출산장소(자택/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구급차/대중교통/집/기타)	개인	의료 급여 요양 비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62	민원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국민연금법(제88조 제5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	계좌/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요양비 등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사업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분할납부 신청일, 개월 수)	개인	X	X	X		O	
63	민원	위생사면허증 제교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진, 재발급제복여부 사유(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면허증을 못 쓰게 된 경우/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인	X	X	X	O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64	민원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비스에 관한 고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별명/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장자성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건강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초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가구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65	민원	영양면허증 재교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4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진, 면허증(자격증)번호, 면허증(자격증) 취득 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해소, 기재사항 변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허증(자격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본증명서(성명 변경 시)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2장	개인	증명 발급	X	X	O	http:// lic.mo hw.go. kr/	O	
				사회보장급여 신청(별정)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대상)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교(사유)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실태 구비서류) 농업인 확인서, 통장 사본	개인/ 가구	양육 수당	X	X	X	O		
66	민원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제6조(2)) 영유아보육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18조)(제22 조)									
67	민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의9)(제22조의2) 국민연금법(제50조)(제72조) (제73조)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1. 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선택), 후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위 수급권자(단독/동 순위권자), 대표자 신청 여부 2. 지급계좌) 일반계좌/전용계좌(임부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3.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4.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개인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기능	서비스 안내	
				5.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6. 동 순위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일자 7. 외국연금 가입기간, 외국거주기간 및 국가명 8.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수급권자와의 관계 9.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1. 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위 수급권자(단독/동 순위권자), 대표자 선정 여부 2. 지급계좌> 일반계좌/전용계좌(입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3. 수급권이 소멸(경지)되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멸(경지)사유, 소멸(경지)일, 변경사유 발생일 4.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5.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6. 동 순위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일자 7.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수급권자와의 관계 8.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별 소득수준	경로	정부24 복지로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68	민원	영상사면허 증명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제15조 제2항 제3호 [별지제호]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면허, 자격, 종별, 면허, 자격번호, 우편수령 주소, 용도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69	민원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청구	아동수당법(제11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1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0조)	청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청구권자(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대리인) 보호자가 여럿인 경우의 인월수, 임금제외(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미지급 아동수당 내역> 사망자(수급아동),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기간 청구인 외 다른 보호자(청구인을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신청일 구비서류>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사망 신고로 갈음),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개인	미지 급 아동 수당	X	X	X	X		O	
70	민원	국민연금 장애발생사상 경위 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조)	가입자 또는 수급 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초진/최종)>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 기간, 진단명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 질병부상의 경우(발생일, 발생장소), 사망의 경위(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인 질병 부상 초진일, 경위 제3자 기해) (대표)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합의사항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구비서류> 입증서류(수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개인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71	민원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	국민연금법(제62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7조)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지급제외(또는 압류방지용 전용제외)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내역> 연기 비율,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재지급 사유발생일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기관장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신분증 제시 같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개인		X	X	O	X		O
72	민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 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국민연금법(제50조)(제67조)(제70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8)(제28조)	1.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지급제외(또는 압류방지용 전용제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급여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외국연금 가입 유무(국가가입, 기업기간), 외국 거주 유무(국가가입, 기업기간)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같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국민연금	개인	장애 연금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장부24 부지표
						연령	성별	소속수준	기능	
74	민원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법 제6조의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x 4.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하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판 여부(학교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하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하번호 급여제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관부, 계좌번호 비교(사유)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장예인)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구비서류>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개인/ 가구	O	X	X	O	
75	민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변경)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법 제6조의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x 4.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하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판 여부(학교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하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하번호 급여제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관부, 계좌번호 비교(사유)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장예인)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구비서류>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보육 료, 양육 수당	개인/ 가구	X	O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77	민원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	아동수당법(제15조)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5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수급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아동 보호자(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사유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수급아동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수급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수급아동의 난민신청이 취소되거나 난민신청절정이 철회된 경우 신고사유 발생일 구비서류>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난민신청이 취소된 경우 난민결정 철회서,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인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 실종신고서,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개인			X	X	X			O
78	민원	미지급 급여청구	국민연금법(제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4조)	수급권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동순위 수급권자, 유무 및 인원수, 대표자 선정 여부, 지급계좌(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 급여 내역> 사망자,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가입자 성명,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문상 재해 여부,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제3자 가해 여부,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동순위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일자,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 등 사본(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 미지급 급여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사망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개인	여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복지로
79	민원	의지보조기 기타 자격증 발급(재발급)	장애인복지법(제72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별지33호)(제59조 제1항)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발급 시> 응시번호, 합격연도, 출신학교, 졸업일자 재발급 시> 자격증번호, 발급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발급>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여과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의지보조기사 자격증 사본),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의학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3.5㎝×4.5㎝) -재발급> 의지보조기기사자격증(본실의 경우 사유서),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개인	증명 발급	X	X	X	X		O
80	민원	정신건강전문 요원 자격증 발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최종출신학교, 전공과목, 학위 신청분야>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신청등급(1급/ 2급) 보유자격 및 면허> 종류, 등급, 번호, 취득연월일 수련기간, 수련수로 연월일, 수련기관명 구비서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 × 4㎝)	개인	증명 발급	X	X	X	X		O
81	민원	임의명령 결핵환자 지리식정	결핵예방법(제15조)(제16조)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신청구분> 신규/ 기존 환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코드, 연락처(자택, 휴대폰), 주소, 이메일주소 주소, 이메일주소 세대주(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자택, 휴대폰), 환자와의 관계 환자(구) 성명, 환자와의 관계(예>자, 관계인 경우 법률혼/ 사실혼/ 사진혼/ 사실상 이혼 선택),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취업상태, 전화번호	개인/ 가구	입원 비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부양의무자(가구) 성명, 환자외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수, 소득, 전화번호 입원기간: 입급은 행정, 계좌번호, 예금주, 당해연도 지원받은 생계비 신청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입원비 지원)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원기간 동안의 의사소견서, 결핵양성검사결과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확인이 어려운 대리인 신청 시), 입급통장 사본(환자 및 보호자 명의), 기타 소득조사 관련 서류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입원기간 동안의 의사소견서, 결핵양성검사결과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급통장 사본(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82	민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기초연금법(제15조)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정기준 지급순위(예유자: 1순위, 자녀(예유자 포함): 2순위, 부모: 3순위, 손자녀(예유자 포함): 4순위, 동 순위자 수,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 기초연금 내역)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선택, 휴대폰), 주소,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 기간 동 순위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청일자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선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외의 관계, 주소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계좌 통장 사본, 사망사실증서류	개인 개인 개인	미지급 기초연금 연급	X	X	X	X	O	
83	민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	구비서류)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개인		X	X	X	O		O
84	민원	사회보장협정 에 의한	국민연금법(제127조)	1.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사항) 성명(국문, 영문), 국적, 영주권, 국민연금번호, 국내 주소(국문, 영문), 가입종별	개인	증명 발급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복지로
87	민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 청구	국민연금법(제50조)(제64조)(제64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분할연금 수급권자(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수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유무) 급여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문서, 전자우편주소,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일반계좌 및 임의부지용 전용계좌 각) 급여 선택> 선택금액, 발생일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 신분증 사본, 분할연금 수급권자(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인		X	X	X	O		O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 청구	국민연금법(제50조)(제64조)(제64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의2)	분할연금 수급권자(신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수령연금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유지기간, 신청구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청구 여부, 분할 비율 별도결정 여부(유무) 급여 결정·변경 내역 수신방법> 문서, 전자우편주소,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일반계좌 및 임의부지용 전용계좌 각) 급여 선택> 선택금액, 발생일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신청구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신청구자) 확인, 기관장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 신분증 사본, 분할연금 수급권자(신청구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개인		X	X	X	O		O
88	민원	국립묘지장장 신청(의사장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이자> 영정봉안, 위패봉안(자연장) 대상자> 성명, 신분, 계급, 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혼족 등급, 사망구분(전사/순직/일반사망), 배우자 유무, 보존번호, 안장방법별(봉안당 안치/묘지 매장/영장봉안/위패봉안/자연장, 안치), 안장 희망일 이장 신청의 경우> 원 안장자(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묘비번호 및 안장위치(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구비서류>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안장대상자의 화장증명서, 안장대상자의 공작자료 또는 사고발생경위서	개인		X	X	X	X		O
		국립묘지장장 신청(의사장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안장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안장이자> 영정봉안, 위패봉안(자연장) 대상자> 성명, 신분, 계급, 직위, 주민등록번호, 소속, 군번, 주소, 출생지, 사망지, 사망일, 안장자격, 혼족 등급, 사망구분(전사/순직/일반사망), 배우자 유무, 보존번호, 안장방법별(봉안당 안치/묘지 매장/영장봉안/위패봉안/자연장, 안치), 안장 희망일 이장 신청의 경우> 원 안장자(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묘비번호 및 안장위치(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구비서류>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안장대상자의 화장증명서, 안장대상자의 공작자료 또는 사고발생경위서	개인		X	X	X	X		O
89	민원	정신보건전문 요원 자격증 재교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자적) 종류, 등급, 번호, 취득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자격증(자격증 훼손의 경우), 사진	증명 발급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정신보건전문 요원 자격증 재교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3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자적) 종류, 등급, 번호, 취득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자격증(자격증 훼손의 경우), 사진	증명 발급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90	민원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의료급여법(제3조)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의료급여 종별(총2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조기기 명칭, 구입일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수입)업소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구입처) 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미등록 업소의 경우)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체보조용구의 경우), 실 구입금액, 본인부담액, 청구금액 수령인(수급권자/보조기기 제작판매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1)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14호의6 서식의 보조기기 감수확인서(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육상예방법석, 육상예방법트리스, 이동식전동프리트, 전후방보행보조차,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휠자필이, 돋보기, 망원경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불필요) 2)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자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휠자필을 구입한 경우 또는 보조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불필요)	개인	보장 구 구입 비용	X	X	O	X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91	민원	우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신청	검역법(제28조) 검역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22호)	신청인 정보) 성명, 직업, 주소 선박명, 선박 종류, 국적, 총 톤 수, 비교 항상기등록번호, 항공기명, 국적, 항공회사명 검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목적 열차·자동차명, 열차·자동차의 형, 국적, 등록번호 화물명 또는 장소명, 수량 및 용적, 화물주 또는 소유자, 목적 또는 생산지 구분서류)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 선박명, 선박 종류, 국적, 총 톤 수, 선적항, 선주 또는 대리점, 선박위생 증명서(선박위생관리 증명서/면제증명서/미소지), 발급일, 발급기관, 구분조리식, 식로품 저장식, 창고, 선장, 화물, 선상-선원실, 사관선실, 객실, 갑판, 음용수, 하수, 펠리스트 탱크, 고형폐기물, 의료폐기물, 고인 물, 엔진실, 의료시설, 기타) 용적 또는 면적, 기타, 비고(건조면 및 장소, 최종 출항지 및 출항일, 입항일시, 입항 시의 화물상태, 선박 정박 예정지 현황-순서, 정박지 및 부두명, 일시, 출항 예정 일시)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92	민원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21호])	청구인) 입원입소자/보호의무자 입원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보호의무자) 성명,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구분(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시설 명칭, 주소 청구내용(복수 기재 가능), 청구사유	개인		X	X	X	O	
93	민원	정신질환 관련 재입사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재심사대상)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개인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94	민원	국민연금 보험료 분기납·산납 신청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별지24호)	입원 등 기관(시설) 명칭, 주소 제심사 청구내용, 제심사 청구사유 구비서류) 계속입원(조치통보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개인		X	X	X	O			O
			국민연금법(제89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7조 제38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구분) 분기납/산납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모, 주소 신청내역) 분기납 회망기간(1월/4월/7월/10월 분부터, 3월/6월/9월/12월 분부터), 산납 회망기간(개월 수)									
95	민원	아동보호신청	아동복지법(제10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재산(부동산, 대지, 건물, 기타), 동산, 거주(자/가/전세/월세) 가족관계) 관계, 생년월일, 직업 희망아동) 성별, 나이, 그 밖의 희망사항, 지정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시설행(소제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 보호 구분(무상 대리양육/유상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일반 가정위탁/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 사유	개인		X	X	X	X			O
			한센인(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한센인(피해자)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	신고인(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 결정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자살의계중 수급제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피해자예금통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자살위계를 증명서류, 주민등록증(초본)									
97	민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10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변경(변경 신청 항목, 변경 신청 후 내용) 구비서류) 특수시설 수용·출소 증명서, 재향, 재원출면서 공인인증인 부무확인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국민건강보험	O	
			건강조문사 자격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98	민원	건강조문사 자격증	건강조문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9조)(제11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lic.m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보/24 복지로
99	민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제11조)(제1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비스에 관한 고시	필수 수집정보 자격을 기재사항 결정 내용 구비서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장을 증명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 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별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 실습의료기관장의 장이 발행한 별지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별 제8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 의료법 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별 제8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별 제80조 제1항 제5호 경우에만 해당), 사진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행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한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개인						hw.go.kr/	
							X	X	X	X		O
100	민원	반납금·추납금·회료·부담금·환수금 등 전과고지금·징수·변경·철회 신청	국민연금법(제57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필수 수집정보 신청구분> 가입기간 추가(시업)/추납금·회료, 반납금/환수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주택, 회사, 휴대전화), 주소 신청사항> 신청내용(신규/변경/철회), 전과유면주소	개인						http://minwo.n.nps.or.kr	O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101	민원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제59조 제1항(별지34호의2 서식))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진 발급) 응시번호, 합격연도, 출신학교, 졸업일자 재발급) 신청금수(1급/2급), 자격증 번호, 교부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발급신청)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리인인정단속증언어재활 심습 이수확인서(별 제72조의2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 -재발급 신청) 언어재활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사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102	민원	의사상자인정 신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 서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구조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구조 행위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 정도 사고처리경찰관서)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용(적용된 다른 법률), 지급일자, 지급자, 금액 구비서류)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감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진사고 확인서류 사본,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관계·진행자관계존재확인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		X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03	민원	건강보험 채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	채납제/사업장) 건강보험증 번호/사업장 관리번호, 세대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 가구		X	X	X	X		O	
104	민원	의료기사용 면허등록증명	의료기사용면허법(제3조) 25조 제2항 제2호) 면허자격증명발급규정 제3조(별기제1호)	신청인)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면허자격 종별, 면허자격 번호, 우편수령 주소, 용도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105	민원	위생사면허 증명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제3조)(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3항)	신청인) 성명(국문, 영문), 생년월일, 면허자격 종별, 면허자격 번호, 우편수령 주소, 용도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106	민원	신생아 창간선별검사 지원신청	모자보건법(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아기 이름, 성별, 출생일, 보호자(산모), 출산예정일,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구비서류)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수급증 등 증명서 확인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 이하 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세대 분리의 경우)	개인		X	X	O	X		O	
107	민원	약사·한약사 및 의약품 관함업의 면허증등록증 허가증·신고증 등 재발급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별기20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신청내용)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구비서류) 면허증(분실의 경우 제외), 사진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108	민원	기초연금 변경 신고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문서작성에 관한 고시(제2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반정)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미동거 사유), 학력(대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개인/ 가구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각종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보험료 감면신청자의 경우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재향증명서, 재소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10	민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 확인 신청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장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성명, 생년월일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행위분류에 따른 항목(외과/치과/한방 및 검사/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마취/이학요법/정신요법/치치 및 수술/기타) 소요장비, 소요재료 및 약제, 투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해당 여부, 비교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	개인			X	X	X	O	건강보 험심사 평가원	O
111	민원	약사원약사 면허증 갱신	약사법(제80조) 약사법 시행규칙(제55조 [별지28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신청내용)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 사유 구비서류) 갱신발급고자 하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진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O	
112	민원	기초연금 지급 신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기초연금법(제10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학교명/학년년), 건강상태(양/결함),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개인/ 가구	기초 연금	X	X	O		http:// bokjir o.go.k 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114	민원	의료기사 등 면허증 재교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별지15호))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진 면허> 종류, 번호, 연월일 신청사유 국비서류 -본실제소,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사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다) -면허 취소 후 재발급> 사진,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뒤오지는 빛이 뚜렷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개인	증명 발급	X	X	X	O	http:// lic.mo hw.go. kr/	O
115	민원	국민연금 농어업인 신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농어업인 구별(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및 법인종사자 포함)/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연간 농어업 종사일, 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 수령농(영)에 조합법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출하유통·기공수출활동 종사자만 해당)의 고용일 수 농업(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만 해당)의 고용일 수 농어업인(구)도 농지(제삼미터), 어선(톤), 양식(해터트)	개인	연금 보험료	X	X	X	X		O
116	민원	국민연금 심사청구	국민연금법(제10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48조)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택),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 주소,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을 한 곳(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심사청구	개인		X	X	X	O	http:// minwo n.nps. or.k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17	민원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 급여 지원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제2항)(제14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취지 및 이유 구비서류 입증서류(추거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서(다수의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인	해산, 장제 급여	X	X	O	X			O
				신청구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시설표지) 지급제과)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시설표지), 해산(예정일), 해산 원인(출산/사산)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시설표지), 사망일, 사망원인 구비서류 -해산급여 신청자)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산 시는 의사확인서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장제급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감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118	민원	작장가임자 (근무처, 근무비율) 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3조 제5항 별지 4호의3)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개인		X	X	X	O	http:// www.4 insure. or.kr	O	
119	장부	건강진단결과 서(보건증) 발급	상폐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학교급식법(제12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식품위생법(제40조)		개인/ 가구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120	장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제1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재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원고/보/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법률훨/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출금,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제외)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교(사유)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족, 노인장애편, 아동·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비우체) 제공 신청서 -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채명단,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능	경로	
121	정부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정부24 복지로
122	정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123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기호, 상병명, 입원기간, 주소, 우선진료번호, 휴대전화번호, 정보수신 여부, 수산방법),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관계, 우선진료번호, 휴대전화번호), 의료기관(명칭, 기호), 고지사항(재난적 의료비 지원 구분(희초/재신청, 민간보험 가입지급 여부(금액/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여부(금액/시기), 위험 분담 약제 사용 여부(약제명/본인부담액/환급신청 여부, 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 청구세부내역(요양기관번호, 진료과, 진료기간, 입원/외래/약국,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일부공단부담금/장애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중 지원 대상 금액 산별금액/65세 이상 임플란트 등/23인실 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금액, 지원 제외 대상 금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지원금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치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행내역 신고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암환자 의료비-소아암, 성인암(의료급여), 성인암(국가암), 성인암(배양)-, 긴급의료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장애임아아동, 입원명령 집행한자 입원비,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 지원 여부, 신청일, 지원금, 기타 지원금(민간보험금, 위험 분담 약제 환급금, 산업재해 지원금, 상해 구상금, 기타 지원 여부, 신청일, 지원일, 지원금)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성별	소득수준	가능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필수 수집정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능	경로	정부24 복지포털
				*남부가 모든 자영업인 경우, 남편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면인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라렌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남편이 부부 중 하원 강사, 프라렌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대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후직자의 경우 후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후직임을 명시한 후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후직증명서는 후직 여부 및 후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후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사물 동의서 (제11호서식) 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예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의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장국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임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126	정부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	[행정규칙]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성명, 생년월일, 면허자격, 증명, 면허자격 번호	개인/ 가구		X	X	X	O		O
127	정부	의료급여 불나귀과임플 란트 지원	의료급여법(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수급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 주소, 휴대전화, 자택전화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상병명(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기호(K08.1), 시술시작일(신청서발급일), 확인사항(시술 부위-상/하악, 틀니 종류-완전틀니(대진창)/완전틀니(금속상)/부분틀니, 임시틀니 여부-제작/미제작)	개인/ 가구 면제	간편/ 면제						O
128	정부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I, II 및 내일키움통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구분> 희망키움통장1/희망키움통장2/내일키움통장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처(제, 성명, 연락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적립 및 사용계획> 신청내용(월별 저축액), 신청 동기, 저축액 사용계획(저축목적, 향후 자립자활 계획)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미참여/참여-사업명, 기간, 수령액),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초조/재가입-사업명, 참여기수, 적립 횟수)	개인/ 가구 면제	현금/ 현물	X	X	O	X		O
129	정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자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 의료급여법(제10조)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신규입/재등록인/중복인), 진료과목, 구분임원(외래), 진단확진일, 상병명(원발/전이), 상병코드, 특장기호(V193), 최종확진방법, (임의 경우) 조직확진/세포확진 검사 미 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외국, 중증난치의 경우) 진병정보-가족력, (결핵의 경우)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개인/ 가구 면제	간편/ 면제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능	경로	
130	정부	임산부 출생제 지원	지역보건법(제11조, 제5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임신확인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O	X		O	정부24 복지로
131	정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제34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건강상태(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 관계(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본인부담금 환급제와)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 가구	서비스 사이 이용권	O	X	O	http:// bokjir o.go.k r	O	
132	정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 기기)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급여를 받을 사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신청 보조기기명 임원(임소)현황) 요양기관 임원(임원일), 장기요양시설 임소(임소일)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O	
133	정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0조) 영유아보육법(제23조)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2)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O	보육교 직원 국가자 격증	O
134	정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이용아동) 성명, 생년월일(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남/여, 학교/학년/반,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직업, 비교	개인/ 가구	교육/ 용역 시설 이용	O	X	O	O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35	정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의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이동거 사유), 학력제학 여부(학교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제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X	0	0	0	
136	정부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 운영		이름, 나이, 연락처, 거주지역, 내용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0	X	0	마더세이프	0	
137	정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신청자(대리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지배), 연락처 (유대폰)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0	X		0	
138	정부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기초연금법(제3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개인/ 가구	현금/ 정보 제공	0	X	0		http:// bokilr o.go.k r	0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이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무자) 수급(원)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출금,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계좌>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교(사유)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여유적)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제외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입료 등 납입고지서(한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청소녀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 대상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모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139	정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관리법(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개인/가구	현금/현물	O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40	정부	임신부 및 영유아 양육플러스 서비스 제공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외1)	○ 가족 수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 등 등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 확인을 위한 서류>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개인/가구	현금/현물/교육/용역	0	0	0	X		0	
141	정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신청,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신청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제외) 신청인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교(사유) 보장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가구	서비스/스이/용권	0	X	0	X		0	
142	정부	국민연금 출산파렛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제1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증명서	개인/가구	정보 제공	X	X	X	0	http://www.nps.or.kr	0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43	정부	노인 약검진 및 개인수술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개인수술 - 지원 신청서 (한국실명예상재단 홈페이지)로 접수⇒서식자료⇒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자택, 연락처·휴대폰 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진단명, 수술의명명(진화번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0	X		0
144	정부	건강보험 임상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제11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5조) [정관/약관 등]기타임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임상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지 주민등록 기간	개인/ 가구	서비스 이용권	0	0	X	0	http:// bokjir o.go.k r	0
145	정부	치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대학/대학원/학년),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진화번호(질/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진화번호 급여대상)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개인/ 가구	간편/ 면제	0	X	X	X		0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46	정부	노인 복지용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행정규칙]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대여	0	X	0	X		0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 일반사항)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부담률, 유효기간, 연한도의 적용구간 복지용구 급여내용	개인/ 가구	현금/ 현물 대여							
147	정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복지법(제23조)		개인/ 가구	교육/ 용역	0	X	0	X		0	
148	정부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모자보건법(제9조) 모자보건법(제9조, 제18항)	임신 확인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0	X	X		0	
149	정부	화장-예약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2항)	- 고인 정보(사망진단서 기준) 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 일자, 주소, 관내 구분 · 선택 > 사망진단(사체 검안서 발급기관 및 번호 · 화장 신고 시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사체 검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고자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주소 -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신청인 소유의 휴대전화 번호 · 만 14세 미만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화장 예약 신청(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577~4129 문의)	개인/ 가구	개인/ 가구	X	X	X	O	보전복 지부 화장에 약시스 템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54	정부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정관/학관 등 기타]보육사업안내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O	보육통 합정보 시스템	O	
155	정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스드림스타트) 지원	아동복지법(제37조)	제출서류 없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교육/ 용역 정보 제공	O	X	O	X		O	
156	정부	나의 복지서비스 찾기(복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O	http:// bokir o.go.k r	O	
157	정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인식 서비스	장애인복지법(제24조)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출서류 없음	개인/ 가구	정보 제공	O	X	O	X		O	
158	정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제출서류 없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교육/ 용역	O	O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59	정부	장기/중화당 등록 및 등록 조회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2, 제1항) [정관·양관 등 기타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내용 법정대리인의 동의(미성년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O		O	
160	정부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선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 시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O		O	
161	정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관리법(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 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등록 신청서 성인 암환자·의료비 등록 신청서 등록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이메일주소, 가구원 수(환자 포함) 신청인(보호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재지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162	정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건강검진기본법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 보호자(대리인)> 성명, 관계 의료기관명(소재지) 입급제자>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O	
163	정부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신분증	개인/ 가구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64	정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제30조)	진단서(검사비) 신청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진단일 신청금액(지원금액),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신청인과의 관계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165	정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재한 외국인 취업 기본법(제3조)	외국인 근로자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진단서, 입원 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166	정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 유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제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호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일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http:// bokirr o.go.k 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167	정부	다함께 돌봄 사업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이용아동 일반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학교/학년/반, 아동 휴대전화, 건강상태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비고	개인/가구	시설 이용	O	X	O		O	정부24 복지로
168	정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제34조)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소, 집전화, 휴대전화 이용신청 현황) 아동성명(성별), 생년월일, 주당 이용 횟수, 이용시간, 이용사유	개인/가구	현금/현물	O	X		http://bokjir.o.go.kr	O	
169	정부	장예인연금	장예인연금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별거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제외)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매우적)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가구	현금/현물	O	X	O	http://bokjir.o.go.k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171	정부	소년소녀가장 지원	이동복지법	법정 서식 없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X	X		정부24 복지로
172	정부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0	X		0
173	정부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개인/ 가구	감면/ 면제	0	X	0	X		0
174	정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산부 상명 및 생년월일, 유아상명 및 성별,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난임시술 여부, 난임 시술종류, 시술비용 분반(잔단) 기관명, 분만일자(생년월일), 출생 시 체중, 임신기간, 선천성 이상 질병명, 다태아 및 출생순위, 입원지로 기관명, 입원기관, 진료비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X	X		0
175	정부	여성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에인복지법(제7조) 장에인복지법(제9조)	여성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0	X	0		0
176	정부	노인장기요양 보험(장기요양 인정)	518민중공자예우관한법률(제55조의2) 고령제후유증등환자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4) 특수임무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70조의2) 노인장기요양 보험(장기요양 인정)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대상구분, 보존번호,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부양의무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보호실태, 장기요양 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 급여 내용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0		노인장 기요양 보험공 단	0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2)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제8조의2)									
177	정부	석정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모자보건법(제3조)	난청 신청서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보호자), 연락처(휴대폰), 주소(거주지) 신별검사, 확진검사, 지원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보청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보호자), 연락처(휴대폰), 주소(거주지)	개인/ 가구	현금/ 현물	0	X	0	X		0
178	정부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의사 소견서	개인/ 가구	교육/ 용역	0	X	0	0	http:// www.l onger mcare. or.kr/	0
179	정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제41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개인/ 가구	용자 지원	0	X	0	X		0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필수 수집정보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실태 구비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일									
180	정부	병과 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제34조)	차상위계층 중비서류, 수급자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O	http:// boklir o.go.k r	O	
181	정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유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유한 특별법시행령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피복자건강 수첩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182	정부	이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이동복지법(제42조)	다임에잇통장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 희망직업액 보호 구분 후견인 보호자 등 후견인(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 휴대폰, 주소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 휴대폰, 주소 보호기관(시설 현황) 보호기관명, 사업가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 보호사유 및 내용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O	http:// boklir o.go.k 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83	정부	발달장애인 개인복지원계 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제19조)	개인복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발달장애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성/여성),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장애인의 관계(보호자/공무원/기타), 주소, 전화번호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X		O	
184	정부	장애인노인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복지법(제66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제4조)		개인/ 가구	대여 교육/ 용역 정보 제공	X	X	X	O	국립계 활원 중앙보 조기기 센터		O
185	정부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법(제12조)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대여	X	X	X	X		O	
186	정부	임양비유자원	임양특례법(제32조)	○(임양 앞산비용) 임양 사실 확인서 ○(임양 철회 비용) 임양 동의서 및 임양 동의 철회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187	정부	의료급여수급 권자 영유자간접검 진비 지원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개인/ 가구		O	X	O	X		O	
188	정부	취학 전 아동 심명 예방	모자보건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O	
189	정부	노인보호전문 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문상담 운영 지원	노인복지법		개인/ 가구	시설 이용 정보 제공	O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90	정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0004	개인/ 가구		O	X	O	X		O	
191	정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노자보건법(제3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임산부 생명 및 생년월일, 유아성명 및 성별, 배우자(보호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난임시술 여부, 난임 시술 종류, 시술비용 분담(잔단) 기관명, 분만일자(생년월일), 출생 시 체중, 임신기간, 선천성 이상 질병명, 다태아 및 출생순위, 입원지로 기관명, 입원기관, 진료비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O	
192	정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민법(제14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사진본인과의 관계, 소속, 연락처, 신청경로 사진본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성별, 장애 여부, 연락처, 소득수준, 주소, 독거 여부, 거주현황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X	X		O	
193	정부	학대예방 상담 지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신청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교육/ 용역 시설 이용	O	X	X	X		O	
194	정부	임양가정양육 아동 상담치료 지원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형태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195	정부	노숙자 등 임고용주동자 사해관리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서 양식 확인 불가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X		O	
196	정부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자활근로사업 신청서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전화번호 주요 이력(사행) 최종하역 및 직공, 자격면허, 취업 관련 기타사항) 주거상태, 가구종소독, 가구재산상황, 건강, 장애유무	개인/ 가구	정보 제공	O	X	O	X		O	
197	정부	일반 건강진단(국 문) 발급			개인/ 가구		X	X	X	O		O	
198	정부	다문화 보호로 지원	영유아보육법	다문화 가족 증빙서류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X	O	http://bokjir.go.kr	O	
199	정부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요양비지급청구서 보장기관기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출산자),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기간, 출산일, 진료 구분, 출산장소, 출산 구분, 지급의뢰일, 침소요액, 심사결정액, 본인부담액, 지급액, 지급금용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청구사유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00	정부	청소녀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헌인서, 주민등록등본 2021년 청소녀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청소녀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성명(임산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X	O	사회서 비스 전자바 우체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01	정부	일반 장간단서 (영문) 발급			개인/ 가구		X	X	X	O		O	
202	정부	암 수검자 검진비 지원	암관리법(제11조)		개인/ 가구	감면/ 면제	X	X	O	X		O	
203	정부	기타 재가급여(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장기 요양 인증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뢰서)	개인/ 가구	교육/ 용역 시설 이용	O	X	O		http://www.longtermcare.or.kr/	O	
204	정부	장애인양아동 의료비 지원	임양특례법(제35조)	임양아동 양육보호조금 등 신청서 양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양아동> 성명, 생년월일, 임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임양일, 현재 장애상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호조금, 임금제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X	X		O	
205	정부	장애인 의료생활시설 이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정관/약관 등 기재]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재활 병, 의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재활 병, 의원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유료 진료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장애인등록증 제시함.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료급여법 제8조에 의한 의료급여증 - 시, 군,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개인/ 가구	시설 이용	X	X	O	X		O	
206	정부	장애인양아동 양육보호조금	임양특례법(제35조)	임양아동 양육보호조금 등 신청서 양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양아동> 성명, 생년월일, 임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임양일, 현재 장애상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호조금, 임금제한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헌법)보거주, 노인장애편, 아동, 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여유적)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거래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210	정부	장애인에게 구강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개인/가구	간편/면제	X	X	X	X		O
211	정부	어린이집 조화	영유아보육법(제28조)	- 만별이인 경우 부모의 취업증명서 -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인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 결함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 등 (상대비용은 아이사랑포털-임소 대기 신청 시 확인 가능)	개인/가구	개인/가구	X	X	X	O	http://www.c hildcar e.go.kr /	O
212	정부	결식아동 지원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후대문) 보호자) 성명, 관계, 동거 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후대문),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남/여), 취학 여부(취학/미취학), 학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남/여), 취학 여부(취학/미취학), 학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세)	개인/가구	현금/현물	O	X	X	O	http://bokilr o.go.k r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13	정부	임양숙거간 모자 지원	임양숙예법 임양숙예법(제13조)	임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양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양아동: 성명, 생년월일, 임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임양인, 현재 장애상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임금계좌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14	정부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17조)	담당자와 전화로 가접수한 다음 교육 인원, 대상, 일자, 소속 등을 기록한 공문 또는 신청서를 E-mail 또는 FAX 송부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X		O	
215	정부	국민연금 가입자원신고 센터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O	http:// minwo n.nps. or.kr	O	
216	정부	장애인발달구 조지원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개인/ 가구	대남 지원	X	X	O	O	대한법 률구조 공단	O	
217	정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장애인 등록증, 의료 급여증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218	정부	치매 정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치매관리법		개인/ 가구		X	X	X	O	대한치 매학회	O	
219	정부	의료급여(의료 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제20조)	급여비용 대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기간, 의료급여기관명, 주소, 급여비용	개인/ 가구	대남 지원	X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복지로
220	정부	발달장애인부 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대학/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임, 국외출생자임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친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증정예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호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일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X	X	X	X	O	
221	정부	권역 생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법(18조)		개인/ 가구	시설 이용	X	X	X	X		O
222	정부	시간제보육 지원	영유아보육법(26조의2)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영유아명 (남, 여), 영유아 생년월일, 집주소, 전화번호, 이용목적 보호자: 성명, 영유아와의 관계, 이름, 연락처 영유아 특이사항(알레르기, 습관 등)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O	X	O		아이사 람보육 포털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23	정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정관/약관 등 기타 지원근거: 국무총리 주재 제외동포정책위원회(06.12.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별거/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인(배우자: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저임금,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대상: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합동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 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여유채)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시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임료 등 납입고지서(해당서류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초년지원 신청의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24	정부	발달장애 서비스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제21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별거/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인(배우자: 수급(권)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저임금,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대상: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합동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 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여유채)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시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임료 등 납입고지서(해당서류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초년지원 신청의	개인/ 가구	서비스 이용권	O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우, 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채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225	정부	발달장애인 가족후식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발달장애인 가족후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1) 신청인: 성명(성별)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건강상태(장애/질병) 동반신청가족: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 생년월일, 건강상태(장애/질병), 연락처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26	정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제15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27	정부	영주국 사할린 한인 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	영주국정착금 지급 신청서 독립 유공자: 성명, 서훈 훈격, 서훈 연도 수관자: 보훈번호, 성명,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호, 휴대전화번호, 귀화하기일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일, 동거가족 수, 동거가족(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2.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예금계좌 확인 정보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O	
228	정부	장애이동수당	장애인복지법(제50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실거주지 주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사유, 학력, 재학 여부(학교명/학년),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복수국적자명, 국외출생자명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전화번호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교(사유) 보장 구분: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타 선택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통장 사본,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 동의서(증정예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동일								
229	정부	차별 공공후견 지원	차별관리법(제12조의3)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26	개인/가구	현금/현물	X	X	X	X		O
230	정부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개인/가구	교육/용역	X	O	X	X		O
231	정부	노후연금자금 대부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제46조, 제1항)	신청자(대부자): 성명, 생년월일(ops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대부금, 대부용도(의료비/배우자 장제비/전월세자금/재해복구비) 상환기간, 장기상환일 대부금 자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부금 상환용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구비서류: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개인/가구	용자 지원	O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그 외 구비서류 ①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②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공단 전산 확인 시 불필요) ③ 잔월세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원본(월정일자, 전입신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승금내역서(보증금 5% 이상, 신규), 중전계약서(경신) ④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232	정부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 심센터)	치매관리법(제3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교육/ 용역 정보 제공	O	X	O	X			O
233	정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234	정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장관/학관 등 기타]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구분: 신규(제공신청/변경신청/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미동거 사유), 학력(재학 여부(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장애/질병), 취업상태(직업, 직장명), 전화번호(집/직장), 배우자와의 관계(배우혼/사실혼/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재)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전화번호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교육/ 용역	O	X	O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계좌: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구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헌부모가족,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비우체)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임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235	정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장 현황: 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건강보험가입자 장애인 등록현황: 장애유무, 장애등급 의료지원금 신청내용: 후유장애 내용, 향후치료비 필요 여부, 개호비 필요 여부, 보조장구 구입비 필요 여부 구비서류: 국립중앙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의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1부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36	정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교육/ 용역	O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부양의무자: 수급(원)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직원급, 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 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급여제외: 성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구분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 노인장애편 이동·청소년, 기타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입료 등 납입고지서(해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특별정소받지원 신청의 경우, 신청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240	정부	치매 치로관리비 지원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		개인/가구	현금/현물 현물 이용 정보 제공	O	X	X	X		O	
241	정부	선원 건강진단서 발급	선원법 시행규칙		개인/가구		X	X	X	O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47	정부	군인의경 규연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인/ 가구		X	X	X	X		O	
248	정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O	X	X	X		O	
249	정부	장애인 보호기기 지원	장애안노인 등을 위한 보호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본인) 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년/월) 사회보장(수급자/자생위계증/기타), 휴대전화, (원)주소 (전)주소, 전화번호, 집입일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한결, 영문,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250	정부	신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신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 가구	교육/ 영역 정보 제공	X	X	X	X		O	
251	정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관리법(제17조의2)		개인/ 가구		X	X	X	X		O	
252	정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개인/ 가구		X	X	X	X		O	
253	정부	재가암환자 관리	암관리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정보 제공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54	정부	저소득층 금전지원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255	정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업자(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시설유형, 세부유형, 시설명,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 세주소, 암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O	한국사 회복지 공제회	O	
256	정부	장애인거주시 설 실버임소로 지원	장애인복지법(제81조)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O	X		O	
257	정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에 관한 법률(제29조)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O	X	X	X		O	
258	정부	의료급여 장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제2조)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제25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ME0000000030	개인/ 가구	현금/ 현물	O	X	O	X		O	
259	정부	시장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O	실도암 시각장애 예인복지 기관	O	
260	정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 등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O	국민 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61	정부	미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미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제19조)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미약류 중독자 등 입원 의뢰(통보)/입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거소, 학력, 직업, 사용 마약류, 사용 기간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62	정부	찾아가는 금역지원 서비스			개인/ 가구		X	X	X	X		O	
263	정부	노년과정 담당 교사 연수 과정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개인/ 가구		X	X	X	O	http://cpms.childcare.go.kr/	O	
264	정부	금연상담전화	국민건강증진법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O	금연길 라잡이	O	
265	정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운영 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 아동복지법(제35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0087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66	정부	장애인 장애인 문진교육 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19조)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	복지카드 및 운전면허증 등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O	국립재 활원	O	
267	정부	시설인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개인/ 가구	시설 이용	X	X	X	X		O	
268	정부	장애인공동생 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장애인등록증	개인/ 가구	시설 이용	X	X	X	X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가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69	정부	유류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의료법(제60조의3, 제3항)		개인/ 가구	교육/ 용역 정보 제공	X	X	X	O		O	
270	정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인/ 가구		X	X	X	O		O	
271	정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임상용품의 지급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입원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구비서류: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원의 피부과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 가구	현금/ 현물	X	X	X	X		O	
272	정부	착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인/ 가구	교육/ 용역	X	X	X	O	한국적 수장에 인원회	O	
273	정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명서류(필요시)	개인/ 가구	서비스 스이 용권	X	X	O	X		O	
274	정부	원격 보육교사 인성평가 및 교육 지원	영유아보육법(제36조)		개인/ 가구		X	X	X	O		마음성장 프로젝트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275	정부	온라인 금연상담	국민건강증진법	연령, 성별, 휴연량, 휴연기간, 니코틴 의존, 금연자시간 등의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금연 시도자에게 적절한 금연프로그램을 추천	개인/ 가구	정보 제공	X	X	X	O	http:// www.n osmok equide .go.kr/	O	
276	정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법(제27조의2)	환자안전사고보고서 (원자, 환자보호자 제출용) 사고정보: 사고 발생일시, 사고 발생일시, 보건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의료기관 구분, 사고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사고 종류(중복 가능) 환자정보: 생년월일, 연령대, 성별, 환자 진료과목, 사고발생 진료과목, 진단명 보고자 정보: 보고자 구분, 연락처, 전자우편 사고내용,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환자안전사고보고서(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전담인력 제출용) 보고서 정보: 자료공개 여부, 의무보고 대상 사고정보: 사고 발생일시, 보건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의료기관 구분, 병상 수, 사고 발생장소, 관련 직원(중복 가능), 관련 직원 경력, 사고 발생단계, 사고 발생일시, 사고 발생단계, 발견과정, 발견자, 사고 종류(중복 가능), 위해 정도, 사고 발생 후 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중복 가능), 내부보고 여부, 환자설명 여부 환자정보: 생년월일, 연령대, 성별, 환자 진료과목, 사고발생 진료과목, 내원 시 진단명 또는 증상, 사고 전 환자상태 보건의료기관 정보: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법인명, 종별, 대표자명, 허가 병상 수, 주소 보고자 정보: 보고자 구분, 연락처, 전자우편 사고내용, 사고원인, 기여요인,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국가 수준, 보건의료기관 수준)	개인/ 가구		O	X	O	X			O
277	정부	환자안전제도	환자안전법(제16조)		개인/ 가구		X	X	X	O	환자안 전보고 확실히 스텝	O	

연번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체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로
278	정부	경제선진화 융 자립지원	이동복지법		개인	현물/ 현금	0	X	X	X		X	0
279	정부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법		개인	현물/ 현금	X	X	0	X		X	0
280	정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	아동복지법		개인	현물/ 현금	0	X	X	X		X	0
281	정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 서비스	아동복지법		개인	현물/ 현금	0	X	X	X		X	0
282	정부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인	현물/ 현금	0	X	X	X		X	0
283	정부	의료급여(본인 부담보상금)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인	현물/ 현금	X	X	0	X		X	0
284	정부	의료급여(본인 부담상환금)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인/ 가구	현물/ 현금	X	X	0	X		X	0
285	정부	의료급여(의료 급여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인/ 가구	현물/ 현금	X	X	0	X		X	0
286	정부	의료급여선택 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인/ 가구		X	X	0	X		X	0
287	정부	청년희망기금 통장			개인/ 가구	현물/ 현금	0	X	0	X		X	0

연도	구분	서비스명	근거법	필수 수집정보	수집 정보 주제	지원 형태	대상자 제한 여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연령	성별	소득수준	기능	경로	정부24	복지포털
288	정부	표준 모자보장수첩 제작배부	모자보건법		개인/ 가구	원물/ 합금	0	0	X	X		X	0
289	정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인/ 가구	기타- 서비스 수련 계	X	X	0	X		X	0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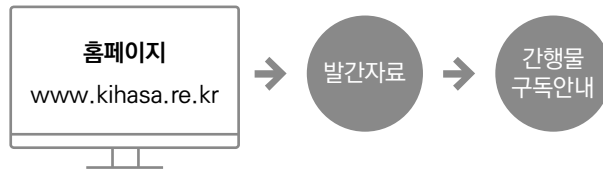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016)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